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 2026. 8.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
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의
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가톨릭대학교 교수 안성희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2026. 8.

연구책임자	안 성 희	(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연구 원	조 형 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구 원	김 익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2026. 8.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목차

[요약]	i
I. 서론	2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 내용	2
1.3 연구의 기대효과	4
II.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	5
2.1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5
2.2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	7
III. 가상자산의 성격과 법적 제도	20
3.1 가상자산의 성격	20
3.2 한국의 법적 제도	26
3.3 해외 주요국의 법적 제도	30
IV.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쟁점 및 개선(안)	41
4.1 현행 기타소득 과세체계 관련 쟁점	41
4.2 해외의 과세체계 검토 및 개선(안)	42
V. 가상자산 거래유형별 쟁점 및 개선(안)	46
5.1 스테이킹	46
5.2 렌딩(lending), 유동성 공급거래	55
5.3 하드포크 및 에어드롭	67
5.4 신종 가상자산 관련 과세쟁점 및 개선(안)	75
VI.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쟁점 및 개선(안)	88
6.1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기준 및 쟁점	88
6.2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손익통산, 양도·대여소득 구분	90
6.3 과세최저한 상향	93
6.4 가상자산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원가	97
6.5 가상자산 거래 양성화를 위한 세율 차등화 제언	100

VII. 결론	101
---------------	-----

참고문헌	105
------------	-----

〈표 차례〉

〈표 1〉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 규모	5
〈표 2〉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의 이용자 계정 수	6
〈표 3〉 연령대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	7
〈표 4〉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	13
〈표 5〉 가상자산 K-IFRS상 회계처리 구분	14
〈표 6〉 CEX 렌딩 서비스에 대한 과세쟁점	57
〈표 7〉 Defi의 렌딩거래와 유동성공급거래의 비교	61
〈표 8〉 Defi의 렌딩거래 및 유동성공급거래에 대한 과세쟁점	63
〈표 9〉 영국의 Defi 렌딩서비스에 대한 과세	65
〈표 10〉 토큰증권(ST) 유형별 기초자산 실질과 단기·장기 과세방안	83
〈표 11〉 손익통산 허용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예시(가정)	91
〈표 12〉 손익통산·이월공제 국가별 비교	92
〈표 13〉 납세협력비용	94
〈표 14〉 금액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	96
〈표 15〉 취득원가 관련 국가별 과세제도	99

〈그림 차례〉

〈그림 1〉 스테이킹 거래 구조	47
〈그림 2〉 Defi 렌딩거래 및 유동성풀 공급거래 구조	58
〈그림 3〉 토큰증권의 개념	79
〈그림 4〉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80

[요약]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제도 시행 등의 사유로 3차례 유예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그러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유예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다음의 사항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법령은 가상자산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함
 - 기타소득 과세,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등 가상자산 소득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논쟁 발생 가능(정유석 2021; 차동준 2021; 이소현과 박정우 2023; 안성희 2024)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만 과세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
 - 상기 외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가상자산 대여소득, 디파이), 특수한 가상자산 거래(에어드롭, 하드포크, 스테이킹 등)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불명확, 해외거래소 이용자나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자의 조세 정보 파악의 어려움, 신고납부를 위한 지원시스템 미비 등도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안성희 2024)
 -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Defi 거래 등에 대한 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 및 조세저항 발생 가능
- 본 연구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에 대해 반복되는 논쟁과 유예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7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정책적 시사점 제시하고자 함

1.2 연구 내용

- 국내 가상자산 과세체계 및 추진 경과 검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법령상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현행 규정의 내용을 정리 및 제시함

-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 검토: 국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자산기본법』,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의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각국의 가상자산 지원 및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적정성 검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이소현과 박정우, 2023; 정유석 2021; 차동준 2021; 장기용 2020; 이은미와 윤태화 2023; 안성희 2024) 이의 적정성을 재검토함
- 가상자산 거래유형별 과세 쟁점 및 개선(안) 제시
 - 가상자산 스테이킹(Staking), 렌딩(Lending), 에어드롭(Air Drop), 하드포크(Hard Fork) 등 가상자산 관련 고유 거래에 대한 손익 귀속시점 및 과세표준 산정 관련 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신종 가상자산인 NFT(대체불가토큰), 스테이블코인(자산가치 연동), 증권형 토큰(ST, 증권 연동)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 이슈와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함
- 가상자산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관련 쟁점 및 개선(안)
 - 가상자산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이 되고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손익통산, 과세최저한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 취득단가 산정방법(충평균법)의 적정성을 살펴봄
 - 가상자산 거래의 양성화, 조세저항 감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언을 추가하고자 함

1.3 연구의 기대효과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쟁과 반복적으로 유예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가 명확하고 수용성 있는 과세제도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

2.1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 **(시장규모)**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25.7.1~25.12.31)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5년 상반기 95.1조원 대비 25년 하반기는 87.2조원으로 약 7.9조원이 감소함
 -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거래량이 5.4조원으로 여전히 그 규모가 작지 않음
- **(가상자산 이용자 현황)**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 이용자(계정수)는 1,113만 개로 오히려 25년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¹⁾ 전체 이용자의 약 99.9%가 원화마켓에, 0.1%가 코인마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가상자산 보유규모를 살펴보면, 약 74%가 10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자산 보유계정 비중은 10%(112만개), 1억원 이상 계정 비중은 1.5%(17만개)임
 -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의 약 74%의 잔고가 100만원 미만으로 투자자의 상당수가 과세 최저한 이내로 부담할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가상자산 소득은 추후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 및 가격 상승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2.2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

-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있음
 - 양도는 매매(가상자산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와 교환(BTC마켓, ETH마켓 등에서 가상자산을 기축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여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
- **(소득금액 계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의 실제 필요경비(즉, 취득원가와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를 공제한 금액에 과세최저한인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

$$\begin{aligned} \text{결정세액} &= (\text{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250\text{만원}) \times 20\% \\ &\quad - \text{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및 대여의 대가} \\ &\quad - \text{양도 거래의 필요경비: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원가} + \text{수수료 및 부대비용} \end{aligned}$$

1) 사업자별 등록 계정, 이용자 계정 수 단순 합산(중복, 휴면계정 포함)

- **(취득원가)**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총평균법 적용하
되 거주자별 계산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방법은 이동평균법 적용하되 가상자산 주소별 계산
- **(취득원가 의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
가²⁾와 기존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취득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 확인 불가 등), 필요경비 의제 규정 마련
 -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
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³⁾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
여 계산
- **(세율)** 과세표준의 20%
-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가상자산소득은 다른 기타소득 및 투자 손익과의 통산이 허
용되지 않으며 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음
- **(신고방식-거주자)** 당해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차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
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자진신고 납부함
- **(신고방식-비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인출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 거래소가 원천징수하고,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
서에 납부해야 함

2) 소득세법시행령 88조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제
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
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
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 3)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함(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 산정방법: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3. 가상자산의 성격과 법적 제도

3.1 가상자산의 성격

- **(정의·범위)**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며, 이는 FATF 권고에 따른 것임
 - 그러나, FATF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한 것과 달리, 국내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히 포섭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임
 - 위 정의에 따르더라도 현행법상 게임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CBDC 등은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제외됨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네이티브 코인,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 등을 대상으로 하되, 경계영역에 있는 신종 디지털자산은 그 법적 위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토큰증권은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으며, 관련하여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 1. 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7년 시행 예정임
 - NFT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성을 먼저 판단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별도 규율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연구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정하되, 보고서의 목적인 과세상 쟁점 분석을 위해 그 연구대상을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설정함
-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가상자산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유권·강제집행 등 사법상 권리구제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 법원은 가상자산을 물건이 아닌 재산상 이익 또는 무형의 재산 등으로 파악함
 - 대법원은 정보 그 자체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2002도725), 서울고등법원은 비트코인을 디지털정보로서 현행법상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함(2021나2010775)
 - 이후 대법원도 가상자산을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2020도9789), 추정 대상인 무형의 재산(2018도3619)으로 보는 태도를 유지함
 -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상 물권 인정에 한계가 있으나, 물건 개념의 확장은 입법적 결단 또는 유연한 해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

- **(비정형 거래의 법적 성격)** 채굴·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비정형 거래의 법적 성격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여와 양도 등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함
 - 채굴·하드포크는 원시취득, 스테이킹은 임차·위임·비전형 투자계약 등, 렌딩은 소비대차·소비임치 및 대여소득의 성격을, 에어드롭은 증여·리워드·용역 대가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렌딩은 원금 보장·확정수익·자산 풀링 등이 결합되면 유사수신, 증권성, 이용자보호법상 실질보유·분리보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레버리지성·금전성·제3자 위탁형 대여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검토의견)** 단기적으로는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함. 그 법적 성격은 거래의 명칭이 아니라 취득 원인·이용자의 지배 가능성·사업자의 운용 관여 정도·원금 및 수익 약정·경제적 이익 귀속 구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3.2 한국의 법적제도

- **(발전 과정)**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는 단일 기본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금지·경고 중심의 행정대응→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사업자 신고제→ 이용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포괄적 기본법 논의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형성되어 옴
- **(특정금융정보법)** 2021. 3. 25. 개정법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제도권에 최초 편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여 가상자산업을 AML/CFT 규율체계에 포섭함
 - 다만 가상자산의 사법상 성격을 정리하였다고보다, 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 7. 19. 시행.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이상거래 상시 감시, 금융위·금감원의 감독·조사 권한 등을 규정함
 - 다만 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가상자산이나 렌딩·스테이킹·하드포크 등 비전형 거래를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서,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고자 함⁴⁾

4) 대표적으로, 민병덕(2025. 6. 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안번호 10736. [계류중]

-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에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며, 디지털자산을 매매·중개·보관·집합관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인가·등록·신고 체계를 구축함
- 다만 현재 확정·시행된 법률이 아니라 발의·논의 중인 법안이므로, 향후 입법방향 내지 2단계 입법 논의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3.3 해외 주요국의 법적제도

- **(해외사례－일본)** 자금결제법(결제수단)과 금융상품거래법(투자상품)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해 오다가, 2026. 2. 3. 이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통합하여 가상자산을 “투자성 강한 금융상품”으로 규율함
 - 발행자·교환업자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수준의 규제 적용(최저 자본금 1,000만→ 5,000만 엔 상향), 내부자거래 규제 신설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해외사례－미국)** 별도 연방법 제정 대신 기존 증권법 등의 틀에서 Howey Test에 따라 SEC(증권)·CFTC(상품)·FinCEN(BSA)이 규율해 왔으며, 최근 개별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포괄 연방법인 GENIUS Act(2025. 7. 18. 제정)를 통해 1:1 준비금 유지·분리보관·이자지급 금지 등 발행 인가·감독 체계를 마련함
 -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 규율하는 Clarity Act가 입법 진행 중이며(2026. 5. 14.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해당 법안은 디지털상품(CFTC)과 투자계약자산(SEC)의 관할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해외사례－유럽)**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MiFID II 및 MAR의 적용을 받고, 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MiCA⁵⁾의 단일 규제체계 적용을 받음
 - MiCA는 가상자산을 일반 가상자산·자산기반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고,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에 대한 인가·행위규제 및 시장남용 금지를 규정함
- **(소결)** 미국은 판례법·행정해석 중심에 스테이블코인 연방법을 더한 방식이고, 유럽은 MiCA를 통한 완결적 성문법 방식이며 일본은 이원체계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통합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각국의 규제 철학에 차이가 있음

5) 2023. 6. 29. 발효

4.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쟁점 및 개선(안)

4.1 기타소득세 과세체계의 적정성

- **(쟁점)**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하나의 가상자산소득으로 통합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20%)하고 있으나, 처분 단계의 일회적 자본이득과 보유 단계에서 반복될 수 있는 대여소득(렌딩·스테이킹 보상 등)은 본질이 달라 일괄 분류는 재고할 여지가 있음
 - 처분 단계에서 가격차이로 발생하는 일회적 성격의 자본이득과 보유 단계에서 반복성이 발생할 수 있는 대여 소득(렌딩, 스테이킹 보상 등)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득 유형으로 모아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및 조세조약 적용 단계에서 국제적 이중과세·이중비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4.2 해외사례 및 개선(안)

- **(해외사례)**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산의 양도와 동일하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 미국은 포괄주의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른 자본자산 처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 단, 스테이킹 및 렌딩 보상은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됨
 - 영국은 암호자산 거래를 과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현재까지 별도로 입법한 바 없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기존의 자본이득세 틀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이 암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은 다른 자본이득과 합산하며 과세됨. 단, 스테이킹, 렌딩 등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 일본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종합과세, 5~45% 누진세율)으로 구분되나, 2025년 12월 세제개정대강에 따라 등록 거래업자를 통한 특정암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분리과세(20%)를 도입하고 3년간 손실이월공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예정(적용시기는 2028.1.1. 이후 거래분 전망)
- **(개선방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입법이 필요하고, 그 전에 단기적으로 대여와 양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 및 예시 거래 열거가 필요함

-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예시 거래를 고시·예규·FAQ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명세서상 거래유형(매도·매수·교환 양도 등)과 대응하여 완전성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미국·영국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과세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일본이 도입 예정인 특정 가상자산 신고분리과세 방식도 이월 공제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함

5. 가상자산 거래유형별 쟁점 및 개선(안)

5.1 스테이킹

- **(기본개념)** 스테이킹은 Proof-of-Stake(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제안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함
 - 가상자산을 보유자가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함으로써, 블록체인 네트워크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블록 제안 및 검증 과정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며, 슬래싱(sla⁶shing)되는 경우 예치 코인 일부가 차감되는 패널티⁶⁾를 받는 구조임
 - 스테이킹은 중앙화된 거래소, 거래소 외 기존 검증자 등에게 코인을 맡기고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유동성 풀에 코인을 예치하고 받는 LP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개인이 직접 솔로 스테이커로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존재함
- **(과세쟁점1)** 스테이킹으로 인해 수령하는 보상(가상자산)이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대여 소득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임
 - **(견해 1)** 중앙화된 거래소 등 검증자에게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경우, 개인이 코인을 검증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검증자는 동 코인을 활용하여 노드 검증을 하며, 노드 검증을 통해 받는 보상 중 일부를 대가로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본다면, 스테이킹으로 인한 보상은 코인을 대여(또는 사용)하고 받는 대여소득으로 볼 수 있음
 - **(견해 2)** 개인이 검증 용역을 중앙화된 거래소 등에 맡기고, 스테이킹으로 나온 보상 중 일부를 검증을 대행한 거래소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면, 개인이 인적용역을 대리인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 이러한 인적용역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영리성이 있다고 본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6) 슬래싱(sla⁶shing)은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서 검증자(validator)가 규칙을 위반(이중 서명 double signing, 장기 오프라인downtime 등)했을 때, 스테이킹된 코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패널티를 말함

수 있음

□ **(과세쟁점2)**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스테이킹으로 보상받은 가상자산의 소득 귀속시기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도 명확하지 않음

○ **(소득 귀속시기)** 위임자를 통한 스테이킹은 실제 스테이킹으로 보상이 되는 시기와 해당 보상이 스테이킹을 한 개인에게 보상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 귀속시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 과세표준)** 스테이킹 보상은 네트워크에 다시 스테이킹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상받은 가상자산의 시가도 계속 변동하므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일본)** 일본 국세청(國稅廳)의 暗号資産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 (FAQ), 2025.12, 1-7.에 의하면, 스테이킹 보상으로 가상자산 수령 시 수령시점의 시가를 잡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고, 스테이킹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해외사례-미국)** 미국은 납세자가 지분증명 블록체인의 자체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여 검증보상으로 추가 암호화폐 단위를 받은 경우, 그 검증 보상의 시가는 납세자가 해당 보상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을 획득한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포함됨

○ 한편, 일정기간 락업 상태이며, 락업이 해제되어 처분이 가능해진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인식함

- 이때 시가는 납세자가 지배와 통제권을 획득한 시점의 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킹하여 검증보상으로 추가 단위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함

- 즉, 스테이킹 보상 수령 시점에 일반 소득세를 과세하고, 추후 매도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체계임

□ **(해외사례-영국)** 스테이킹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시점에 기타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되며, 관련 비용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해외사례 요약)** 일본, 미국, 영국 모두 스테이킹으로 받은 가상자산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은 때 소득세 과세 + 처분할 때 자본이득 과세”라는 2단계 구조로 과세

○ 일본, 미국의 경우는 포괄주의를 적용하므로 스테이킹 보상의 성격이 이자인지, 대여소득인지 등 어떤 것으로도 정확히 명명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한 구조이며,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영국의 경우에는 스테이킹 보상을 HMRC 가이드נס에 기타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선안-대여소득인지 여부)** 대부분 국가에서는 스테이킹 보상으로 가상자산 취득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므로,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은 코인은 취득시점에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인이 직접 스테이킹을 통해 받는 보상은 계속적·반복적·영리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분리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개선안-소득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스테이킹 보상을 지급받은 날⁷⁾을 소득 귀속시기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즉, 스테이킹 보상이 개인별 계좌에 배분되었을 때, 개인별 보상이 스테이킹에 재투자 되더라도 보상을 받은 날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표준은 해당 보상이 개인에게 배분된 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스테이킹 보상(코인)을 대여소득으로 과세한다면 대여소득으로 과세 후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2단계 구조이므로, 대여소득에 대한 시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양도 시 취득원가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2 렌딩(lending), 유동성 공급 거래

가. 중앙화된 거래소(CEX)⁸⁾의 렌딩 서비스 및 과세 쟁점

□ **(기본개념)** 국내 대표적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코인 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렌딩 서비스(코인 빌리기)는 회원이 거래소에 일정한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을 회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대여자는 업비트로 수수료 수익을 수취함

○ 즉, 코인을 빌린 개인투자자는 하락이 예상되는 코인을 거래소에서 빌려 바로 팔고, 가격이 낮아지면 다시 동일한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게 되며,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강제 상환되어 담보를 잃을 수도 있음

□ **(과세쟁점)** 대여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이므로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며,⁹⁾ 차용자는 빌린 가상자산과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1항 4호

8) 중앙화된 거래소(Centralized Exchange)를 말함

상환하는 가상자산과의 차액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떤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소득세법 조문상 '대여로 인한 소득'은 빌려주는 쪽이 받는 대가를 가리키는 것이며, 차용자의 렌딩서비스로 인한 매매차익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더욱이, 일반 양도 거래는 취득 후 양도인데, 렌딩서비스 이용자의 매매차익은 매도가 먼저이고 취득(상환용 재매수)이 나중에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과세할지, 차용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을 부대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강제청산의 경우 양도로 처리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개선안-차익 및 수수료 비용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 차용자는 렌딩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누리므로 양도와 취득내역을 각각 매도금액과 취득금액으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차용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을 부대비용으로 차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강제청산 부분에 대한 과세) 담보된 가상자산이 강제청산 되면,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대여자 등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산된 부분만큼 양도로 인한 소득(또는 손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Defi¹⁰⁾의 렌딩 및 유동성 공급

- (Defi 렌딩거래의 기본개념) Defi에서의 렌딩서비스는 관리자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여자가 렌딩풀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차용자가 렌딩풀에서 가상자산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대여자는 렌딩풀에 코인을 예치하고, 예치 즉시 예치 증서 성격의 토큰(aToken 등)을 받게 되며, 풀 이용률에 따라 변동하는 대가를 수령함. 빌려준 자산과 같은 자산·같은 수량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대차거래에 가까움
- 차입자는 담보를 먼저 넣고 그 한도 내에서 가상자산을 빌리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신용이 아니라 담보에만 의존하므로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담보가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청산됨
- 렌딩 프로토콜이 예치 자산을 한데 모아 두고 대출·상환·담보 관리·청산을 코드로 자동 처리하며, 대가율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렌딩풀에 예치된 가상자산이 많고 대출수요가 적으면 이자율이 낮으며, 렌딩풀에 예치된 가상자산이 적은 반면 대출수요가 많으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음

9) 현재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상 대여소득 등에 대한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10)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를 말함

□ (Defi 유동성풀 공급거래의 기본개념)

- Defi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공급거래의 참여자인 유동성공급자(LP)는 두 종류의 토큰(A,B)을 정해진 비율로 짝지어 풀에 예치하며 LP토큰(지분증서)을 수령함
 - 그 대가로 거래수수료와 추가 인센티브를 받으며, LP토큰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나 스테이킹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유동성공급자인 LP는 추후 예치한 코인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돌려받는 수량은 예치한 수량과 다를 수 있음
- 트레이더(Trader)는 유동성풀에서 토큰을 교환하며 풀에 A코인을 넣고 B를 빼가며 교환 시마다 수수료를 떼어 풀에 남김. 트레이더가 유동성풀에서 토큰을 교환하는 이유는 차익거래를 위함¹¹⁾

□ (과세쟁점)

- (렌딩거래) 렌딩거래의 대여자는 Defi 렌딩풀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대가를 받는데 이를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볼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렌딩거래 차용자는 코인을 빌린 대가를 지급하는데 동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담보자산의 강제청산 시 이를 양도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임
- (유동성풀)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공급하면서 가상자산과 LP토큰 간의 교환이 발생하고 LP토큰 보유자는 유동성풀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이를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임
 - 한편, 트레이더는 유동성풀에 코인 A를 넣고 B를 스왑하는 거래를 하는데, 코인 교환 역시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거래로 볼지, 트레이더가 지급한 수수료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지가 현행 소득세법상 명확하지 않음

□ (해외사례-일본) 국세청(國稅廳)의 “暗号資産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2025.12, 1-7에 의하면, 렌딩에 대한 대가로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잡소득으로 과세하며, 암호자산의 취득시점 가액(시가)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렌딩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 (해외사례-미국) 미국은 Defi 렌딩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나 전용지침이 아직 없어 해석의 여지가 크고 불확실성이 높음

11) 풀 가격이 시장가보다 싸지면 차익거래자가 풀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팔고, 비싸지면 그 반대의 거래 발생

- **(해외사례-영국)** 영국은 렌딩(Lending) 과정에서 그 계약 내용에서 가상자산의 통제권(Control of token)을 이전하면서 경제적 소유(Beneficial ownership)까지 이전한 경우에는 거래 당시에 처분(Disposal)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 대차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대여자의 수익은 원금을 초과하여 대출기간 동안 받은 토큰의 수량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는 원금 상환분이 아닌 수익에만 적용
 - 대출시점에 가상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거래로 볼 경우 ㉠ 대출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 대출 상환 시 두 번째 처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첫 번째 처분의 처분가액을 두 번째 처분의 취득원가로 봄¹²⁾
- **(개선안-렌딩거래)** 렌딩거래의 대여자는 영국과 같이 예치한 코인에 대한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대여거래로 보는 렌딩거래)** 렌딩으로 수령하는 가상자산은 대여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원본 상환은 대여자산의 상환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과세표준은 해당 시점의 시가로 적용
 - **(원본에 대한 시세 변화분)** 가상자산을 대여한 시점과 상환받은 시점에 가상자산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는 양도로 인해 현금화된 것은 아니므로 보유기간 중의 시세 변화(미실현손익)이므로 최초 취득원가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양도거래로 보는 렌딩거래)** 대주가 가상자산을 렌딩풀에 예치하면서 통제권과 경제적 수익권을 이전하였다면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예치증명서 역시 최초 소유자가 예치증명서의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필요가 있음
- **(개선안-유동성풀 공급거래)** 유동성풀 공급거래는 예치한 코인에 대한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도 또는 대여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유동성 공급은 LP토큰 반납 시 자산 구성 자체가 변동되어 상환되므로 예치자산과 상환자산이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코인을 예치하고 받는 LP토큰 역시 경제적 실질은 일반 토큰과 거의 유사하므로

12) 예를들어, 70만원에 취득한 1BTC를 100만원에 대여한다면, 첫번째 양도소득으로 30만원이 부과되며, 이후 1BTC를 120만원에 상환하면 두 번째 양도소득으로 20만원이 부과된다는 의미임

코인을 예치하고 LP토큰 수령 시 사실상 코인 간의 교환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양도 거래로 가깝다고 판단됨

- 즉,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공급하고 LP토큰을 수령하는 시점에 양도(교환)로 보아 과세하며, LP토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로 보아 과세, 추후 LP토큰을 제출하고 유동성풀에서 가상자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Defi 유동성 풀에서 가상자산을 스왑한 트레이더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5.3 하드포크 및 에어드롭

가. 하드포크

- **(기본개념)** 하드포크(hard fork)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통신규약인 프로토콜(protocol)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분산원장(new ledger)과 이전 분산원장(legacy ledger)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 할 수 있으며,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노드는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하드포크라고 함(김갑래, 22-23)
- **(과세쟁점)**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볼 것인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현행 가상자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점에서 일괄 과세(취득원가를 0으로 함)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즉, 1단계 증여→2단계 양도의 형태로 2단계 과세를 할지, 과세를 양도시점으로 이연하여 일괄 과세할지에 대한 부분임
- **(해외사례-일본)** 하드포크는 분기 시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그 시점에 가치가 없으므로 그 가치를 0으로 보아 양도 시 일괄과세 하고 있음(즉, 과세 면제가 아니라 과세 시점을 이연한다는 개념임)
- **(해외사례-미국)** 하드포크 자체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하드포크 이후 에어드롭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음. 가상자산을 수령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분산원장에 에어드롭이 기록된 날짜 및 시간을 말하며, 과세표준은 가상자산을 수령한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산정하고 있음
- **(해외사례-영국)** 영국은 하드포크 자체를 수령(receipt) 행위로 보지 않고, 기존 자산의 취득원가 등을 신규 토큰에 배분하여 추후 양도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예를 들어, 기존 가상자산 100개의 총 취득원가가 10,000원(개당 100원)이고 하드포크로 수령한 신규 가상자산이 100개일 경우, 전체 200개의 총 취득원가는 10,000원이고 개당 취득

원가가 50원으로 감소하는 구조인 것임. 결과적으로 하드포크로 취득원가가 낮아지므로 추후 양도 시 일괄 과세되는 것과 같은 구조임

- **(과세방안)**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와 대여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하드포크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아니며, 증여로 보기에 시세가 없어 과세표준 산정에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양도 시 일괄 과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하드포크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원가를 '0'으로 보고 추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함

나. 에어드롭

- **(기본개념)** 에어드롭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토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토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행됨(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p.13, 2020.)
- **(과세쟁점)**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볼 것인지, 상품 및 경품 등으로 보아 일반 기타소득으로 볼지, 양도시점에서 일괄 과세(취득원가를 0으로 함)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즉, 하드포크와 마찬가지로 1단계 증여 또는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2단계 양도로 2단계 과세를 할지, 과세를 양도시점으로 이연하여 일괄 과세할지에 대한 부분임
- **(국내 과세현황)** 거래소의 이벤트성 에어드롭은 거래소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있음
 - 조세심판례는 이벤트 목적의 에어드롭을 기타소득으로,¹³⁾ 예규¹⁴⁾는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해외사례-일본)** 에어드롭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이 시세가 있는 토큰인 경우 그 시점의 시가를 소득(잡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에어드롭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이 시세가 없는 토큰인 경우 취득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이후 매각·교환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해외사례-미국)** 국세청은 하드포크와 연관되어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 취득 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나,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활용되는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13) [조심2025서2821, 2025.09.16.] 외 다수

1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 **(해외사례-영국)** 대가성 없이 마케팅이나 광고 목적으로 수령한 토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서비스에 대가나 기대에 따라 제공되는 대가성이 있는 에어드롭은 취득 시 소득세 과세,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다. 과세방안

- **(방안1)**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와 대여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에어드롭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아니며, 증여로 보기에 시세가 없는 코인도 있어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하드포크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성과 징세 효율성을 위해 양도 시 일괄 과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취득원가는 '0'으로 처리)
- **(방안2)** 영국 및 일본과 같이 대가성 여부, 시세 유무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
 -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토큰을 무작위로 할당받는 경우가 시세가 없는 에어드롭의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취득원가를 0으로 하고 추후 양도 시 일괄 과세함
 - 대가성이 있고 시세가 있는 에어드롭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시가로 과세하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상금이나 경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5.4 신종 가상자산 관련 과세쟁점 및 개선(안)

가. NFT (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 **(쟁점)**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의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한정되며, 동법 시행령은 수집 목적의 대체불가능한 전자적 증표(NFT)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적 증표는 다시 제외대상에서 제외되어(즉 가상자산에 포함) 과세대상 해당 여부의 경계가 불분명함
 - ①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으로 대체가능성이 큰 경우 ②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약화된 경우 ③재화·서비스의 직·간접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④불특정인 간 가상자산 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가상자산으로 과세되는 NFT라도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은 NFT의 대체불가능성·고유성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지며, 개별 실제 취득가액(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해외사례)**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를 달리하지 않으나, NFT의 개별성·고유성을 반영하여 취득원가 산정시 개별법을 적용함

- 미국은 NFT를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하되, IRS Notice 2023-27의 look-through analysis에 따라 NFT가 표상하는 기초자산이 세법상 수집품(collectible, 미술품·귀금속 등)에 해당하면 최대 28%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일반자산 20%보다 높음)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 자산으로 취급함
 - 영국은 NFT를 개별 식별 가능한 자산으로 보아 폴링(Section 104)·매칭규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처분가액에서 개별 취득원가를 차감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함
 - 일본은 NFT별 개별 취득가액을 사용해 재판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계산(양도소득=재판매수입-취득비-양도비용-특별공제)하며, 보유기간 5년 이하는 단기양도소득, 5년 초과는 장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해 장기분은 특별공제 후 금액의 2분의1만 과세함. 1차 유통(창작자 최초 발행)은 잡소득, 2차 유통(재판매)은 양도소득으로 구분
- (개선방안) 입법보다는 고시·예규·FAQ 등을 통해 NFT 판별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미술품·무체재산권 양도 등 기존 기타소득세 규정을 활용해 고유성·수집성이 있는 NFT는 그에 준하여 과세하고, 그 외 NFT는 일반 가상자산 과세방법을 적용하되, 대량발행·동질적 분할판매 등에 대한 계량화된 판별기준(Safe harbor)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NFT를 폴링 배제 대상으로 보아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시행령 등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 (쟁점)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DLT)에 기재·관리하는 새로운 발행형태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화될 예정(시행은 공포 후 1년)이나,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 미비로 과세방식에 불확실성이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전자증권법 제2조 제4호의 전자등록주식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은 제외목록에 없어, 현재의 토큰증권(ST)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투자자가 법제도상 증권으로부터 권리를 얻는다면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공시·인허가·불공정거래금지 등 증권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일 뿐 실질은 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이 되고, K-IFRS상으로도 일반 가상자산(무형·재고자산)과 달리 금융자산·금융부채로 분류됨

□ **(해외사례)**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를 토큰화(tokenization)되는 대상자산의 실질에 따라 기존 증권 및 금융상품 세제를 적용하는 성향이 있음

- 미국은 재산(property) 원칙을 유지하면서 토큰이 이전하는 권리를 채권(debt)·지분(equity)·자산공유(shared ownership)로 유형화해 과세. 지분형은 배당분배가 배당소득, 처분차익은 자본이득, 채무형은 이자소득·자본이득, 파트너십 지분형은 파트너십 과세체계 적용
- 영국은 가상자산을 지급교환형·유틸리티형·증권 토큰(ST)·스테이블코인 4종으로 분류하고, 증권 토큰은 기초자산을 투시(look-through)해 소재지·성격을 판정한 뒤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세를 적용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 분류에 따라 토큰증권을 분류하여 실무상 과세하고 있어, 특정목적회사(TMK)의 우선출자증권 형태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련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등의 처리를 함

□ **(개선방안)** 자본시장법 등이 개정되어 토큰증권(ST)이 증권화된 상황에서 이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여타의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기존 금융상품의 세무처리와 정합성이 맞게 과세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처분이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분류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토큰증권이 담고 있는 기초증권의 실질에 따라 세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토큰증권을 별개의 대상으로 보아 일괄 과세하기보다, 토큰증권이 담고 있는 기초증권의 실질에 따라 세무처리하는 것이 해외사례의 공통된 법리이자 실무 관행임. 실물증권에서 전자증권이 등장했다고 하여 그 기초증권의 소득유형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분산원장 기술로 새롭게 등장한 토큰증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리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의 처분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체계로 전환하여 손실통산·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 **(쟁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제외 대상(CBDC, 전자등록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에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되지 않아, USDT·USDC 등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기준자산에 가치를 고정(peg)하여 가격변동성을 의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쟁점이 됨

- 현행 소득세법상 기축가상자산 개념상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교환거래

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하여, 과세가액 계산 목적상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외화의 등가물처럼 취급되고 있음

- 소득세법상 개인이 일반 외국통화(달러 실물 등)를 보유하다 환율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인데, 달러 등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매도하여 얻은 원화 차익에 대해서 가상자산소득으로 20% 과세할 경우 실질이 유사한 외환거래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자체가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화폐 유사물로 볼지 일반 가상자산으로 볼지에 대한 선행 법령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과세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음

□ **(해외사례)** 해외 주요국은 대체로 스테이블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아 처분이익을 과세하나, 일부 결제형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려는 논의도 있음

-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해 사용·판매·교환 모두를 과세거래로 취급하나, 1달러 고정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비판적 논의가 있음.
- 영국은 스테이블코인도 다른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매각·교환 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며 (Section 104 폴링 적용), 재화·용역 대가로 수취하면 거래소득으로 과세함
-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머니유사형(전자결제수단, 법정통화 연동·발행가 상환보장)과 암호자산형으로 구분. 암호자산형은 통상의 암호자산과 동일하게 잡소득 과세. 디지털머니유사형은 현금·예금에 가까운 성격으로 취급되어 환율변동 손익이 잡소득(외환자산 규정)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 개인의 외환차손익이 비과세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2단계 입법이 추진 중인 현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또는 향후 시행될 2단계 법령(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서 원화·외화에 1:1로 연동되고 발행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별도 정의하여 가상자산소득세의 일반 처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은 창설적으로 과세대상을 정하지 않고 타법을 참조하는 구조이므로, 타법 정비 후 이를 참조하도록 소득세법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스테이블코인의 처분손익을 일반 외환차손익과 형평에 맞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반대 방향의 대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법상 외환차손익 자체를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스테이블코인 처분이익도 함께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6.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쟁점 및 개선(안)

6.1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손익통산, 양도·대여소득 구분

- **(쟁점)**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처리로 손익통산은 가상자산소득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이월공제는 불허되며, 원천징수 없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신고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가상자산을 금융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타 소득과 통산되지 않는 것을 부당한 세부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개인은 그러하지 못해 개인·법인 간 과세형평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해외사례)** 자산 전반을 총괄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해외 주요국은 자산 간 통산이 비교적 자유롭고 이월공제도 가능하며, 가상자산이라 하여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 미국은 자본이득·손실 통산에 제약이 없고, 순자본손실은 연 3,000달러까지 경상소득에서 공제되며, 초과분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됨
 - 영국은 순자본손실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하며, 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 부터 4년 이내 청구(claim)해야 함
 - 일본은 잡소득 범주 내에서만 통산 가능하고 초과손실 이월공제도 불허하였으나, 세계 개정대강에 따라 등록 거래업자를 통한 특정가상자산 거래이익은 신고분리과세(20%)로 전환되고 3년간 손실이월공제가 도입될 예정

〈요약-표1〉 손익통산·이월공제 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현행)	미국	영국	일본(개정 예정)
소득구분	기타소득 (분리과세)	자본이득 (원칙)	자본이득 (원칙)	잡소득 (단, 적격자산 신고분리과세 예정)
타소득 통산	불가	순자본손실은 일반소득 공제 가능	가상자산 간 및 여타 자본이득과 통산 가능	불가
이월공제	불허	허용	허용	불가 (단, 적격자산은 3년간 이월공제 도입 예정)

- **(개선방안)**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소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과세 하면서 자본이득 간에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여”와 “양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두 유형의 소득이 서로 통산되지 않도록 하되, 적어도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양도소득에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자본이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를 도입하여, 자본이득 간 손실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6.2 과세최저한 상황

- **(현황 및 쟁점)**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의 과세최저한은 250만원으로 그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음
 -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약 112만명에 달해 가상자산 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개인 납세자가 적지 않음
 -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므로 가상자산 소득세 납세자는 신고납부 경험이 없는 개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납세협력비용에 따른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의 4차 납세협력비용 추정 결과,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개인 평균 597만원, 종합소득세는 개인 평균 306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원인별로 살펴보면, ‘정보수취, 장부기장’하는 유형이 납세협력비용의 약 58.3%를 차지하고, ‘신고, 납부’ 유형이 31.4% 수준임
- 또한 징수의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소액의 납세자가 많이 신고하게 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지원비용,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이 커질 수 있음
 - 가상자산을 5백만원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이를 전액 매도한다고 가정하고 의제 취득원가인 50%를 적용하면 과세소득은 250만원이 산정됨. 즉, 가상자산 투자액이 5백만원 이상만 되어도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세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최저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선안)**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납부 역량, 납세협력비용, 징세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할 경우, 과세최저한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고납부 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이나 징세비용의 수준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추후 과세 인프라 개선이나 해외거래소 등을 이용한 거래의 세원 포착의 완성도에 따라 점차 과세최저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함

6.3 가상자산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원가

□ **(쟁점-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단가 산정방법)** 가상자산의 취득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취득유형과 취득 시 단가가 다양한데, 양도시점에 양도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임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기존에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 바 있음

□ **(해외사례-일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최초 취득연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평가 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총평균법을 적용함. 또한 취득원가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가액의 5%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함

○ 일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취득원가 계산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엑셀도 제공하여 취득원가 산정을 지원하고 있음

□ **(해외사례-미국)** 가상자산 취득원가를 개별법, 선입선출법 중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고 있으며, 지갑별·계좌별로 산정.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으로 간주함

□ **(해외사례-영국)** 영국은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각 가상자산 종류별로 하나의 풀을 구성하여 평균 취득단가 산정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same day rule과 Bed & Breakfast Rule을 병행하고 있음.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으로 간주함

□ **(취득단가 산정 관련 개선안)**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거주자에 대해서는 취득단가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산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물량흐름 상 이동평균법이 적절하지만, 거주자는 1년간의 가상자산 소득을 집계하여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므로 1년간 취득한 가상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신고 측면에서의 편의성도 확보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은 1년간의 가상자산 취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 다만, 일본과 같이 취득 및 처분 내역을 납세자가 입력하면 취득단가와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엑셀이나 프로그램 형태의 지원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의제 취득원가율 개선안)** 현행 소득세법은 취득원가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원가로 의제 하는데, 과세 도입 초기이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원가 의제율이 지나치게 높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자의 경우는 취득원가가 투명하게 식별되는데 비해 취득원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존재함
 - 따라서 과세 초기에는 50%의 취득원가 의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취득원가가 투명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여 취득원가 의제율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4 가상자산 거래 양성화를 위한 유인책 제언

- **(필요성)**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소득이 다 포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임
 - 만약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개인의 소득만 투명하게 관리되고, 해외거래소에서의 거래, 장외거래, 탈중앙화된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며,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면 과세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
 - 더욱이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해외 이탈(즉, 자금의 해외 이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사안임
 -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증가한다면, 세원 파악도 현재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최근 특정 디지털자산(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부에 등록된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 거래업자를 통해 양도한 경우 20%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최대 55%의 종합과세를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음¹⁵⁾
- **(개선안)** 우리나라 정부당국도 소득세 과세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 방지, 가상자산 투자자금의 해외이탈 방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유인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Digital Asset(2026.4.10.), [인터뷰] "일본 가상자산 분리과세 법안 통과" 새 과세 전략 총정리

- (예시 1)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취득 및 양도(대여) 거래로 인한 소득에는 10%의 세율 적용, 그 외의 경우에는 20% 세율 적용
- (예시 2)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취득 및 양도(대여) 거래 비중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7. 결론

- 본 연구에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에 앞서, 현행 소득세법상 쟁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쟁점별 개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타소득세 과세체계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가상자산소득을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입법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예시 거래를 고시·예규·FAQ 등을 통해 구체화
 - 장기적으로 미국·영국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과세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스테이킹 보상: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취득시점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개인이 직접 스테이킹하여 받는 보상은 계속적·반복적·영리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 국내 거래소의 렌딩서비스: 차용자는 주식을 차용하여 매도하고 추후 동종 가상자산을 취득(상환용 재매수)하여 상환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는데, 해당 매매를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차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을 부대비용으로 차감하는 방안
 - 차용자가 담보로 맡긴 가상자산이 강제청산 되면,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대여자 등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산된 부분만큼 양도차익(또는 손실)로 간주
 - Defi 렌딩 및 유동성풀 공급: 가상자산 예치 시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거래로 보는 방안
 - 렌딩거래는 빌려준 자산과 같은 자산·같은 수량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다는 측면에

서 대여거래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대여로 볼 경우, 렌딩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은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날 소득의 귀속시기로, 과세표준은 해당 시점의 시가로 하는 방안

- 유동성 공급은 LP토큰 반납 시 자산 구성 자체가 변동되어 상환되므로 예치자산과 상환자산이 불일치하여 대차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LP토큰의 경제적 실질이 일반 토큰과 유사하므로 코인을 예치하고 LP토큰 수령 시 가상자산 교환(양도)거래로 볼 수 있을 것임. 즉,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공급하고 LP토큰을 수령하는 시점에 양도(교환)로 인한 기타소득, LP토큰 양도 및 추후 LP토큰을 제출하고 유동성풀에서 가상자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 하드포크: 하드포크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원가를 '0'으로 보고 추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 에어드롭: 하드포크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양도 시 일괄 과세하는 방안(취득원가 0) 또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대가성이 있고 시세가 있으면 에어드롭을 받는 시점에 시가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 시 일괄 과세하는 방안(취득원가 0)
- NFT: 입법보다는 고시·예규·FAQ 등을 통해 NFT 판별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NFT를 풀링 배제 대상으로 보아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시행령 등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토큰증권: 자본시장법 등이 개정되어 토큰증권(ST)이 증권화된 상황에서 이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여타의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기존 금융상품의 세무처리와 정합성이 맞게 과세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처분이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분류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테이블코인: 개인의 외환차손익이 비과세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2단계 입법이 추진 중인 현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상 준비가 우선되어야 함

□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손익통산, 양도·대여소득 구분: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소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과세 하면서 자본이득 간에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과세최저한: 현행 250만원의 과세최저한을 납세자의 신고납부 역량,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 6백만원(납세협력비용 고려 시)~최대 2천만원(금

용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기준) 수준으로 인상하고, 추후 과세 인프라 개선이나 해외거래소 등을 이용한 거래의 세원 포착의 완성도에 따라 점차 과세최저한을 인하하는 방안

- 취득단가 산정: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거주자에 대해서는 취득단가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산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일본과 같이 취득 및 처분 내역을 납세자가 입력하면 취득단가와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엑셀이나 프로그램 형태의 지원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의 국경이 없고 거래내역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개인들만 투명하게 과세된다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쟁과 조세저항이 심해질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소득세 과세로 인한 국내 거래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증가한다면, 세원 파악도 현재보다 더 수월해지는 효과도 존재함

- 일본이 특정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 거래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저율 과세(20%)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5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듯이, 세율 차등화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임

- 그간 정부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트레블룰, OECD CARF 가입,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의무 등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CARF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거래, 탈중앙화거래소에서의 거래, 개인 간 거래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인프라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납세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홈택스와 같은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및 신고납부 지원 조직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본 문

I.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27년 1월 1일 여러차례 유예되었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
 -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0년에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폭등하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였음
 -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제도 시행 등의 사유로 3차례 유예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임

-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수차례 유예를 거치며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온 분야로, 제도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체계적 재검토가 필요함
 -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최초 도입 이후 시행 시기가 반복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과세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국회, 전문가 집단의 문제 제기가 지속됨
 - 2024년 과세 유예 당시 정부당국이 제시한 유예 사유가 해결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에 과세가 시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24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었는데, 정부당국이 제시한 유예 사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었음¹⁶⁾

-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유예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다음의 사항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설계된 법령은 가상자산 본질적 특성인 익명성과 탈중앙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함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만 과세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
 - 기타소득 과세,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등 가상자산 소득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논쟁 발생 가능(정유석 2021; 차동준 2021; 이소현과 박정우 2023; 안성희 2024)
 - 상기 외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가상자산 대여소득, 디파이), 특수한 가상자산 거래(에어드롭, 하드포크)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불명확, 해외거래소 이용자나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자의 조세 정보 파악의 어려움, 신고납부를 위한 지원시스템 미비 등도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안성희 2024)
 - 동일한 투자 성격을 갖는 자산임에도 증권형 토큰과 일반 가상자산 간 과세체계 차이

16)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2024.7.25. 기획재정부)

발생 가능성 및 특수거래(하드포크·에어드롭·스테이킹 등)에 대한 과세 공백 또는 과세 과잉 가능성이 존재함

-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나 거래 내용이 복잡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예시. CARF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거래소에서 거래, 개인 간 사적 거래, 해외거래소를 통한 코인 교환 등)에 대한 세원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존재함

□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에 대해 반복되는 논쟁과 유예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 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7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정책적 시사점 제시할 필요가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가상자산 세제의 쟁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2 연구 내용

□ 국내 가상자산 과세체계 및 추진 경과 검토

- 국내 가상자산 과세체계 및 추진 경과 검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법령상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현행 규정의 내용을 정리 및 제시함

□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 검토

- 국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자산기본법』,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의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여,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각국의 가상자산 지원 및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적정성 검토

-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이 소현과 박정우, 2023; 정유석 2021; 차동준 2021; 장기용 2020; 이은미와 윤태화 2023; 안성희 2024) 이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고자 함

□ 가상자산 거래유형별 과세 쟁점 및 개선(안) 제시

- 비정형 가상자산 취득거래에 대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 명확화
 - 암호화폐 관련 마이닝(Mining), 스테이킹(Staking), 렌딩(Lending), 에어드롭(Air Drop), 하드포크(Hard Fork) 등 가상자산 관련 고유 거래에 대한 손익 귀속 시점 및 과세표준 산정 관련 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신종 가상자산인 NFT(대체불가토큰), 스테이블코인(자산가치 연동), 증권형 토큰(ST,

증권 연동)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 이슈와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함

- 특히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이 제도권 자본시장에 편입됨에 따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 이원화되는 상황이 발생에서 이러한 논의가 필요

☐ 가상자산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관련 쟁점 및 개선(안)

- 가상자산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이 되고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손익통산, 과세최저한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 시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임
 - 2024년 7월 중 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의 적정성을 살펴봄

☐ 기타 제언

-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몇 차례 유예되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되므로, 조세저항이 우려됨
 - 따라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과세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언을 추가하고자 함

1.3 연구의 기대효과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쟁과 반복되는 유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자료의 활용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2020년 12월 29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나, 과세 준비 부족, 가상자산이용자보호제도 시행 등의 사유 등으로 3차례 유예되었음
- 가상자산의 기본적 성격과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과세제도로 정착하는데,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

2.1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 2026년 7월 9일 기준 전 세계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2조 2천억 달러 수준임¹⁷⁾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위축된 상태임
-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25년 하반기(25.7.1~25.12.31)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약 27개 가상자산사업자(18개 거래소, 9개 지갑·보관업자)가 있으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5년 상반기 95.1조원 대비 25년 하반기는 87.2조원으로 약 7.9조원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시장이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거래량이 5.4조원으로 여전히 그 규모가 작지 않으며, 가상자산 종목수는 오히려 증가한 상황임
 - 가상자산 이용자(계정수)는 1,113만개로 오히려 25년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 규모

구 분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증감(율)
1.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95.1조원	87.2조원	△7.9조원(△8%)
가상자산 종목 수	1,538개	1,732개	+194개(+12%)
- 중복상장 제외시	653종	712종	+59종(+9%)
일평균 거래규모	6.4조원	5.4조원	△1.0조원(△15%)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 수	279개	296개	+17개(+6%)
가격 변동성 ((최고가-최저가)/최고가)	72%	73%	+1%p
2.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손익(지갑·보관업자 제외)	6,178억원	3,807억원	△2,371억원(△38%)
원화예치금	6.2조원	8.1조원	+1.9조원(+31%)
3. 이용자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계정 수)	1,077만개	1,113만개	+36만개(+3%)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30대	-
1백만원 미만 보유	804만개	826만개	+22만개(+3%)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6년 3월 26일)’.

- 가상자산 소득세 납세자인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7) 서울신문(2026.7.9.), [서울데이터랩] 암호화폐 시가총액 2조2169억 달러, 비트코인 6만1732달러·이더리움 1726달러

-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와 교환을 포괄하고 있는데, 실제 원화마켓의 이용계정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원화마켓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약 99.9%임)

<표 6>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의 이용자 계정 수

구분	등록 계정 수(개)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 수(개)	
	'25.6월말	'25.12월말	'25.6월말	'25.12월말
원화마켓	24,078,278	25,544,789	10,739,272	11,112,371
코인마켓	366,331	367,093	29,628	13,867
계	24,444,609	25,911,882	10,768,900	11,126,238

주: 사업자별 등록 계정, 이용자 계정 수 단순 합산(중복, 휴면계정 포함)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6년 3월 26일)'.

- 개인의 가상자산 보유규모를 살펴보면, 약 74%가 10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자산 보유계정 비중은 10%(112만개)로 '25년 6월말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1억원 이상 계정 비중은 1.5%(17만개)로 '25년 6월말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의 약 74%의 잔고가 100만원 미만으로 대부분 과세최저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가상자산 소득은 추후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대부분이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상자산 보유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표 7> 연령대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

구분	보유 없음	50만원 미만	50만~1백만원	1백만~5백만원	5백만~1천만원	1천만~1억원	1억~10억원	10억원 이상
20대 이하	33만개 (15.7%)	145만개 (68.7%)	7만개 (3.2%)	15만개 (7.0%)	5만개 (2.3%)	6만개 (2.9%)	0.4만개 (0.2%)	0.01만개 (0.01%)
30대	27만개 (8.9%)	188만개 (62.8%)	14만개 (4.6%)	33만개 (11.2%)	13만개 (4.3%)	22만개 (7.3%)	2.5만개 (0.8%)	0.09만개 (0.03%)
40대	28만개 (9.3%)	170만개 (57.3%)	15만개 (5.0%)	36만개 (12.2%)	15만개 (5.0%)	29만개 (9.6%)	4.9만개 (1.6%)	0.19만개 (0.1%)
50대	23만개 (11%)	107만개 (49.8%)	11만개 (5.2%)	29만개 (13.5%)	13만개 (5.8%)	27만개 (12.3%)	5.5만개 (2.6%)	0.24만개 (0.1%)
60대 이상	10만개 (11.7%)	43만개 (48.1%)	4만개 (4.9%)	11만개 (12.7%)	5만개 (5.8%)	12만개 (13.3%)	3.0만개 (3.3%)	0.15만개 (0.2%)
전체	121만개 (10.9%)	654만개 (58.7%)	51만개 (4.6%)	125만개 (11.2%)	50만개 (4.5%)	95만개 (8.5%)	16.3만개 (1.5%)	0.69만개 (0.1%)
'25.上	111만개 (10.3%)	645만개 (59.9%)	49만개 (4.5%)	117만개 (10.9%)	46만개 (4.3%)	91만개 (8.5%)	17.4만개 (1.6%)	0.83만개 (0.1%)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6년 3월 26일)'.

2.2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

2.2.1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

가. 진행 경과

- 2020년~2021년 사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폭등하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20년 12월 29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이 제정됨¹⁸⁾
-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유예되었으며,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2년이 더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었음¹⁹⁾
 -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²⁰⁾을 고려하여 과세를 추가 유예함에 따라, 본 보고서일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임²¹⁾

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있음
- 양도는 매매(가상자산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와 교환(BTC마켓, ETH마켓 등에서 가상자산을 기축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여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4. 12. 31. 개정)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2023. 7. 18.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3. 7. 18. 제정)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3. 7. 18. 제정)

18) 법률 17757호(2020.12.29.)

19) 법률 제17757호 안 제37조 제5항, 법률 제17757호 안 부칙 제1조, 부칙 제5조

2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1)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p.64(2024.7)

-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023. 7. 18. 제정)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2023. 7. 18. 제정)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2023. 7. 18. 제정)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2023. 7. 18. 제정)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2023. 7. 18. 제정)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2023. 7. 18. 제정)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2023. 7. 18. 제정)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3. 7. 18. 제정)

다. 가상자산 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 (소득금액계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의 실제 필요경비(즉, 취득원가와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를 공제한 금액에 과세최저한인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²²⁾
- (취득원가) 단계별 취득 시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음²³⁾²⁴⁾
-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 총평균법 적용하되 거주자별 계산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이동평균법 적용하되 가상자산 주소별 계산
- (취득원가 의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²⁵⁾와 기존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²⁶⁾

22)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23)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취득가액(주소별 산정, 선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 적용)에 대한 비판이 많아,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변경함

24) 소득세법시행령 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183조, 법인세법시행령 129조

25) 소득세법시행령 88조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26) 2024년 말 세법 개정된 사항임(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 (취득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필요경비 의제 규정 마련²⁷⁾

-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사유: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²⁸⁾
- 필요경비 의제 비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3.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2024. 12. 31. 개정)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2024. 12. 31. 개정)

⑥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92조 제2항 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5. 2. 28. 개정)

② 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24. 12. 31. 개정)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025. 2. 28.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2025. 2. 28. 개정)

④ 법 제37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5. 2. 28. 신설)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25. 2. 28. 신설)

27) 2024년 세법 개정된 사항임(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 ④·⑤ 신설)

28)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 4항에 의하면, 취득원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025. 2. 28. 신설)

⑤ 법 제37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025. 2. 28.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5. 2. 28. 개정)

□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²⁹⁾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2. 3. 8. 신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022. 3. 8. 신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2022. 3. 8. 신설)

□ 세율 및 세액의 계산

○ (세율) 과세표준의 20%

○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가상자산소득은 다른 기타소득 및 투자 손익과의 통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의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³⁰⁾

•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250만원) × 20%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및 대여의 대가

29)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함(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30)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제1항 및 제2항

- 양도 거래의 필요경비: 가상자산의 실제 매입가액 + 수수료 및 부대비용

라. 신고납부 방법³¹⁾

- ☐ (거주자) 당해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차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자진신고 납부함
- ☐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인출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 거래소가 원천징수하고,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함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 제1항 제27호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202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2020. 12. 29. 개정)

2.2.2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

가. 개요

- ☐ 소득세법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별도 열거하여 분리과세(20%)하는 것과 달리, 법인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을 위한 별도의 소득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
-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한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³²⁾,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됨

31)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32) 법인세법 제14조, 제15조

- 따라서 개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에서 문제되는 ‘양도 대 대여의 소득구분’,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손익통산·이월공제 제한’ 등의 쟁점은 법인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요건, 결손금 이월공제, 익금·손금의 귀속시기 등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됨
- 따라서 개인과 법인 간 가상자산소득 과세방식의 구조적 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음. 개인은 결손금 이월공제 및 타소득과의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반면,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일반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등은 10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개인 투자자가 법인 형태로 가상자산 투자를 수행할 유인(투자수단의 법인화, 사업형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물론 개인소득세가 법인소득세와 달리 일반적으로 열거주의,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상자산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일종의 칸막이 과세를 적용하고 있긴 하나, 가상자산소득과 같이 결손금 공제 및 통산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심화됨
 -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처리로 인해 가상자산양도손실에 대해 구조적으로 타 손익과 통산이 불가하며, 이월결손금 공제도 불가능함³³⁾
- 가상자산 양도 등을 주된 영리를 목적으로(영리 목적성)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으로(계속성, 반복성) 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통산의 확장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가상자산 투자자를 상대로 이런 세무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러한 비대칭적인 문제는 개인의 손익통산·이월공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개인의 가상자산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 분류과세(금융투자소득세 등)가 도입될 경우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임

나. 가상자산 평가방법 관련 규정

-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원가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³⁴⁾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됨
-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평가 규정이 신설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것³⁵⁾으로 되어 있어, 개인 소득세법이 채택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체계와는 평가 방법이 달랐으나, 2026년 2월에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총평균법으로 개정되었고,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됨³⁶⁾

3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34)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35) 대통령령 제31443호 (2021.02.17.)

36)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02.27.), 2026.1.16. 발표되고 같은 해 2월 중 공포·시행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기존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이는 개인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2027.1.1.)에 맞추어 개인·법인의 평가방법 전환 시점을 일치시킨 것으로 이해됨
- 결과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진신고 해야 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총평균법(거주자별)으로 평가하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이동평균법(가상자산주소별)으로 평가하여 차이가 있는데(아래 <표> 참조), 이는 비거주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국내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징수 실무를 감안한 것으로 보임
- 과세기간 내에 전체 가상자산 매입가액을 알아야 하는 총평균법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용하기는 어려움

<표 8>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계산 단위	법적 근거
거주자	총평균법	거주자별 계산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비거주자·외국법인	이동평균법	가상자산주소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
내국법인 (~2026년)	선입선출법	법인별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2022.1.1. 시행)
내국법인 (2027.1.1.~)	총평균법	상동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2026년 개정, 2027.1.1. 적용)

출처: 저자 작성

- 한편, 가상자산의 평가에 있어 재고자산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세법상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에 가상자산은 제외되는 자산으로 규정³⁷⁾되어 있으며, 시가평가에 있어서도 주식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자산³⁸⁾으로 되어 있음

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및 세원포착 인프라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법인세법 체계에도 도입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가상자산집계표 등 법인세·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함³⁹⁾

3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호

38)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의 대상 사업자 범위가 종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되었으며, 자료 미제출 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⁴⁰⁾
 - 적용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2025.1.1. 이후⁴¹⁾ 발생하는 거래분부터이며,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2026.1.1. 이후⁴²⁾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제출명령 미이행분부터 적용됨
- 자료제출의무 확대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에 대한 과세당국의 파악 가능성을 제고하는 세원 인프라 준비의 일환이나 다음과 같은 보완 과제가 있음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경유하지 않는 거래(해외거래소 이용 등)는 현행 제출의무 체계로는 포착이 곤란하므로, OECD CARF 이행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상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와 연계⁴³⁾하여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 보유현황을 상호 검증할 필요가 있음

라. 법인 회계처리(K-IFRS)와 세무조정

- 가상자산에 한정하여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한 K-IFRS 기준서는 없으며 가상자산의 취득 보유 목적 및 성격에 따라 각 기준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2023년에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에 따르면, 재무보고 실체가 가상자산을 취득한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K-IFRS 제1002호), 무형자산(K-IFRS 제1038호),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등)으로 분류됨(아래 <표> 참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에 따르면, 취득한 가상자산이 취득목적이 판매목적인지, 판매목적 外인지, 투자목적의 증권⁴⁴⁾인지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발표됨

<표 9> 가상자산 K-IFRS상 회계처리 구분

구분	토큰 취득목적	계정 분류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	재고자산
	판매 목적 外	무형자산
토큰증권	투자 목적	금융상품

출처: 금융위원회 등,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2023.12.20.)

39) 법인세법 제120조의4, 소득세법 제164조의4

40) 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24조, 동법 시행령 별표2

41) 법률 제20613호(2024.12.31.)

42) 대통령령 제35350호(2025.02.28.)

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44) 토큰증권의 대부분이 증권 범주에 포함(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2023.12.20.))

- 현행 K-IFRS 하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무형자산(K-IFRS 제1038호) 또는 판매 목적 보유 시 채고자산(K-IFRS 제1002호)으로 분류되어, 손상차손만 인식하고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비대칭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2027.1.1. 이전 거래분) 또는 총평균법(2027.1.1. 이후 거래분)⁴⁵⁾으로 평가되어 이에 따른 세무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공될 필요는 있음
- K-IFRS 회계처리상 채고자산의 경우 평가손실이 인식가능하며, 무형자산의 경우 손상차손 인식, 재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으로 인해 취득 보유한 가상자산이 원가와 다르게 계상될 수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 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되어 양 기준의 차이는 세무조정 대상이 될 것임
 - 설사 회계처리상 가상자산의 원가가 유지된다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가 선입선출법(2027.1.1. 이전 거래분) 또는 총평균법(2027.1.1. 이후 거래분)으로만 인정되므로 이 차이 역시 세무조정 사항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내국법인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이동평균법인 원가흐름의 가정을 적용한다면, 이 차이 역시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가상자산이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자산이고, 이 자산을 규율하는 법률 및 회계처리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측면에서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실무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대법원2024두53727(2024.12.26.), 서울고등법원2024누37529(2024. 8. 20)의 사례⁴⁶⁾는 회계처리 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법인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처분손익을 인정한 사례로 법인세법상의 문언적 규정이 실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과 같이 현금흐름청구권 등 계약상 권리를 표창하는 가상자산은 예외적으로 금융자산·금융부채(K-IFRS 제1109호)로 분류되어 회계상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한데, 이러한 평가손익도 법인세법상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대상임
- 토큰증권은 주식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에 연동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음. 따라서 토큰의 거래만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고, 보유단계에서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의 참여가 가능⁴⁷⁾

45)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대통령령 제36130호

46) 납세자의 자체적인 회계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판결임

47)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2023년)

- 토큰증권이 금융자산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하나, 거래당사자에게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의무가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하다면 금융자산으로 처리 가능함
 - 토큰증권 보유자가 토큰에 연동된 실물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귀속받을 (실질적인)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거나, 해당 실물자산에 대한 분산 소유에 따라 잔여재산 청구권이 있다면 K-IFRS 상 금융자산임
 -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은 총평균법(2027.1.1. 이후 거래분)으로 평가하는 자산으로 규정⁴⁸⁾되어 있고, 토큰증권(ST)를 유가증권으로 보더라도 그와 관련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⁴⁹⁾ 평가손익은 세무조정대상이 됨
 -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분산원장등록주식 등은 제외대상에 있지 않아 동법상 가상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전자증권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도 분류될 수도 있으나 양 규정 어디를 적용하더라도 시가 평가는 어려움
 -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가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⁵⁰⁾되며, 토큰증권(ST)이 이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될 경우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될 수도 있음
- 이와 같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외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 적용에 있어 가상자산의 세무상 시가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현재 K-IFRS 상에서는 공정가치 평가모형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등에서 자산의 시가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가 요구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세법상 뚜렷한 규정이 없음
 - 시가평가에 있어서도 주식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자산⁵¹⁾으로 되어 있을 뿐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백한 규정은 없으며, 선행연구(문교현·조형태(2025))에서도 세법상 시가평가 방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K-IFRS상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모형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향후 회계기준 변화 추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시가평가에 대한 방향을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세무상 인정 요건(시가의 증빙,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고시가격 활용 등)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불확실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48)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2027.1.1. 이전 거래분은 선입선출법 적용

49)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50)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마. 가상자산사업자(법인)의 특수 세무

- 가상자산사업자가 렌딩·스테이킹 중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수익을 순액법(수수료만 수익 인식)으로 인식할 것인지 총액법(가상자산 원본까지 포함하여 수익·비용을 총액으로 인식)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법인의 매출액, 과세표준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국내 대형 거래소가 스테이킹 서비스 회계처리를 수수료 인식 방식에서 총액 기준으로 변경한 사례⁵²⁾가 있는데, 이는 스테이킹 사업의 위험과 보상을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대리인 대 본인)에 따른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자신이 스테이킹·렌딩 등의 사업의 수익을 총액법 또는 순액법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법인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 실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수익 인식 세무 처리 기준의 명확화가 요구됨
 - 총액법 적용 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함께 증가하나 순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법인세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
 - 예를 들어 법인 납세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이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에 총액법 또는 순액법 적용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음
- 한편, 가상자산의 양도·중개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 상호 정합성 차원에서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대차중개(렌딩), 유동성풀 운용지원 등 신종 서비스가 기존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과의 관계에서 과세·면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법인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계열법인(해외거래소, 유동성 공급 자회사 등)과 가상자산을 이전·대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산출 원칙(이전가격 세제)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음
 - 가상자산은 활성시장의 시가가 통상 즉시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형자산·용역 거래보다 정상가격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렌딩·스테이킹과 같이 위험·보상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거래의 경우 비교가능 거래를 찾기 어려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2.3 가상자산 과세자료 확보 관련 진행경과

가. OECD CARF 참여

52) 두나무 감사보고서(2026.03.30.)

- OECD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됨⁵³⁾⁵⁴⁾
- 가상자산은 명시적으로 금융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교환협정 체계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다 보니, 국제조세에서의 조세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됨⁵⁵⁾
 - 이에 OECD에서는 가상자산 특성과 해당 자산 고유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교환협정 체계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의 산출물이 OECD CARF임
 - OECD CARF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됨⁵⁶⁾
 - 가상자산사업자와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가 확보되고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관련 조세정보에 대한 개념, 내용, 교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상기 내용이 별도의 독자적 조세정보 교환체제로 구축되고, 국제적으로 조세정보가 교환된다면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다자간 조세정보교환협정 모델 제시
 - 정보의 자동교환체계를 정보통신기술 체제 내에서 구조화
-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가상자산 자동정보 교환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함⁵⁷⁾
- 공동성명 참여국은 2027년 정보교환 개시일정에 맞춰 적시에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신속하게 국내법에 반영하고 교환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함
- 우리나라는 2025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⁵⁸⁾ 정보의 범위,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및 보고대상 거래를 정함
- 금융정보 등의 범위⁵⁹⁾
 - 암호화자산 이용자의 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 등

53) OECD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CARF) 도입과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정승영 2025)

54)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OECD Publishing(2023)

55) 정승영(2025), OECD(2023), op. cit., pp.11~12

56) OECD 가상자산 조세정보 보고체계(CARF) 도입과 관련 쟁점에 관한 小考(정승영 2024.3)

57)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등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11.10.)

5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6항 2호

5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항 2호. 법 제36조 6항 2호에 따른 거래: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용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 금융거래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⁶⁰⁾
- 보고대상 가상자산 및 거래 범위: 교환, 이전 등⁶¹⁾
-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⁶²⁾
 -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수량 × 매월 말일 최종가격
 - (최종가격 적용방법)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적용
 -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선택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제공 의무

□ 소득세법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가상자산 거래명세서, 가상자산집계표)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⁶³⁾
 - 제출의무 정보 중에 회원정보에는 회원의 성명, 주민번호, 현금 입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번호가 포함됨
 -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 과세표준, 거래일자 등도 포함
 - 취급업소 간 그리고 취급업소와 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한 가상자산 수량, 이전 시점의 시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함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트래블룰 적용

-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travel rule)에 따라, 1백만원 이상의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 성명 및 가상자산 주소, 수신인 성명 및 가상자산 주소를 기록해야 하고,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 상기 자료는 거래 종료 후 5년간 정보를 보관해야 함
- 트래블룰은 과세와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나 FIU에서 가상자산의 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익명성이 해소되어 과세 회피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6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 등의 교환) 2항

6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 등의 교환) 4항

6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 방법) 1항

63) 2024년 세법 개정 사항임(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4, 법인세법시행령 제163조의3)

Ⅲ. 가상자산의 성격과 법적 제도

3.1 가상자산의 성격

3.1.1 가상자산의 정의 및 본건 검토의 범위

□ 실정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정의⁶⁴⁾함
- 동조에서 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②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③ 전자등록주식, ④ 전자어음, ⑤ 전자선하증권 및 ⑥ CBDC⁶⁵⁾ 등은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정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권고에 따른 것⁶⁶⁾임. FATF는 디지털로 거래·전송되거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표현하고 있음
- FATF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표현 중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나, 국내 법률에는 이러한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은 가상자산에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히 포섭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임⁶⁷⁾

□ 가상자산의 특징

- 이러한 정의는 가상자산의 아래와 같은 특징에 기인함
 - 정부나 중앙은행과 같이 신뢰를 가진 제3의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의 유효성이나 검증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동의나 작업증명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탈중앙화’
 - 데이터의 최초 등록시점부터 그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무결성’
 -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
 - 누구나 ‘블록체인 탐색기’ 등의 인터넷 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모든 거래 기록과 거래

64) 이에 비해 “디지털자산”은 단일 기본법상 확정 개념이라고 보다는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정책·입법 논의상의 개념으로 후술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자산을 종래 가상자산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증권, RWA 토큰 등 경계영역에 있던 자산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

65)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어로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를 의미함

66) 강현구 집필 대표,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온주편집위원회 (2024), 제2조, 3-4(강현구 집필 부분)

67) 블록체인법학회,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박영사 (2022), 29.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투명성’

- DDoS 공격이나 장부조작 공격 등으로부터 안전한 ‘보안성’ 일부 가상자산은 금이나 은, 석유와 같이 한정된 자원의 ‘희소성’과 유사한 특징도 가지고 있음⁶⁸⁾

□ 본건 연구에서의 가상자산의 범위와 신종 디지털자산의 가상자산 해당여부

○ 본건 연구에서의 가상자산의 범위

- 본건 연구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네이티브 코인,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거버넌스 토큰, 그 밖에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반으로 보유·이전·처분·운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함
- 다만, NFT, 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 등 이른바 신종 디지털 자산은 가상자산, 증권, 전자금융수단 또는 별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의 경계에 위치하므로, 가상자산의 성격을 논의할 때 그 법적 위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종 디지털자산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 토큰증권⁶⁹⁾

-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유통된다는 기술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가상자산 규율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율의 적용을 받음
- 금융위원회도 토큰증권에 관하여,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여 발행·유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⁷⁰⁾,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현재 논의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는 이원적 규율체계가 정립되는 것으로 보임⁷¹⁾

▷ NFT

- 일률적으로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기 어려움

68) 사법정책연구원,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2022), 32-33면

69) 한편, 토큰증권(Security Token)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 1.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후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27년.1월, 잠정) 시행될 예정인바, 해당 개정안은 ① 분산원장 기반으로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 도입하고, ②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 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등 이들을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인” 증권으로 편입하여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공시 등 모든 증권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함

70) 금융위원회(2023), [보도자료]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함 <https://www.fsc.go.kr/no010101/79386?curPage=&srchBeginDt=&srchCtgr=&srchEndDt=&srchKey=&srchText=&>

71) 금융위원회(2023), [보도자료]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386?curPage=&srchBeginDt=&srchCtgr=&srchEndDt=&srchKey=&srchText=&>

-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먼저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를 제시하고 있음⁷²⁾⁷³⁾

▷ 스테이블코인

-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 또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지급 수단적 기능과 투자·결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짐.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별도의 유형으로 독립 규율하고 있지는 않음
- 스테이블코인은 경제적 가치와 전자적 이전 가능성을 가지고 법령상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⁴⁾

□ 요약

- 현행법상 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별도 취급됨. ② NFT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성 및 가상자산성이 순차적으로 판단됨. ③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향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별도 규율될 가능성이 있는 경계영역에 해당함
- 본 보고서에서 연구대상을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정하되, 보고서의 목적인 과세상 쟁점 분석을 위해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함

3.1.2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가상자산의 국내법상 법적 성격 특히, 가상자산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상 자산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물권적 반환청구권, 선의 취득 및 강제집행절차 등 사법상 권리구제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만약 가상자산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면, 기존 물권법 체계를 비교적 용이하게 적용

72) 금융위원회(2024), [보도자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2418?curPage=&srchBeginDt=&srchCtgr=&srchEndDt=&srchKey=&srchText=&>

73) 금융위원회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단일성·고유성이 강한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상호 대체 가능성이 높거나, 분할 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교환되어 사실상 가상자산처럼 기능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2024),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및 QA 참조 (<https://www.fsc.go.kr/po020201/83939?curPage=3&srchBeginDt=&srchCtgr=&srchEndDt=&srchKey=&srchText=&>)

74) 한편,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라는 개념을 두고,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자산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구별하여 규율하려는 구조를 택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성, 준비자산, 상환청구권, 금융안정성 문제를 별도로 제도화하려는 입법 논의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민병덕(2025. 6. 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안번호 10736, [계류중] 참조.

할 수 있을 것임. 그렇지 않다면, 보유자의 가상자산 귀속 및 그에 대한 보호에서 차이를 보이게 됨

- 이하에서는 민법에 따른 물건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법원이 가상자산의 물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함

□ 민법상 물건의 정의 및 관련 논의

- 우리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리가능한 무체물인 자연력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포함함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물권의 객체인 물건의 요건으로는 ①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관리가능성, ③ 독립성, ④ 비인격성을 들 수 있음⁷⁵⁾
-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여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명확성을 위한 것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재산인 디지털자산에 대해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는 불가능함
- 그러나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는 것일 뿐, 물건의 개념 자체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묶어두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함. 시대의 변화와 거래의 필요성에 따라 물건의 개념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적 결단이나 유연한 해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임⁷⁶⁾
- 아래에서 각 요건에 대해서 검토함
 - 유체물은 공간을 차지하고 감각될 수 있는 형체를 가진 것을 의미함. 통설은 무체물 전부를 물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 중 자연력은 물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연력에는 빛, 열, 전기, 에너지, 음향 등이 포함되나, 권리의 경우 물권의 객체는 될 수 있어도, 물건으로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임⁷⁷⁾
 - 관리가능성은 배타적 지배가능성으로 사람이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야 법률상 물건에 해당함
 - 독립성은 어떠한 개체가 다른 개체와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됨. 판례는 독립성의 기준으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삼고 있음⁷⁸⁾

75)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총칙 2]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58 (김종기 집필 부분)

76) 사법정책연구원,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가상자산의 물건성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2026)

77) 사법정책연구원,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가상자산의 물건성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2026), 151

78)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참조

□ 판례에 나타난 가상자산의 물건성에 대한 논의

- 물건성과 관련된 초창기 대법원 판례: 피고인이 소속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나온 행위에 대해 절도죄의 성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정보가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함(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25 판결)
- 이후 민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디지털정보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최초로 판시하였음⁷⁹⁾.
- 법원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민법상 임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유상임차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음(대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판결)
- 이후 판결들도 위 고등법원의 판결과 같은 선상에서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일례로,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 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⁸⁰⁾)
- 가상자산의 범죄수익추징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므로, 이를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한 추징을 긍정하였음(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3.1.3 비정형화된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79) 사안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 해오던 중, 원고가 피고 측 거래소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의 송금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피고가 오송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인도 및 강제집행의 불능일 때에는 환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임

80) 사안에서 피고인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사안에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함

-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단순한 매매차익에 한정되지 않고, 채굴(마이닝),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비정형 거래를 통해서도 발생함
- 현행 국내 법제는 이러한 비정형화된 가상자산 거래 행위의 법적 성격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를 중심으로 과세 및 규제를 설계하는 것으로 보임⁸¹⁾

□ 주요 거래 관련 정의

- 채굴(마이닝): 작업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해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스테이킹: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동결하여 검증인으로서의 권한을 확보하거나 이를 위임하는 행위인데,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검증 오류나 부정행위가 없을 시 블록 생성 보상과 수수료를 지분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렌딩: 가상자산 보유자가 스마트 계약 또는 중앙화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약정된 이자를 받는 금융 서비스를 지칭함
- 에어드롭: 특정 가상자산 관리자(프로젝트 팀)이 마케팅,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 또는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특정 조건⁸²⁾을 충족한 이용자들의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행위를 지칭함
- 하드포크: 가상자산의 기본 프로토콜(규칙)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전 버전과 새로운 버전 간의 호환성이 단절되는 경우 가상자산이 두 개의 독립된 것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함

□ 판례는 비정형화된 가상자산 거래의 법적 성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지 않음

- ① 채굴 또는 하드포크는 가상자산을 채굴에 따른 보상 및 그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고⁸³⁾, ②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와 달리 거래소 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수탁·운용하여 보상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임치, 소비임치, 위임, 비전형 투자계약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관·관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⁸⁴⁾, ③ 렌딩은 소비대차, 소비임치, 위임 또는 투자계약적 성격뿐 아니라 대여 소득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어, 원금 보장, 확정수익, 이용자 자산의 풀링 및 운용, 제3자 위탁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실질보유·

81) 이은미, 윤택화, (2023),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12(4), 151-190.

82) 특정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의 보유 및 미션 수행 등을 지칭함

83) 상동, 169.

84) 금융위원회 (2025),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5247?curPage=&srchBeginDt=&srchCtgy=&srchEndDt=&srchKey=&srchT>

분리보관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레버리지성 대여, 금전성 대여, 제3자 위탁형 대여를 제한하고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⁸⁵⁾, ④ 에어드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리워드, 마케팅 보상, 용역 제공의 대가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대체로 이해되고 있음
- 다만 이들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며, 그에 따라, 부수되어 발생하는 취득가액, 과세시점 등 이들의 과세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비전형거래의 경우 각 사안별로 여러 가지 법적 성격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함
- 현 상황에서 비정형화된 가상자산 거래는 기존의 매매, 대여, 이자, 배당, 증여라는 전통적 법률개념 중 어느 하나로 일률적으로 포섭하기 어려우며, 그 법적 성격은 거래의 명칭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취득 원인, 이용자의 지배 가능성, 사업자의 보관·관리 또는 운용 관여 정도, 원금·수익 약정의 존재, 경제적 이익의 귀속 구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2 한국의 법적 제도

3.2.1 개관: 행정규제에서 업권법 논의로의 발전

-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는 처음부터 단일한 기본법 형태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확산과 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형성되어 왔음
-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초기에는 가상자산의 투기성, 자금세탁 위험, 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지도와 형사법적 대응이 중심이었음
- 이후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안으로 편입되었고,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이용자 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음
- 현재는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거래지원, 스테이블코인, 업권별 진입규제, 자율규제기관, 감독·제재 체계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2단계 입법, 즉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임

□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는 금지·경고 중심의 행정대응 →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사업자 신고

85) 상동

제 → 이용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 발행·유통·공시·업권규제를 포함한 포괄적 기본
법 논의로 발전되어 왔다는 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음

3.2.2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이루어졌음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또는 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로 규정하고, 개정일인 2021. 3. 25부터 이들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외국환거래법 등 AML 관련사항을 신고 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및 자금세탁방지의무(동법 제4조 내지 제8조)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해태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동법 제17조)
- 특정금융정보법은 그 자체로 가상자산의 사범상 성격을 정리하였다기 보다는, 가상자산 및 그 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응하여 그 사업자에게 법령에 따라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위험평가, 내부통제, 거래블록 준수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들을 AML/CFT 규율체계로 편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편입

- 가상자산사업자의 AML/CFT 규율체계 편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규율에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 7. 19. 시행됨
- 이 법의 목적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음(제1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권리”로 정의하고,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하며(제2조), 가상자산을 기존 전자금융수단, 전자증권, 전자어음 등과 엄격히 구별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장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임

- 법 제2장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함(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예치금 운용수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함(시행령 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함(제7조 제2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제10조 내지 제12조)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함
 -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통보의무를 부과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권한을 부여함(제13조 내지 제18조)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이 AML/CFT 규제에 치중하였던 현실에서 더 나아가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보호 및 시장질서에 대한 기본틀을 제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다만,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렌딩·스테이킹, 하드포크 등 비전형 가상자산 거래를 다루고 있지 못하고, 그 외에도 업권법적 성격을 가지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함
- 이에 따라 이를 모두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논의

-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큰 틀에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2단계 입법의 성격을 가짐. 현재 단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의·논의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음
- 현재 발의되어 논의 중인 법안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내용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이므로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등록·신고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발행·공시·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나,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의 논의와 동일하게, 폐쇄형 전자적 증표, 일정한 게임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은 제외함(제3조)
 -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규율대상으로 포섭하고자 함
 - 디지털 자산업을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제4조).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 개념보다 넓고 세분화된 규제 체계로서,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보관, 집합관리, 일임, 자문, 주문전송, 유사자문까지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로 보임
 - 사업자가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를 금지함
 -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건전성, 전산안정성, 이해상충 방지체계도 마련함(제19조 내지 제34조). 이는 가상자산업을 금융업에 준하는 규제 대상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률상 허용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함. 또한 디지털자산시장 개설, 거래지원, 유지심사, 거래지원종료 절차,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시의무를 규정함. 이는 기존의 사실상 ICO 금지 정책 또는 거래소 자율상장 구조에서 벗어나, 발행·공시·거래지원 절차를 법률상 제도화하려는 방향으로 사료됨
 -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던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정한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행위를 허용하는 구조를 제시함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검사·조사·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감독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도 별도로 마련함
-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의의는 현행 법제의 분절성을 보완하고,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시장 규율체제로 포섭하려는 데 있음

- 특정금융정보법이 AML 규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발행, 유통, 공시, 거래지원,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자율규제기관, 감독·제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법률을 지향함
- 다만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의·논의 중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요건, 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권한, 업권별 인가·등록·신고 기준, 기존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관계,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과의 경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임

3.3 해외 주요국의 법적 제도

3.3.1 서론

- 가상자산은 국경의 경계가 없는 초국경적 거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일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테러자금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공조가 개별 국가의 법제화에 우선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음
- FATF가 발표한 규제 권고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등록제 및 면허제 시행, 고객 본인 확인(KYC), 의심 거래 보고(STR)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고, 이는 세계 각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표준으로 작용하였음
- 이러한 표준을 토대로 각국은 규제 철학에 따라 각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왔는데, 이하에서는 일본,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그 법적 제도를 검토함

3.3.2 일본⁸⁶⁾

-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원적 구조
 - 일본은 가상자산을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과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 두 법률을 통해 규제해 왔음
 - 자금결제법은 가상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금융상품거래법은 투자대상으로서의 성격에 각각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옴

86) 신경희, 2025,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동향」, 자본시장포커스 2025-14호,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2026,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근거법의 전환」, 자본시장포커스 2026-06호, 자본시장연구원.

-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2017년 시행)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당시 명칭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도입하여 거래소 등 '암호자산 교환업자'에 금융청 등록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용자 자산 분리관리의무 등을 부과하였음
- 2019년 개정에서는 명칭을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함. 같은 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전자기록이전권리를 표창하는 증권형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종류의 토큰에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 2020년 개정에서는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 규제가 금융상품거래법에 도입됨
- 2022년 개정에서는 시세조종, 풍설유포 등 불공정거래 금지규제에서 그간 제외되어 있던 규제가 처음 도입됨
- 2023년 개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전자결제수단 개념과 그 취급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자금결제법에 도입함

□ 금융상품거래법 중심으로의 전환 및 규제 강화

-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투자대상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지고, 기존의 체계만으로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음
- 2026 2. 3.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중규제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통합하고,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 이로써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결제 수단'에서 '투자성 강한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거래법상의 투자자 보호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함(다만, NFT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상품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위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자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됨
 - 중앙집권형 암호자산과 비중앙집권형 암호자산으로 나누어 공시 의무를 도입
 - 하였는데, '중앙집권형 암호자산'은 발행자(중앙집권적 관리자)가 가상자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로, 발행자는 가상자산의 기능, 기술, 공급량, 위험, 발행자 정보, 자금 사용 목적, 프로젝트 내용, 보유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비트코인처럼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금조달을 수반하지 않는 '비중앙집권형 암호자산'은 교환업자가 정보 작성 및 공시 의무의 주체가 되어 투자 권유 이전에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암호자산 교환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증권사 등에 적용되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함
 - 진입시 필요한 최저 자본금이 1,000만 엔(약 1억 원)에서 5,000만 엔(약 5억 원)으로 상향

- 자기자본비율 규제 · 해킹 유출 대비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신설
- 스테이킹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고객 위험고지 의무 도입
- 상장심사 · 취급심사의 법제화, 광고규제 ·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 · 최선 집행의무 · 투자자 적합성원칙 등 투자자 보호 중심의 행위규제 강화
- 지갑(월렛) 개발사 등 중요 시스템 공급업체도 사전신고제 · 시정명령 등 새로운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됨

○ 내부자거래 규제를 도입함

- 규제 대상 가상자산은 일본 내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취급하고 있거나 상장 신청을 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함
- 규제 대상자는 발행자의 임직원, 주요 주주,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중요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 수령자를 내부자의 범위에 포함
- 중요 사실의 범위는 중앙집권형 암호자산 발행자의 업무 관련 사항(파산, 중대 보안 리스크 발생)과 교환업자의 취급 관련 사항(신규상장, 상장폐지, 해킹), 발행량의 20% 이상의 대규모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중요 사실의 범위로 열거하고 포괄 조항을 마련함
- 내부자거래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암호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압수 · 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위반자에 대해 부당 이득 환수 성격의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3.3.3 미국

□ 증권법 등 기존 법 체계 내에서 규제⁸⁷⁾

-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별도의 연방 법령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증권법 등 법 체계 내에서 감독기관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규율하는 접근을 해왔음.
-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법상의 전형적인 증권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지만, 증권법상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가상자산이 투자계약 등의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9년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계약 분석의 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상자산의 투자계약 해당 여부는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Howey 기준에 따라 판단됨
 - 그 기준은 ① 금전의 투자, ② 공동사업, ③ 타인의 노력에 대한 의존, ④ 투자 수익

87) 김갑래, 2021,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이슈보고서 21-13, 자본시장연구원.

에 대한 합리적 기대라는 네 가지 요건으로 구성됨

- 예컨대 “타인의 노력에 대한 의존” 요건은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어 있을수록 발행인, 개발팀, 운영자 등 제3자의 경영적·사업적 노력에 주로 의존하는 비중은 낮아져서, Howey 기준에 따르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됨

- SEC는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증권법상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등록 판매 중지와 과징금 등을 명하는 등 행정적 규제를 해왔음. 대표적으로는 Munchee 사례가 있는데, Munchee사는 식당에 대한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음식을 살 수 있는 가상자산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SEC이 증권으로 판단하였음.
- 상품 또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자 보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가 담당하면서,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적 규제를 해오고 있음. 예를 들어, CFTC는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폰지 사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는데,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판단하여 상품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을 적용한 것임.⁸⁸⁾
- 또한, 미국은 SEC·CFTC를 통한 증권·상품 규제와는 별도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 체계를 통해 가상자산 취급업자에게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s Business, MSB)로서의 등록 및 AML 의무를 부과해 왔음.
 - MSB는 사업의 정기성·조직화 여부나 인가된 사업체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서 수행하면서 연방규정 31 CFR §1010.100(ff)(1)호부터 (7)호까지 열거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됨
 - 그 중 (ff)(5)호는 금전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송금업자”를 규정하는데, SEC 산하의 FinCEN은 2019년 행정해석문 FIN-2019-G001(“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Certain Business Models Involving Convertible Virtual Currencies”)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송금업자로서 BSA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MSB로서 등록을 하도록 하였음⁸⁹⁾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 제정 : GENIUS Act

- 미국은 2025. 7. 18.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연방법인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하 ‘지니어스법’)를 제정·공포하였음.

88) CFTC, v. Gelfman Blueprint Inc. S.D.N.Y.

89) MSB가 등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등록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이사·임원 및 그 밖에 사업을 소유·지배하는 자의 성명·주소, ③ 사업체가 거래계좌를 보유한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의 명칭·주소, ④ 다음 연도에 예상되는 사업규모에 대한 추정치, ⑤ 그 밖에 재무장관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

- 지니어스법은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AML 위험관리 및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앞서 살펴본 SEC·CFTC 중심의 증권·상품 규제체계와는 별도로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연방 차원의 인가·감독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임
- 그 배경에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결제 통화가 등장하면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고 분석됨.
- 지니어스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를 보상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① 디지털자산을 화폐가치와 교환, ② 디지털자산 상호간의 교환, ③ 제3자에 대한 디지털자산 이전, ④ 디지털자산 수탁자로서의 행위, ⑤ 디지털자산 발행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참여 중 하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함
 - 다만 분산원장 프로토콜 자체, 자기수탁형(self-custodial)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개발·운영, 거래검증·분산원장 노드 운영, P2P 거래를 위한 유동성풀 참여 등은 그 적용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탈중앙화 인프라 자체에는 규제가 미치지 않도록 설계함
 -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위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대신, 허가된 발행인만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자기자본 적정성, 감사기준 등을 포함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함
 - 발행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뉨 :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자회사의 경우 연방은행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핀테크나 빅테크 같은 비은행 기관은 연방 차원에서는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주 차원에서는 연방 기준과 대등한 주 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 준비금 관리 측면에서는 엄격한 1:1 준비금 유지 의무가 부과됨. 발행인은 코인 발행량과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을 미국 달러, 단기 국채, 요구불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 확보해야 함. 이 준비금은 발행인의 고유 재산과 분리 보관(Segregation)되어야 함
 -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금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가상자산 보유자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처럼 운용되거나 증권성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 자금세탁방지(AML) 및 기술적 요건의 경우에도, 은행비밀보호법(BSA)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어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AR)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이나 연방기관의 적법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발행인은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 동결, 소각 또는 이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함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 입법 : Clarity Act

- 이처럼 미국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별도의 포괄적 입법 없이,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행정명령 및 규제기관의 집행을 중심으로 규율해 왔음. 최근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별도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그 밖의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법적 공백이 존재함
-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입법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법안은 2026. 5. 14.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
-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본적으로 ① 디지털 상품(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② 투자계약자산(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가상자산), ③ 지급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하고,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는 CFTC가, 투자계약자산에 대해서는 SEC가 각각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함
- 위 법안은 성숙한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이라는 평가 기준을 도입함
 - 탈중앙화된 구조가 인정되면 전통적인 증권 등록 절차가 면제될 수 있고, 탈중앙화된 구조가 인정되지 않으면 SEC 관할에 따른 규제가 적용됨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가 토큰 공급량 또는 거버넌스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하는지 여부, 오픈 소스 코드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됨
 - 위 법안은 디지털 상품을 취급하는 중개기관(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딜러)에 대해 CFTC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자산 분리보관 등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 의무를 부과함. 또한 이들을 명시적으로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함으로써, 각 기관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3.3.4 유럽

□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 MiFID II 및 MAR⁹⁰⁾

- EU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MiFID II)의 적용을 받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에 직접 구속력을 갖는 규정인 시장남용규정(Market Abuse Regulation, MAR)이 적용됨.
- MiFID II는 '지침'으로서 각 회원국이 자국 실정에 맞게 입법하므로 회원국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반면, MAR은 단일 규정으로서 모든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됨.
- MiFID II는 미국처럼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주로 해당 자산이 "양도성증권(transferable securities)"에

90) 김갑래, 2021,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이슈보고서 21-13, 자본시장연구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음. 실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의 Howey 기준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운영되고 있음

□ 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 MiCA⁹¹⁾

- 비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시장규제안(Markets in Crypto-Assets, MiCA)이 2023. 6. 29. 발효된 이후로 EU 전체에 단일한 규제체계가 마련됨
- MiCA는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서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시행은 개별 회원국의 기존 입법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짐
- MiCA는 119개 항에 걸쳐 제안이유를 상세하게 담고 있는 전문(Recital), 9개 편에 걸친 149개 조문으로 편제된 본 조문, 6개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음
- 가상자산의 유형을 구분하여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이하 'CASP')에 대한 인가 및 행위규제, 시장 남용행위의 예방과 금지 등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함
- 일반 가상자산과 자산기반토큰·전자화폐토큰의 구분
 - MiCA는 가상자산을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한 일반 가상자산, 자산기반토큰(ART), 전자화폐토큰(EMT)으로 구분함
 - 자산기반토큰은 여러 개의 법정 화폐, 하나 이상의 상품, 하나 이상의 가상자산을 참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달러 등에 연동하는 리브라가 있음
 - 전자화폐토큰은 하나의 법정화폐의 가치를 참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함
- 각 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발행인에게 규제되는 수준이 상이함
- 일반 암호자산의 경우
 - 발행인은 법인이면 족함(MiCA §4.1.(a))
 - 발행인은 감독당국의 사전 인가 없이도 암호자산에 관한 백서를 발행·통지·공개하면 일반대중에게 암호자산을 제공하거나 암호자산 거래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음(MiCA §7.1, §7.2)
 - 다만 백서 발행 20일 전까지 감독당국에 통지하여야 하고, 감독당국은 발행의 전후에 걸쳐 개입할 권한을 가지며 백서에 추가 정보의 포함을 요청할 수 있음(MiCA §7.2, §82.1)
 - 백서는 발행인의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하고, 해당 암호자산이 투자자에 의해 보유되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함(MiCA §8.1)
 - 예외적으로 무료제공(에어드롭), 채굴을 통해 자동 생성되는 암호자산, 대체불가능한

91)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2023,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https://www.upbitcare.com/academy/research/568>, 김홍기, 2022,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우리나라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 상사법연구 41권 2호.

암호자산(NFT), 회원국별 150명 미만 제공, 12개월간 EU 내 제공액 1백만 유로 이하, 적격투자자 대상 한정 제공의 경우에는 백서 발행의무가 면제됨(MiCA §4.2)

○ 자산기반토큰의 경우

- 자산기반토큰은 여러 개의 법정화폐, 하나 이상의 상품, 하나 이상의 암호자산 또는 그 조합을 참조하여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MiCA §3.1.(3)), 가치 이전이나 지불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것이 예상되어 일반 암호자산보다 엄격하게 규제됨
- 발행인은 EU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MiCA §15.2), 제19조에 따라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일반대중에게 토큰을 제공하거나 거래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음(MiCA §15.1). 즉 일반 암호자산과 달리 사전적 인가체계가 작동함
- 백서에는 일반 암호자산 발행인에게 요구되는 제4조의 내용 외에도 발행인의 역할, 제3자에 대한 책임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MiCA §17.1)
- 발행인은 최소 35만 유로 또는 직전 6개월 평균 준비자산의 2% 중 큰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당국은 위험관리·준비자산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를 20%까지 가감할 수 있음(MiCA §31.1, §31.3)
- 준비자산(명목화폐, 상품, 암호자산 또는 투자금의 바스켓)은 발행인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토큰 발행 시에는 토큰별로 별도 분리·관리 하며 토큰의 증감에 상응하여 마련되어야 함(MiCA §1.(21), §32.1~32.3, §33.1)
- 보유자에게 상환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상환방식·가격평가정책·결제조건·수수료 등을 규정하여야 하고, 상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MiCA §35.1, §35.2, §35.4)
- 발행인 및 서비스제공자는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이자나 그 밖의 혜택을 지급할 수 없음(MiCA §36)

○ 전자화폐토큰의 경우

- 전자화폐토큰은 상당한 규제감독권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전자화폐지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보아(예컨대 Paypal 토큰도 전자화폐의 한 예로 간주됨), 자산기반토큰과 달리 MiCA 자체에 의한 직접적 인가는 요구되지 않음
- 대신 ① 전자화폐지침(Directive 2009/110/EC)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으로 인가받을 것, ② 동 지침 제2장·제3장상 전자화폐기관에 적용되는 요건의 준수, ③ 제46조에 따른 암호자산 백서의 발행 및 감독당국 통지를 그 요건으로 함(MiCA §43.1)
- 발행인은 발행 또는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 전에 웹사이트에 백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백서에는 발행인, 토큰 프로젝트의 내용 및 관련 주요 참가자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MiCA §46.1, §46.2)

- 발행인은 액면가와 EU 지불서비스지침(PSD2) 제4조 제25항에 따른 자금의 수령 범위 내에서만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MiCA §44.3, §44.2), 보유자의 요청 시 언제든지 액면가(at par value)로 상환하여야 하며, 백서에서 정하는 경우 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MiCA §44.4, §44.6)
- 상환요청이 30일 이내에 충족되지 않으면 보유자는 자금 관리인 또는 발행인을 대신하는 유통업체에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MiCA §44.7)
- 자산기반토큰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혜택의 지급은 금지됨(MiCA §45)
- 준비자산은 전자화폐지침 제7조의 보호요건에 따라 다른 자연인·법인의 자금과 혼합되지 않고 안전한 저위험 자산에 투자되어 별도 계좌로 관리되어야 하며, 지급불능 발생 시 다른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절연되고 보험정책 등 보호장치의 적용을 받아야 함(MiCA §49)
-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에 대한 규제
 - MiCA는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s)를 "고객들에게 하나 이상의 암호자산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업 또는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업체로서, 제59조에 따라 암호자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된 자"로 정의함
 - '암호자산서비스'란 ① 고객을 대신한 암호자산의 위탁보관 및 관리 제공, ② 암호자산 거래플랫폼의 운영, ③ 자금과 암호자산의 교환, ④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⑤ 고객을 대신한 주문의 집행, ⑥ 암호자산의 모집 주선(placing), ⑦ 고객을 대신한 주문의 접수 및 전송, ⑧ 암호자산에 관한 자문 제공, ⑨ 암호자산에 관한 포트폴리오 운용 제공, ⑩ 고객을 대신한 암호자산의 이전(전송) 서비스 제공 등 암호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및 활동 전반을 의미함(MiCA §3. 1. (9))
 - 유럽연합 내에서 암호자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CASP로 인가받은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업체, 또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 여신기관, 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 투자회사, 시장운영자, 전자화폐 발행기관, 개방형펀드(UCITS) 운용회사, 대안투자펀드 운용자로 제한됨
 - CASP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이름, 주소, 웹사이트, 법적 지위, 정관, 제공서비스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함(MiCA §54. 2.)
 -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 테러방지법 등의 위반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MiCA §54. 2(f))
 - 운영진은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고객 암호자산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며, 시장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MiCA §54. 2(l), (m))
 - 재무건전성을 위해 자기자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MiCA §60. 1.)
- 모든 CASP에 적용되는 의무요건

-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정직하고 공정하며 전문가답게 행동할 의무
 - 최저 자본금 등 건전성 요건
 - 경영진 구성원과 주요주주의 좋은 평판, 내부통제,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정규성 보장, 데이터의 가용성·진본성·무결성·기밀성 보장 및 거래기록 보존을 내용으로 하는 견고한 지배구조 체제
 - 당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
 - 고객에 속하는 자금과 암호자산의 안전 보관
 - 고객 불만 사항 처리 절차의 수립
 - 이해상충의 식별, 방지, 관리 및 공시
 - 업무 외주 시 책임 등 요건의 명확화 및 업무의 질서 있는 축소
- 시장남용행위의 예방과 금지
- MiCA는 시장남용행위에 관한 규칙이, 매매거래에 대하여 허용된 암호자산 또는 매매거래에 대한 허용 신청이 이루어진 암호자산에 관한 행위 전반에 대하여, 그 트랜잭션·주문 또는 행위가 거래플랫폼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함
 - 발행자, 권유자 또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허용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과 직접 관계된 내부정보를 일반대중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내부정보의 공시를 자신의 활동에 대한 마케팅과 결합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5년간 게시·유지하도록 함
 -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를 금지하는 한편, 시장조작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함
 - 암호자산 트랜잭션을 전문적으로 주선하거나 실행하는 자로 하여금 시장남용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 시스템 및 절차를 갖추도록 함
 - 특히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운영자는, 인가신청서에 거래플랫폼의 명확하고 투명한 운영 규칙과 시장남용행위 탐지를 위한 절차·시스템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하고(MiCA §62. 2(n), 76. 1.), 견고한 지배구조 체제의 일환으로 법규 준수를 보장하는 충분히 효과적인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여야 하며(MiCA §68. 4), 암호자산의 매매거래를 허용하기에 앞서 해당 암호자산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거래플랫폼의 운영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MiCA §76. 2.), 매매거래 시스템이 시장남용행위를 방지하거나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MiCA §76. 7.), 매매거래 시스템에서 또는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시장남용 또는 시도된 시장남용의 사례를 식별한 경우 이를 당국에 통보하여야 함(MiCA §76. 8.)

3.3.5 소결

- 국가별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및 규제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은 입법적인 방식보다는 판례법과 행정해석을 통해 사안별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기존 증권법 등의 규제를 해왔고, 최근에 들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연방법(GENIUS Act)를 마련하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음
- 유럽은 EU 차원의 성문법적 규제 방식을 취하면서, 포괄적으로 가상자산업에 대해 발행인규제 · 공시의무 · 불공정거래규제 · 업자규제를 망라하는 완결적 입법(MiCA)을 마련하였음
- 일본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자금결제법(결제수단)과 금융상품거래법(투자상품)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투자적 성격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금융상품 수준으로의 규제를 강화하여 부과하고 있음

Ⅳ.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쟁점 및 개선(안)

4.1 현행 기타소득 과세체계 관련 쟁점

-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과 “대여”에 따른 소득을 하나의 가상자산소득으로 통합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20%)를 취하고 있으나, 소득의 성격 및 세무 처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타소득으로의 일괄분류는 재고할 여지가 있음
 - 처분 단계에서 가격차이로 발생하는 일회적 성격의 자본이득과 보유 단계에서 반복성이 발생할 수 있는 대여 소득(렌딩, 스테이킹 보상 등)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득 유형으로 모아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다른 자산(e.g. 주식)의 경우 대차거래 수수료에 대해서는 경상소득(기타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보아 달리 과세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와 “대여”에 대한 소득을 통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음
-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는 국내 신고납부 실무를 넘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과세 및 조세조약 적용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의 처분 단계의 소득을 경상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타소득과 소득분류 충돌이 있을 경우 조세조약 해석 등에 실무적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국내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거래소 원천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⁹²⁾은, 상대국이 동일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성격결정하는 경우 소득구분 불일치로 인한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려 하나 상대국이 이를 자본이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세조약상 해석을 취할 경우 세무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소득구분 불일치에 따른 국제적 이중과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 병행 요구가 생길 수 있음
 - 국세청 차원에서 주요 조세조약 상대국의 가상자산소득 성격결정 현황을 조사·공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상자산사업자)의 실무 판단 지원
 - 상호합의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한 소득구분 불일치 해소

92) 소득세법 제156조 등

를 위해, 비거주자 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청구·상호합의 신청 절차 안내

4.2 해외의 과세체계 검토 및 개선(안)

4.2.1 해외사례

-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산의 양도와 동일하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세제를 검토함

- (미국) 미국은 포괄주의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 등 다른 자본자산 처분과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⁹³⁾. 단, 스테이킹 및 렌딩 보상은 일반적으로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됨⁹⁴⁾
 - 2014년 국세청 지침(IRS Notice 2014-21) 등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산(property)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⁹⁵⁾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닌 자산(property)임을 명확히 하고 자산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세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함⁹⁶⁾
 - 사업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의 가상화폐 처분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함
 - 자본이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하는 일반세율로, 보유기간 1년 초과인 경우는 과세소득이 USD 48,350까지는 비과세, 이후 USD 533,400까지는 15%, 초과분은 20%로 과세됨(독신기준)⁹⁷⁾
 - 사업목적(trade or business)으로 보유하는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10%~37%(독신기준)⁹⁸⁾의 세율로 종합과세
 -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거래, 가상화폐를 재화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 가상화폐 간의 교환거래 모두 '가상화폐의 처분'으로 보아 과세함⁹⁹⁾¹⁰⁰⁾
 -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가상화폐의 개별 식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되 그 외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취득

93) <https://www.irs.gov/pub/irs-drop/n-14-21.pdf>

94) <https://www.irs.gov/pub/irs-drop/rr-23-14.pdf>

95) <https://www.irs.gov/filing/digital-assets>

96) <https://www.irs.gov/pub/irs-drop/n-14-21.pdf>,

<https://www.irs.gov/pub/irs-drop/n-23-34.pdf>

97)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98) <https://taxsummaries.pwc.com/united-states/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99)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100) <https://www.irs.gov/pub/irs-wd/202124008.pdf>

가액을 결정함¹⁰¹⁾

- (영국) 영국은 암호자산 거래를 과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현재까지 별도로 입법한 바 없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기존의 자본이득세 틀에서 과세하고 있음¹⁰²⁾¹⁰³⁾ 단, 스테이킹, 렌딩 등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됨.¹⁰⁴⁾¹⁰⁵⁾
 - 2018년 개인의 암호자산 취득, 보유 및 양도에 관한 조세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¹⁰⁶⁾
 - 과세당국(HMRC)은 암호자산 거래 과세를 위한 내부지침을 공개하여 현행 세법을 토대로 암호자산 거래 과세에 대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소개하고 있으며¹⁰⁷⁾, 가상자산 거래를 기존의 자본이득세 틀에서 과세하고 있음¹⁰⁸⁾¹⁰⁹⁾
 - 영국 자본이득세 목적상 처분은 i)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ii) 가상자산을 다른 유형의 토큰으로 교환 등을 포함한 개념임
 - 개인의 암호자산 거래가 금융거래 사업(financial trade)으로서 수행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¹¹⁰⁾. 사업목적(trade)으로 채굴하여 취득한 암호자산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¹¹¹⁾
 - 암호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적용세율은 18%, 24%임¹¹²⁾
 - 소득세 고세율 또는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24%의 세율을 적용함
 -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18% 세율을 적용함¹¹³⁾(과거에는 기본세율 적용 납세자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10%/20% 차등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4년 10월 30일 이후부터는 기본세율 적용 납세자의 경우 18%로 단일화됨)
- (일본) 일본의 경우 암호자산을 매각하거나, 상품·용역의 대가로 암호자산을 지급하거나, 암호자산 간 교환을 하는 경우와 같이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구분¹¹⁴⁾

101)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102) <https://taxscape.deloitte.com/article/cryptoassets---key-points-for-individuals.aspx>

10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2100>

104)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1200>

105)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61212>

106)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ryptoassets>

107)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

108) <https://taxscape.deloitte.com/article/cryptoassets---key-points-for-individuals.aspx>

109)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2100>

110)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0150>

111)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0200>

112) <https://www.gov.uk/capital-gains-tax/rates>

113) <https://www.gov.uk/guidance/capital-gains-tax-rates-and-allowances>

114) 강동익 등(2022),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virtual_currency_faq_03.pdf

- 일본의 잡소득은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소득으로서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¹¹⁵⁾
 - 단, 채굴을 사업적(영리적)으로 수행하고, 장부를 기장하면 사업소득으로 봄¹¹⁶⁾
-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데,¹¹⁷⁾ 암호자산 매각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 잡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암호자산 양도원가(취득가액) 및 기타 암호자산 매각 등에 있어서 직접 소요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은 종합과세하며 5~45%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함¹¹⁸⁾
 - 한국처럼 분리과세되지 아니하고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
- 그러나 2025년 12월에 발표된 세제개정대강에 따르면 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을 해당 거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20%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 대상 가상자산 거래 손실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됨 ¹¹⁹⁾
 - 적용시기는 현재 불분명하나 202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될 전망이 있음

4.2.2 과세체계 개선(안)

- ☐ 위와 같은 기타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볼 때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기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 ☐ (단기적 개선방안) 단기적으로 현행 규정 상의 가상자산 “대여”와 “양도”를 명확히 구분 및 관리하고, 이를 위해 개념 정의 및 예시 거래를 고시 등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기타소득 과세체계에서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도록 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예시 거래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내려지고, 가상자산 거래(스테이킹, 렌딩 등)가 양도 및 대여의 해당 여부 등을 고시, 예규, FAQ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거래가 세무상 다 다뤄지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명세서(소득세법 별지 제30호의3 등) 상의 거래 유형(매도, 매수, 교

115) 임재범(2022),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500.htm>

116)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virtual_currency_faq_03.pdf,

117)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virtual_currency_faq_03.pdf, 강동익 등(2022), 임재범(2022)

118) 강동익 등 (2022), <https://www.coindeskjapan.com/learn/virtualcurrency-tax-rate/>

119) <https://kaoria-tax.com/knowledge/separate-taxation/>

환양도 등)과 대응하여 완전성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개선방안) 장기적으로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주요국과 같이 분류과세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하려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과세 정합성이 맞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¹²⁰⁾
- 일본과 같이 일정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도 참고할 만한 사항임

120)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시행이 백지화(폐지)되었으므로, 향후 개편 논의 시 동 제도의 재도입이 아닌 새로운 분류과세 체계 설계가 필요함

V. 가상자산 거래유형별 쟁점 및 개선(안)

5.1 스테이킹

5.1.1 기본 개념

- 스테이킹은 Proof-of-Stake(PoS)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을 제안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함
 - 가상자산을 보유자가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함으로써, 블록체인 네트워크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블록 제안 및 검증 과정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며, 슬래싱(slashing)되는 경우 예치 코인 일부가 차감되는 패널티¹²¹⁾를 받는 구조임

Proof-of-stake rewards and penalties(April 3, 2026)¹²²⁾의 주요 사항(번역)

이더리움 스테이킹에서 검증자의 역할은 1) 새 블록을 확인하고 유효한 경우 이를 "증명(attestation)"하는 것, 2) 전체 검증자 풀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었을 때 새 블록을 제안하는 것이다. 요청받은 작업 중 하나라도 수행하지 못하면 이더보상을 받지 못한다.

(중략)

검증자가 슬래싱되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 동일한 슬롯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블록을 제안하고 서명하는 경우
- 다른 블록을 "둘러싸는(surrounds)" 블록을 증명하는 경우(사실상 역사를 변경하는 행위)
- 동일한 블록의 두 후보에 증명하는 "이중 투표"를 하는 경우

(중략)

패널티: 32ETH를 예치한 검증자의 경우 0.0078125 ETH(= 1/128 ETH)가 즉시 소각되며(활성 잔액에 비례해 선형 산정), 이후 36일간의 퇴출 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동안 검증자의 스테이크는 서서히 줄어들며, 18일째(중간 지점)에 추가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 추가 패널티의 크기는 슬래싱 이벤트 전후 36일 이내에 슬래싱된 모든 검증자의 총 스테이킹 ETH에 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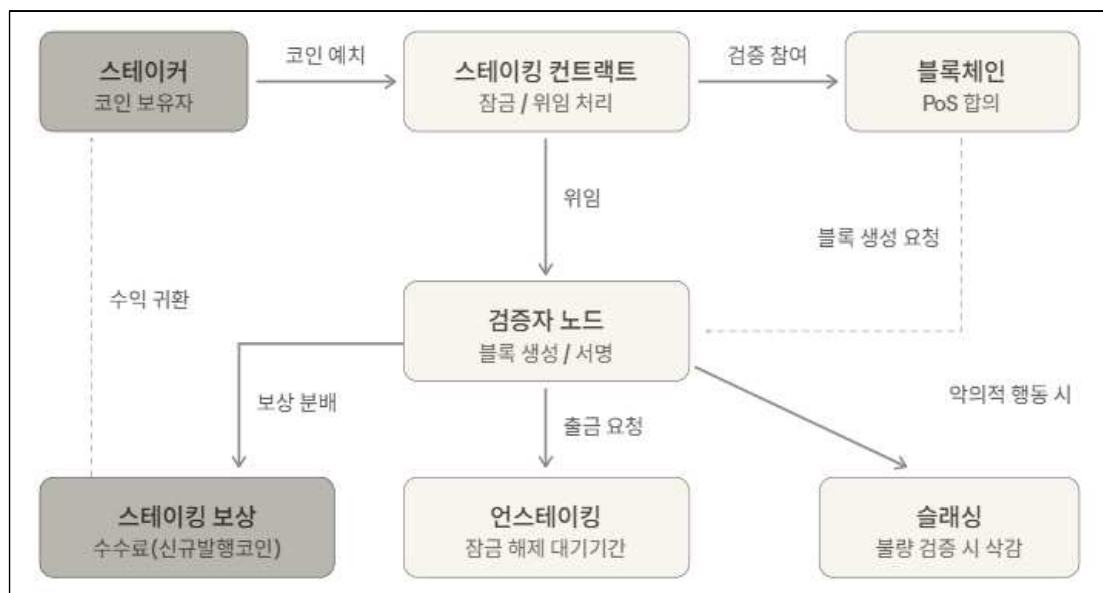
- 가상자산 스테이킹의 거래구조 및 각 참여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스테이커(코인 보유자) : 코인을 직접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으로 자기 코인을 네트워크 검증에 쓰이도록 맡기는 주체이며,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 권한만 위임함
 - 스테이킹 컨트랙트(잠금·위임 처리): 예치된 코인을 실제로 묶어두는 장치로 코인을 특정 상태로 고정해 전송·매도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어느 검증자에게 위임할지를 기록

121) 슬래싱(slashing)은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서 검증자(validator)가 규칙을 위반(이중 서명 double signing, 장기 오프라인 downtime 등)했을 때, 스테이킹된 코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패널티를 말함

122) ethereum.org/developers/docs/consensus-mechanisms/pos/rewards-and-penalties

함. 이 잠금이 있어야 나중에 슬래싱으로 삭감할 대상이 존재하게 되므로, 구조 전체의 담보 역할을 함

- 블록체인(PoS 합의): 지분증명 합의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계층으로 어느 검증자가 다음 블록을 만들 차례인지 정하고, 제출된 블록의 정당성을 검사하고, 규칙 위반이 확인되면 삭감을 실행함
- 검증자 노드(블록 생성·서명): 실제로 일하는 서버로, 블록을 생성, 검증 및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일종의 노드임. Proof-of-Work 방식의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채굴기(Miner)와 비슷한 역할을 함¹²³⁾
- 스테이킹 보상(수수료(신규발행코인)): 정상적으로 검증에 기여했을 때 받는 대가임. 재원은 두 가지로, 프로토콜이 새로 발행하는 코인과 사용자들이 낸 거래수수료임. 예금 이자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네트워크 전체 스테이킹 물량과 검증자의 성실도에 따라 실질 수익률이 변동함
- 언스테이킹(잠금 해제 대기기간): 맡긴 코인을 되찾는 절차이며, 요청 즉시 돌려주지 않고 일정 기간(이더리움은 출금 대기열, 코스모스 계열은 통상 21일) 묶어두는데, 이 기간 중에는 보상도 발생하지 않고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됨
- 슬래싱(불량 검증 시 삭감): 검증자가 규칙을 위반했을 때 예치금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패널티임



<그림 3> 스테이킹 거래 구조

123) 검증인(Validator)은 블록을 생성, 검증 및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일종의 노드로, Proof-of-Work 방식의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채굴기(Miner)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다만, 채굴기는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여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인은 스테이킹된 자산을 기준으로 블록을 생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업비트 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스테이킹, 검증인이란 무엇인가요?, 2026.6.1.일자 검색)

-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하는 방법은 중앙거래소 및 기존 검증자에게 위임하는 방법, 개인이 직접 검증자로 참여하는 방법, 유동성풀에 LP토큰을 스테이킹하는 경우 등이 존재함
 - ① CEX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업비트, 빗썸 등 국내 CEX에서 스테이킹 가능한 가상자산은 ETH, ATOM, ADA, SOL, POL 등이 있으며, 예상 보상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② CEX 외 기존 검증자에게 코인을 위임하여 스테이킹하는 방식으로 보상받음
 - ③ 개인이 지분증명 방식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등 일정 조건(ETH의 경우 최소 32ETH 보유, 24시간 운영가능한 PC/서버, 기술지식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음(솔로 스테이커)
 - ④ 유동성 스테이킹(LP 토큰을 받아 스테이킹 하는 경우)¹²⁴⁾
- 스테이킹 서비스의 규모
 - 스테이킹 서비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이더리움의 경우 2026년 5월 기준 총공급량의 32%가 PoS에 묶여 있으며,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은 약 14% 수준, 솔로 스테이커(③)의 비중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됨¹²⁵⁾

5.1.2 스테이킹 관련 과세 쟁점

- 쟁점 1: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대여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스테이킹으로 인해 수령하는 보상(가상자산)이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대여소득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임
 - 개인이 직접 스테이킹 하여 받는 보상(③)은 스테이킹 용역의 보상 성격에 가까울 수 있으며,
 - 위임/CEX 스테이킹(①,②)은 코인만 맡기고 실제 검증은 다른 노드가 하므로 대여소득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개인이 노드 검증 용역을 외부에 수탁방식으로 수행하고 수탁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적용역의 대가로 수령하는 것(즉, 채굴과 유사)으로도 볼 수 있음
- 쟁점 2: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스테이킹으로 보상받은 가상자산의 소득 귀속시기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도 명확하지 않음
 - 소득 귀속시기: 위임자를 통한 스테이킹은 실제 스테이킹으로 보상이 되는 시기와 해

124) 가상자산 보유자는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LP토큰을 받음. 이때 해당 보유자는 유동성풀에서 트레이더가 코인을 교환할 때마다 거래수수료를 받고, LP토큰을 스테이킹하여 보상도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125) Coinlaw.io - ETH Staking Statistics 2026: Security, Distribution, Forecast, <https://coinlaw.io/eth-staking-statistics/>

당 보상이 스테이킹을 한 개인에게 보상되는 시기가 다르므로 시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1항 4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에 해당하는 바, 본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귀속시기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득세 과세표준: 스테이킹 보상의 소득 성격과 과세시기가 정해지면, 과세표준은 과세 시기 당시의 시가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스테이킹 보상은 네트워크에 다시 스테이킹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상받은 가상자산의 시가도 계속 변동하므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납세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업비트의 스테이킹 관련 홈페이지 공시 문구(2026년 6월 1일 검색 기준)¹²⁶⁾

‘보상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상은 ‘스테이킹 수량’을 기준으로 집계되고, 이 보상은 사용자의 ‘스테이킹 수량’에 합산됩니다. 발생한 보상은 네트워크상 다시 스테이킹 됩니다.

업비트 스테이킹 이용약관(2026년 6월 1일 검색 기준)

제4조 (보상 발생 및 지급 시점)

① 디지털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마다 보상주기는 상이하며(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 참조), 보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집계하여 회원에게 일정한 주기로 분배합니다. 분배 주기는 각 디지털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 또는 회사의 보안 및 기술적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원은 각 디지털자산별 분배 주기를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매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24시간 동안 발생한 보상을 집계하며, 집계된 보상은 회원의 스테이킹 계정 또는 업비트 계정에 지체없이 분배됩니다. 단, 각 디지털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 또는 회사의 보안 및 기술적 여건 등에 따라 보상 분배가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스테이킹(또는 언스테이킹) 대기 상태 자산은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은 디지털자산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동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고, 회원에게 보상 수준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를 통해 디지털자산별 보상 지급 수준을 확인하고 업비트 스테이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5.1.3 해외사례

☐ 일본 사례

¹²⁶⁾ <https://www.upbit.com/staking/items>

- 일본 국세청(國稅廳)의 暗号資産に關する稅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2025.12, 1-7.
 - 마이닝, 스테이킹, 렌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즉, "마이닝", "스테이킹", "렌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 시점의 가액(시가)은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마이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법인세의 경우 손금)에 산입됨(소득세법 27조, 35조, 36조, 37조)
- 일본의 경우, 마이닝, 스테이킹, 렌딩을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스테이킹 보상으로 가상자산 수령 시 수령시점의 시가를 잡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고, 스테이킹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미국 사례(26 CFR 1.61-1: Gross income)

- 납세자가 지분증명(proof-of-stake) 블록체인의 자체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여 검증(validation) 시 보상으로 추가 암호화폐 단위를 받은 경우, 그 보상의 가치를 총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한다면 어느 과세연도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음
 - 미국은 납세자가 지분증명 블록체인의 자체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여 검증보상으로 추가 암호화폐 단위를 받은 경우, 그 검증보상의 시가는 납세자가 해당 보상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을 획득한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포함된다고 제시함
 - 한편, 일정기간 락업 상태이며, 락업이 해제되어 처분이 가능해진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인식함
 - 이때 시가는 납세자가 지배와 통제권을 획득한 시점의 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킹하여 검증보상으로 추가 단위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함
- 즉, 스테이킹 보상 수령 시점에 일반소득세를 과세하고(사업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 추후 매도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음

26 CFR 1.61-1: Gross income

[case] 암호화폐 M은 지분증명 방식으로 검증된다. 납세자 A(현금주의)는 어느 날(Date 1) M 300단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200단위를 스테이킹하여 새로운 블록을 검증하고 검증보상으로 M 2단위를 받는다. M 프로토콜에 따라, A는 Date 2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이 2단위를 매도·교환·기타 처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음날(Date 3)이 되어서야 A는 이 2단위를 매도·교환·처분할 수 있게 된다.

[법리] 세법 제61조(a)는 총소득을 "출처를 불문한 모든 소득"으로 규정하는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Glenshaw Glass 사건)에 따르면, "명백히 실현되고 납세자가 완전한 지배권(complete dominion)을 가지는 부의 증가"는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전환가능한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는 연방소득세 목적상 재산으로 취급되며, 재산 거래에 관한 일반 세법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화·용역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거나 마이닝한 납세자는, 그 암호화폐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dominion and control)을 획득한 과세연도에 시가를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결론] 위 예시에서 M 2단위는 A가 스테이킹 및 검증에 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Date 3에 A는 이 2단위를 매도·교환·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므로, 이 시점에 부의 증가(accession to wealth)로서 지배와 통제권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A가 이 2단위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을 획득한 시점의 시가가, Date 3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A의 총소득에 포함된다.

□ 영국 사례

○ Cryptoassets Manual(2021년 3월, HMRC)

- 스테이킹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시점에 기타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되며, 관련 비용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동 가상자산을 추후 매각할 경우,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으로, 일본·미국과 마찬가지로 “수령 시 소득과세 → 처분 시 자본이득 과세”의 2단계 구조임

□ 해외사례 요약

- 일본, 미국, 영국 모두 스테이킹으로 받은 가상자산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은 때 소득세 과세 + 처분할 때 자본이득 과세”라는 2단계 구조는 동일함
- 일본, 미국의 경우는 포괄주의를 적용하므로 스테이킹 보상의 성격이 이자인지, 대여소득인지 등 어떤 것으로도 정확히 명명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한 구조이며,
 -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영국의 경우에는 스테이킹 보상을 HMRC 가이드에 기타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5.1.4 과세방안

□ 개인이 보유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할 경우에 소득세와 관련된 과세 쟁점은 스테이킹으로 받는 보상의 과세대상 여부, 과세세목, 과세시기, 과세표준임

□ 과세대상 여부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스테이킹 보상으로 가상자산 취득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이후 처분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 즉, “보상을 받은 때 소득세 과세 + 처분할 때 자본이득 과세”하는 구조임
- 일본, 미국의 경우는 포괄주의를 적용하므로 스테이킹 보상의 성격이 이자인지, 대여 소득인지 등 어떤 것으로도 정확히 명명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한 구조이며,
 -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영국의 경우에는 스테이킹 보상을 HMRC 가이드스에 기타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음
- 즉, 개인은 보유 가상자산을 기초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보상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스테이킹 보상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과세세목

- 스테이킹 보상을 가상자산 대여소득이라고 본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스테이킹 보상을 개인이 대리인을 통해 제공하는 검증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그 인적용역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계속적·반복적·영리성이 있다고 본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2023. 7. 18. 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대여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 사업소득인지 여부
 - 검증 성공여부에 따라 스테이커의 보상이 결정되고 슬래싱 발생 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증용역에 대한 보상과 위험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스테이킹 보상이 단순 대여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검증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최근 스테이킹 업체인 두나무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만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 총액기준 변경(두나무 2025년 사업보고서 주석 2.17 참고)한 것으로 나타남.¹²⁷⁾ 이는 거래소가 스테이킹 서비스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체로서 보상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코인을 맡긴 개인은

127) 회계정책 변경 전 두나무는 스테이킹서비스 수수료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하였으나, 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스테이킹 전체 수익을 영업수익으로, 스테이커에 대한 보상을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였음

검증용역의 주체가 아니라 검증자들에게 코인을 대여(투자)한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미국의 경우, 스테이킹 보상을 개인의 소득으로 보는 시기를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이 개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스테이킹 중에는 스테이킹 원본에 대해 개인의 통제권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 시각임. 즉, 스테이킹 중에는 개인이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통제권이 없으므로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검증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스테이킹 업체에 가상자산을 사용하게 해주고 그 사용의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가상자산 스테이킹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보상은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개인이 직접 검증을 하는 ㉔의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영리성이 있으면 사업 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인적용역의 기타소득(분리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인이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업체에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코인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아 스테이킹 보상을 대여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대여소득에 스테이킹도 포함된다는 세칙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테이킹 보상을 과세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 과세시기 및 과세표준

- 두나무의 스테이킹 약관에 따르면, 두나무는 매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24시간 동안 발생한 보상을 집계하며, 집계된 보상은 회원의 스테이킹 계정 또는 업비트 계정에 지체없이 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스테이킹 보상과 원본이 회원별로 구분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가상자산의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 귀속시기는 현재 명확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4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는 날이므로, 가상자산 대여소득도 동일하게 ‘그 지급을 받는 날’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즉, 스테이킹 보상의 경우, 스테이킹 보상이 개인별 계좌에 배분되었을 때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스테이킹 보상이 네트워크에 다시 스테이킹되었을 경우 해당 보상을 배분받았을 시점을 과세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생략)

4. 그 밖의 기타소득 (2013. 2. 15.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 또한 개인이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업체에 대여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스테이킹 보상이 개인별 계좌에 배분되었을 시점의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스테이킹 보상(코인)이 대여소득으로 과세된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2단계 구조임
 - 즉, 대여소득으로 과세하는 단계에서의 과세표준이 추후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원가로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대여소득에 대한 시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5.2 렌딩(lending), 유동성 공급거래

- 렌딩은 CEX(Centralized Exchange, 중앙화된거래소)¹²⁸⁾, Defi(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금융)¹²⁹⁾에서 가상자산 대차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함
 - CEX는 거래소가 운영주체이며, 담보자산을 거래소가 관리(업비트, 바이낸스 등)하며,
- Defi에서의 렌딩 및 유동성풀 공급은 스마트컨트랙트로 운영되며, 담보자산이 본인 지갑에서 직접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CEX와 Defi에서 발생하는 렌딩거래와 유동성 공급거래를 구분하여 과세 쟁점을 살펴봄

5.2.1 중앙화된 거래소에서의 렌딩거래

가. 거래구조

- 본 거래는 CEX(Centralized Exchange, 중앙화된거래소)¹³⁰⁾의 가상자산 렌딩서비스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함
 - 과거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렌딩서비스는 사업자간 경쟁 심화로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여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의 고유 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였음¹³¹⁾
 -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CEX의 렌딩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 재산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즉, CEX의 렌딩서비스에서 대여자는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볼 수 있음
-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업비트의 코인 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코인 빌리기는 회원이 거래소에 일정한 담보자산을 제공하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을 회원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함
 - 코인 투자자들은 기존 보유 중인 코인은 계속 보유하면서 추가로 다른 코인을 취득하여 차익을 누리고 싶을 때 렌딩서비스를 이용함

128) 코인 빌리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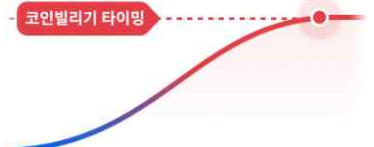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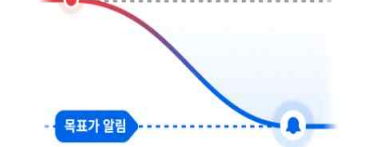
129) 탈중앙화거래소는 스마트계약과 온체인거래를 통해 운영되어 별도의 중개자 없이 P2P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강동익 등 2022). 중앙화거래소와 비교할 때 탈중앙화거래소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개인키를 계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임. 즉, 사용자가 중앙화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입금하면 개인키를 통제할 수 없어 교환소의 해킹 및 도난 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탈중앙화거래소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계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130) 코인 빌리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음

131)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금융위원회, 2025.9.5.)'

○ 업비트의 코인 빌리기 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¹³²⁾

- 코인 빌리기 약관에 따르면, 렌딩서비스는 '가상자산 대차계약과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질권설정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어 있는 복합계약임
- 가상자산 차용자는 하락이 예상되는 코인을 빌려서 바로 팔고, 가격이 낮아지면 다시 동일한 코인을 사서 거래소에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게 됨

1 하락이 예상되는 코인을 빌려요 가격이 곧 떨어질 것 같은 코인이 있나요? 그 코인을 빌린 후 바로 매도해요. 	2 가격이 낮아지길 기다려요 원하는 만큼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요. 목표가에 알림을 설정하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요. 	3 저렴하게 매수해 상환해요 가격이 내려가면 빌린 수량만큼 코인을 다시 사서 상환해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남은 돈이 내 수익이 돼요. 
---	--	--

- 수익 = 빌린금액 - 값은 금액
- 렌딩비율 = (대여자산의 원화환산가액/담보가치의 원화환산가 총액)*100%로 계산되며, 최대 85%만큼 빌릴 수 있음
- “대여자산”이라 함은 회사가 대차계약을 통해 회원에게 대여한 디지털자산
- “담보자산”은 회원이 차입한 디지털자산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에 제공한 ‘예치금 반환청구권(KRW)’ 또는 ‘디지털 자산 반환청구권’을 의미함
- “담보가치”는 회원이 제공한 담보자산의 가치로서, KRW의 경우 액면금액을, 디지털 자산의 경우 원화 환산가에서 회사가 정한 할인평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함(KRW 100%, 스테이블코인 95%, 시총 상위 20위 디지털자산 90%)
- “수수료”라 함은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 빌린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말긴 담보 가격이 내려가면 렌딩비율이 올라가며, 렌딩비율이 95%에 도달하거나 30일이 되면 강제 상환되어 담보를 잃을 수 있음
- 이용기간: (업비트) 신청완료시점부터 30일
-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자산: KRW, USDT, BTC, ETH
- 강제 상환 시 담보 차감순서: USDT → BTC → ETH → KRW
- 말긴 담보는 전체 대여자산을 상환하기 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며, 부분 상환도 가능함

□ CEX 렌딩서비스에서 가상자산 차용자와 대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음

- 대여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여자는 1BTC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렌딩기간 동안 수수료 수익(가상자산으로 수령)을 얻는 구조임
- 차용자는 개인 등이며, 차용자가 본인이 보유한 1BTC를 담보로 제공하고(약 90%인 0.9BTC의 담보가치를 인정받게 됨), 약 85%(렌딩비율) 수준인 0.765BTC(원화로 76.5백만원 수준, 1BTC 1억 기준)만큼의 A코인을 대여하게 됨

¹³²⁾ <https://www.upbit.com/terms/lending>

-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A코인 100개를 대여받아 바로 매도하여 76.5백만원을 수령하고, 30일 이내 가격하락 시 A코인 100개를 66.5백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상환하고, 담보로 맡긴 BTC를 회수함. 즉, 코인 투자자는 동 렌딩서비스를 통해 약 10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함
- 렌딩서비스에서 코인 투자자가 얻는 이득은 가상자산을 빌려 팔고 이를 다시 사서 그 차익을 취하는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비용을 지출함
- 담보로 맡긴 BTC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차용자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담보자산에 대한 처분 등의 권리가 없음

나. 과세 쟁점

- 대여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여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소득세 관련한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현재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상 대여소득 등에 대한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음)
- 차용자는 빌린 가상자산과 상환하는 가상자산과의 차액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떤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소득세법 조문상 '대여로 인한 소득'은 빌려주는 쪽이 받는 대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고, 빌린 쪽의 매매차익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더욱이, 가상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기에선 통상의 양도와 반대의 순서로 발생함. 즉, 일반 거래는 취득 후 양도인데, 렌딩서비스 차용은 주식의 공매도와 유사하여 매도가 먼저이고 취득(상환용 재매수)이 나중임
 - 따라서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차용자가 지급하는 대여 수수료를 부대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강제청산으로 확정된 손익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10> CEX 렌딩서비스에 대한 과세쟁점

거래 주체	대여자의 과세	차용자의 과세이슈
• 대여자: 가상자산사업자 • 차용자: 개인 등	• 원본 외 수령액은 수수료 수익 과세(법인세)	• 가상자산 렌딩&상환 단계에서 매매 차액에 대한 과세 방법 • 가상자산 대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담보자산의 강제청산 시 과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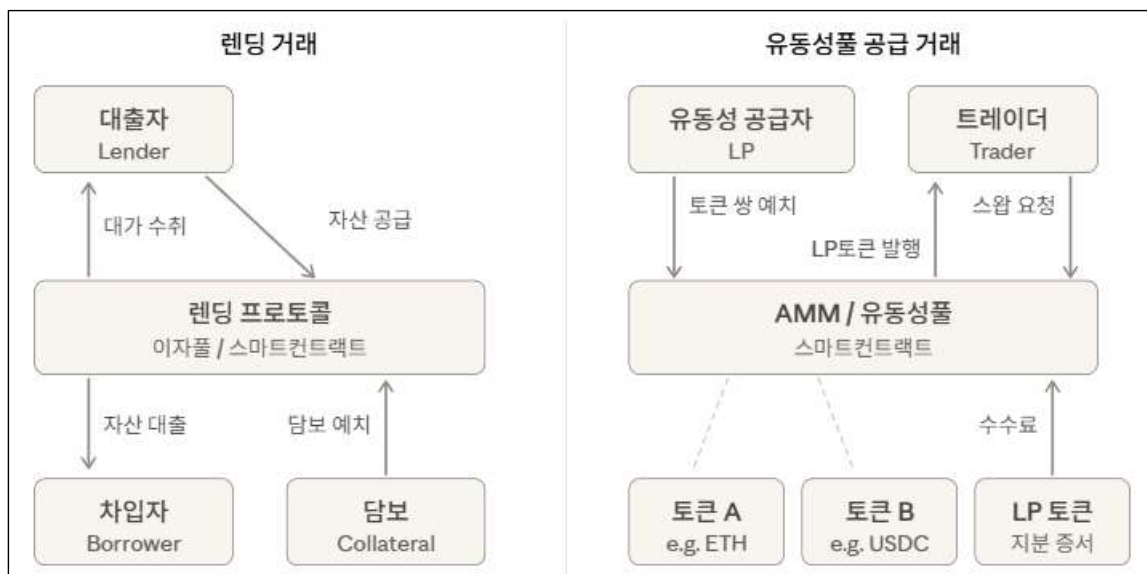
다. 개선(안)

- CEX렌딩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용자는 가상자산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이를 취득하여 상환하면서 차익이 발생함

- 일반적인 가상자산 양도거래는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인데, 렌딩서비스 차용은 주식의 공매도와 유사하여 매도를 먼저하고 취득(상환용 재매수)이 나중에 발생하는 거래임
 - 동 차익도 매매로 인한 차익이므로 해당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양도 시 양도가액, 취득 시 취득원가에 반영), 차용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을 기타소득 산정 시 부대비용으로 차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한편, 담보된 가상자산이 강제청산 되면,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대여자 등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산된 부분만큼 양도로 보아 양도로 인한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5.2.2 Defi의 렌딩 및 유동성풀 공급거래



<그림 4> Defi 렌딩거래 및 유동성풀 공급거래 구조

가. Defi의 렌딩서비스

- Defi에서의 렌딩서비스는 관리자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여자가 렌딩풀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차용자가 렌딩풀에서 가상자산을 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Defi에서 발생하는 렌딩거래의 참여자 및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음
 - 대여자: 가상자산을 렌딩프로토콜에 예치
 - 대여자는 특정 차입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렌딩풀에 예치하고, 예치 즉시 예치 증서 성격의 토큰(aToken 등)을 받게 되며, 풀 이용률에 따라 변동하는 대가를 수령

함

- (예시) Defi 렌딩거래에서 대여자는 렌딩풀에 가상자산(예. USDC 100개)을 예치하면 예치증명서(예. aUSDC 100개)를 받게 되고, 차용자들이 내는 이자가 렌딩풀에 쌓이면 예치증명서를 반환하고 원래 예치했던 원본(USDC 100개)과 이자를 받는 구조임
- 가상자산을 렌딩풀에 예치하는 이유는 유휴 자산 운용임.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이 없는 자산이라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렌딩풀에 예치 시 원금 규모가 흔들리지 않은 채로 대가만 쌓이며, 차입자가 과담보를 넣어 두었기 때문에 개별 차입자의 상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도 대체로 유지됨
- 차입자: 담보를 먼저 넣고 그 한도 내에서 가상자산을 빌림. 신용이 아니라 담보에만 의존하므로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 담보가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청산됨
- 담보: 차입자가 잠가 두는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 때문에 빌리는 금액보다 훨씬 큰 가치를 넣는 것이 원칙임
- 렌딩풀에서 가상자산을 빌리는 이유는 기존에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즉, 장기 보유 의사가 있는 토큰을 담보로 넣고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쓰면, 상승 여력은 그대로 두면서 지금 쓸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담보로 맡긴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되므로 과세시점도 이연하는 효과가 있음
- 렌딩 프로토콜 (이자율/스마트컨트랙트)
- 예치 자산을 한데 모아 두고 대출·상환·담보 관리·청산을 코드로 자동 처리하는 중개층임
- 은행처럼 심사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담보가치와 대출 잔액의 비율(LTV)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조건을 만족하는 한 자동 실행됨
- 대가율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렌딩풀에 예치된 가상자산이 많고 대출수요가 적으면 이자율이 낮으며, 렌딩풀에 예치된 가상자산이 적은 반면 대출수요가 많으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음

나. Defi의 유동성풀 공급거래

- Defi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므로 유동성풀 방식¹³³⁾의 Defi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에게 보상을 지급함¹³⁴⁾

133) 오더북 기반의 Defi는 중앙화거래소 또는 주식 매매와 유사하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문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표적 거래소로는 디와이디엑스가 있음. 즉, 사용자가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예치 후 오더북에 주문하고 교환하는 방식임. 이에 반해 유동성풀 기반 Defi는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Automated Market Maker, AMM)에 의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대표적 거래소로는 유니스왑, 커브 등이 있음(강동익 등 2022).

134) 탈중앙화거래소는 오더북 기반과 유동성풀 기반의 거래소가 있음(강동익 등 2022).

□ Defi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공급서비스의 참여자 및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음

- 유동성 공급자(LP): 두 종류의 토큰(A,B)을 정해진 비율로 짝지어 풀에 예치하며 LP 토큰(지분증서)를 수령함
 - 그 대가로 거래수수료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음. 거래수수료는 트레이더가 코인을 스왑할 때 발생하며 유동성풀 내 LP에게 자동 분배됨. 추가 인센티브는 유동성풀 플랫폼이 자체 거버넌스 토큰을 추가 보상으로 지급(예: 클레이스왑은 KSP토큰 지급)받음
 - 즉, 코인을 예치해 받는 수수료는 대여소득의 성격이 있으며, LP토큰은 양도도 가능하므로 양도의 성격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공급하는 이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지분 확보 및 LP토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스테이킹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수익 가능. 새로운 토큰을 출시한 프로젝트팀의 전략적 공급(거래 가능한 시장 형성, 토큰 생태계 활성화 등) 등의 목적으로 유동성풀을 활용함
- 트레이더(Trader): 유동성풀에서 토큰을 교환. 즉, 풀에 A코인을 넣고 B를 빼가는 방식이어서 상대 주문이 없어도 즉시 체결됨
 - 토큰을 교환하는 이유는 차익거래를 위함: 풀 가격이 시장가보다 싸지면 차익거래자가 풀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팔고, 비싸지면 그 반대의 거래 발생
- AMM/유동성풀(스마트컨트랙트): 두 토큰의 잔량 관계식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자동 시장 조성자임.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는 두 잔량의 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x \cdot y = k$)이고, 트레이더가 하나의 코인을 넣으면 잔량 비율이 바뀌면서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됨
 - 교환마다 수수료(예: 0.3%)를 떼어 풀에 남기고, 그만큼 LP 지분의 가치가 커짐
 - 두 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면 AMM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쪽을 팔고 싼 쪽을 사들이게 되므로, LP는 그냥 보유했을 때보다 불리해지는 비영구적 손실(impermanent loss)을 안게 됨. 이 손실을 수수료 수입이 넘어서는지가 공급의 실질 수익성을 결정함
- 토큰 A/토큰 B: 풀을 구성하는 자산의 쌍을 말함(예: ETH - USDC).
- LP 토큰 (지분 증서)
 - 예치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로, 풀 자산에 대한 청구권임
 - 반납하면 당시 비율대로 두 토큰과 누적 수수료를 회수하고, 담보로 맡길 수도 있고 스테이킹 하여 추가 보상을 받는 데도 사용됨

□ 유동성공급자인 LP는 추후 예치한 코인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돌려받는 수량은 예치한 수량과 다를 수 있음

- BTC 1개 + ETH 1개 예치 → LP 토큰 100개 수령

- 출금 시 LP 토큰 반환 → 반환 시점의 풀 상태 기준으로 BTC + ETH 돌려받음
 - BTC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유동성풀에서 자동으로 BTC를 팔고 썬 ETH를 사게 되므로, 반환 시점에 반환받는 BTC는 줄고, ETH는 늘어남. 즉, LP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한 자산을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LP는 그냥 보유했을 때보다 불리해지는 비영구적 손실(impermanent loss)을 안게 되며, 이 손실을 수수료 수입이 넘어서는지가 공급의 실질 수익성을 결정함
- 참고로, LP는 양도거래가 활발하므로, 최초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LP를 수령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음
- 예를 들어, A가 ETH 1개 + USDC 1,000개를 예치하고, LP토큰 100개를 받았는데, 이후 A가 B에게 LP토큰 100개를 양도하였으면 A는 유동성풀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며 B가 유동성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됨
- Defi에서 발생하는 렌딩거래와 유동성풀 공급거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유동성풀의 LP가 ETH와 USDT를 동시에 예치하여 풀을 구성하고, 이용자인 트레이더는 ETH를 유동성 풀에 넣으면 USDC로 스왑이 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수수료는 유동성풀 공급인 LP에게 분배됨
 - 렌딩풀은 대여자가 USDC를 예치하여 렌딩풀 구성, 차용자가 담보를 맡기고 USDC를 대출, 대출에 대한 대가로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임
 - 즉, 차용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의 목적으로 코인을 교환하고 싶을 때 유동성풀을 이용하며, 본인의 자산은 유지(담보로 제공)하면서 다른 토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렌딩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11〉 Defi의 렌딩거래와 유동성공급거래의 비교

구분	렌딩거래	유동성공급거래
목적	대출지원	코인 교환(스왑) 지원
이용자	코인을 빌리는 차용자	코인을 스왑하는 트레이더
수익원	대여 수수료	거래수수료
차용자(이용자) 담보	일반적으로 필요	불필요
토큰 예치 방식	토큰 1개 예치	토큰 2개를 쌍으로 예치
리스크	차용자 청산 리스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영구적 손실 ¹³⁵⁾
대표 플랫폼	Aave, Compound	Uniswap, KlaySwap

135) 두 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면 AMM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쪽을 팔고 싼 쪽을 사들이게 되므로, LP는 그냥 보유했을 때보다 불리해지는 비영구적 손실(impermanent loss)을 안게 됨.

다. 과세 쟁점

□ 유동성공급자와 토큰 트레이더 간의 거래구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과세 쟁점

-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공급하면서 가상자산과 LP토큰 간의 교환이 발생하는데, 이를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임
 - LP토큰은 일반 코인과 같이 양도거래가 가능(통제권 및 경제적 소유가 매수자에게 이전됨)하므로 일반 코인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각 거래별 다음의 이슈가 발생함
 - ㉠: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공급하고 LP토큰을 수령하는 시점: 예치한 토큰은 양도한 것으로 보고 LP토큰은 신규로 취득한 거래로 볼지, 아니면 LP토큰을 예치증명서 정도로 보아 세무상 과세를 하지 않을지 여부
 - ㉡: LP토큰 보유 중 양도 시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 과세 여부
 - ㉢: LP토큰 보유 중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수익: 지분에 대한 수수료 수익(지분가치 증가로 반영됨)이 발생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과세할지 여부 및 과세시기
 - ㉣: 추후 LP토큰을 제출하고 유동성풀에서 가상자산을 반환받는 경우: 가상자산 교환 거래로 볼지, 아니면 원금 상환으로 볼지 여부
- 한편, 트레이더는 유동성풀에 코인 A를 넣고 B를 스왑하는 거래를 하는데, 코인 교환 역시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양도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때 트레이더가 지급한 수수료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지도 쟁점이 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과세 이슈가 있으나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Defi 렌딩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과세 쟁점

- 렌딩거래의 대여자 관련
 - Defi 렌딩풀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예치증명서를 수령하는데, 예치증명서를 별도의 가상자산으로 보아 가상자산 교환거래로 볼지가 명확하지 않음(앞의 유동성공급거래와 같은 논지임)
 -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볼지가 명확하지 않음
- 렌딩거래 차용자 관련
 - 차용자가 가상자산을 빌려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한 과세 방법 및 차용자가 지급한 수수료(이자 성격)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지 여부, 담보자산의 강제 청산 시 양도로 인정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Defi 렌딩거래의 대여자와 유동성풀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과세 이슈를 중

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과세쟁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12> Defi의 렌딩거래 및 유동성공급거래에 대한 과세쟁점

구분	거래 주체	대여자의 과세 이슈
Defi 유동성공 급거래	- 유동성공급자: 유동성풀에 가상 자산 예치자 & LP토큰 수령자 - 트레이더:코인 스왑	- 유동성공급자: 수수료수익, 추가 인센티브 과세 여부 및 과세시기 - 유동성공급자가 가상자산 예치하고 LP수령 시 양도(교환)거래로 볼지 여부 - LP로 예치한 가상자산 반환 시 양도(교환)거래로 볼지 여부
Defi 렌딩거래	- 대여자: 가상자산 예치자 - 차용자: 렌딩풀에서 가상자산을 빌린 자	- 대여자가 받는 대가: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 볼지 여부 - 가상자산 예치하면서 예치증명서를 받는데, 이를 별도의 양도(교환)거래로 볼지 여부 - 예치증명서 반환 시 별도의 양도(교환)거래로 볼지 여부

라. 해외사례

1) 일본

□ 일본 국세청(國稅廳)의 “暗号資産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2025.12, 1-7.

- 마이닝, 스테이킹, 렌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마이닝”, “스테이킹”, “렌딩” 등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 시점의 가액(시가)은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마이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법인세의 경우 손금)에 산입됨(소득세법 27조, 35조, 36조, 37조)
- 즉, 렌딩에 대한 대가로 암호자산을 취득한 경우 잡소득으로 과세하며, 암호자산의 취득시점 가액(시가)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렌딩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강동익 등, 2022)
 - 렌딩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미국

□ 미국은 Defi 렌딩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나 전용지침이 아직 없어 해석의 여지가 크고

불확실성이 높음

3) 영국

- 영국에서는 렌딩(Lending) 과정에서 그 계약 내용에서 가상자산의 통제권(Control of token)을 이전하면서 경제적 소유(Beneficial ownership)까지 이전한 경우에는 거래 당시에 처분(Disposal)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 대차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CRYPTO61000 분산금융(Defi): 대출 및 스테이킹(2025.11)'에는 대여자가 차용자에게 토큰의 통제권을 이전하고, 미래에 동등한 수량의 토큰을 돌려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대출 거래에 대한 과세내용이 정리되어 있음¹³⁶⁾
 - HMRC는 Defi에서 대여자가 받는 수익을 세무상 이자로 보지 않음
 - 이자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대가인데, HMRC는 암호자산을 화폐로 보지 않기 때문임
- 'CRYPTO61200(2025.11)'에 의하면, 대여자의 수익은 원금을 초과하여 대출기간 동안 받은 토큰의 수량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는 원금 상환분이 아닌 수익에만 적용됨¹³⁷⁾
 -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가상자산은 비현금이므로 수령한 토큰의 파운드화 가치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 'CRYPTO61600(2025.11)'에 의하면, HMRC는 대출시점에 가상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상자산 처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대출상환 시 두 번째 처분이 발생하며, 첫 번째 처분의 대가가 두 번째 처분의 취득원가가 됨(예시: 70만원에 취득한 1BTC를 100만원에 대여: 첫 번째 양도소득으로 30만원 과세, 이후 1BTC를 120만원에 상환: 두 번째 양도소득으로 20만원 과세)¹³⁸⁾

136)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61000>

137)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61200>

138)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61600>

〈표 13〉 영국의 Defi 렌딩서비스에 대한 과세

구분	과세방법	소득세 과세
가상자산 대여자	가상자산의 통제권 및 경제적 소유권까지 이전되면 처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과세
	가상자산의 통제권 및 경제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일반적 대차거래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토큰을 대여소득으로 봄

마. 개선(안)

1) Defi 렌딩거래

- 영국과 같이 예치한 코인에 대한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도 또는 대여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렌딩거래는 빌려준 자산과 같은 자산·같은 수량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측면에서 대차거래에 가깝다고 판단됨
- 대주가 예치한 코인에 대한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 원본 이외의 대가로 수령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소득’에 포함함
 - (과세방법) 렌딩거래의 경우, 차용자가 빌린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기간동안에는 가상자산의 통제권을 갖지만, 추후 빌린 수량만큼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차거래로 볼 수 있음. 즉, 대주는 가상자산 대여 시 대여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가상자산은 대여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원본 상환은 대여자산의 상환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개인이 가상자산을 대여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1항 4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과세표준은 해당 시점의 시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대여자가 가상자산을 렌딩풀에 예치하면서 통제권과 경제적 수익권을 이전하였다면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Defi 유동성공급거래

- 영국과 같이 예치한 코인에 대한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도 또는 대여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대여자가 상환받는 코인이 예치한 수량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 대차거래로 보기에도 한계가 있음

- 또한 대여자가 수령하는 LP토큰은 일반 토큰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양도가능, 담보 제공 및 스테이킹 가능 등). 즉, LP토큰을 일반 토큰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본다면, 대여자가 토큰을 예치하고 LP토큰을 받을 때 교환거래로 볼 수 있으며, 예치한 코인은 트레이더가 스왑하면서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유동성공급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예치한 코인에 대한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할 수 있음

□ 유동성공급거래를 양도거래로 본다면 다음의 과세가 가능할 것임

- ①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공급하고 LP토큰을 수령하는 시점: 토큰의 양도거래와 LP토큰의 취득거래로 볼 수 있음. 즉, 유동성풀 토큰을 예치하고 LP토큰 수령 시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할 것이며, LP토큰은 신규로 취득한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음
- ② LP토큰 보유 중 양도 시: LP토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함
- ③, ④ 추후 LP토큰을 제출하고 유동성풀에서 가상자산을 반환받는 경우: 가상자산 교환거래로 보아 LP토큰에 대해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할 것이며, 이때 LP토큰 보유로 수취한 수수료수익이 LP지분증가로 반영되어 양도소득 산정 시 반영될 것으로 추정됨. 즉, LP토큰을 제출한 개인은 양도거래와 반환받는 코인의 신규 취득거래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렌딩거래 및 유동성공급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특성상 개인별 소득이 완전하게 포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 검토되지 못한 거래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5.3 하드포크 및 에어드롭

5.3.1 하드포크

가. 하드포크의 개념 및 과세 쟁점

- 하드포크(hard fork)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통신규약인 프로토콜(protocol)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분산원장(new ledger)과 이전 분산원장(legacy ledger)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 할 수 있으며,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노드는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하드포크라고 함(김갑래, 22-23)¹³⁹⁾¹⁴⁰⁾
- 하드포크의 예시: 비트코인(BTC) vs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ETH) vs 이더리움 클래식(ETC)
 - 즉, BTC 보유량에 따라 BCH의 코인을 배분받는 것으로, 새 체인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자산이 창출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기존 네트워크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하드포크로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과세 이슈가 발생함¹⁴¹⁾
- 무상 취득한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과 취득원가 문제
 -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본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가액 산정 이슈가 있음
 -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현행 가상자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취득원가를 0으로 함)도 존재함

나. 해외사례

1) 일본

- 기존 가상자산의 분기로 새로운 코인을 받은 경우, 취득 시점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음¹⁴²⁾
- 소득세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나, 하드포크는 분기 시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존재하지 않

139) 김갑래, 22-23.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140) 한편, 소프트포크(soft fork)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개선시키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분리시키는 정도의 근본적인 업그레이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기존 네트워크와 호환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에서 하드포크와 차이가 있다. 소프트포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분리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른 과세 이슈가 없다.

141) 만약, 기존 네트워크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하드포크로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과세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142) 일본 국세청(國稅廳)의 "暗号資産に関する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FAQ)", 2025.12, 1-6.

아 그 시점에 가치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봄

- 즉, 취득가액을 0으로 보며, 매각 시 매각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과세(즉, 과세 면제가 아니라 과세 시점의 이연일 뿐)(관계법령 소득세법 36조)

2) 미국

□ 미국 IRS는 FAQ에 하드포크와 관련한 과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하드포크 자체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하드포크 이후 에어드롭 등을 통해 가상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음
 - 이때 과세표준은 가상자산을 수령한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의미함
 - 수령한 시점은 가상자산을 양도, 매각, 교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 시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분산원장에 에어드롭이 기록된 날짜 및 시간을 의미함

미국 IRS FAQ¹⁴³⁾

- (Q22) 하드포크는 암호화폐가 프로토콜 변경을 겪어 기존 분산원장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분기되는 경우 발생한다. 이는 기존 분산원장의 기존 암호화폐와 더불어 새로운 분산원장에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성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암호화폐에 하드포크가 발생했지만, 에어드롭(다수 납세자의 분산원장 주소로 암호화폐를 분배하는 방식)이나 기타 양도 방식을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지 못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 (Q23) 하드포크 후 에어드롭을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수령한 과세 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한다.
- (Q24) 하드포크 후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 수령 시, 분산원장 거래 기록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경상소득이 발생한다. 단,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배권 및 통제권을 보유하여 양도,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처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 (Q25) 하드포크 이후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해당 암호화폐의 취득원가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시킨 금액과 동일하다. 소득으로 포함된 금액은 암호화폐를 수령한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이다. 가상화폐를 양도, 매각, 교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수령 시점으로 간주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분산원장에 에어드롭이 기록된 날짜 및 시간이다.

- 구체적으로, 미국 국세청 예규 2019-2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IRS Rev.Rul 2019-24¹⁴⁴⁾ 요약

143)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질문]

(1) 납세자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하드포크로 인해 납세자가 새로운 암호화폐 단위를 받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내국세법(Code 제61조)에 따라 총소득을 갖게 되는가?

(2) 납세자가 하드포크 후 새로운 암호화폐를 에어드롭한 결과로 인해 § 61에 따른 총소득이 발생하는가?

(생략)

[상황]

상황 1: A가 암호화폐인 Crypto M 50단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에 Crypto M의 분산원장이 하드포크를 겪으며 Crypto N이 생성되었다. 크립토 N은 A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계정으로 에어드롭되거나 이전되지 않았다.

상황 2: B는 암호화폐인 Crypto R 5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2일에 Crypto R의 분산원장이 하드포크를 겪으며 Crypto S가 생성되었다. 그날에 25단위의 Crypto S가 B의 분산원장 주소로 에어드롭되고, B는 에어드롭 직후 Crypto S를 처분할 수 있다. 현재 B는 Crypto R 50단위와 Crypto S 25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Crypto S의 에어드롭은 2일에 분산원장에 기록되며, 그 시점에서 B의 25단위 Crypto S의 공정 시장 가치는 \$50이다. B가 Crypto S를 받는 이유는 하드포크 시점에 B가 Crypto R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드롭 이후, Crypto S가 관련된 거래는 새로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Crypto R이 관련된 거래는 기존 분산원장에 계속 기록된다.

[결론]

상황 1: A는 하드포크에서 새로운 암호화폐인 크립토 N의 단위를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A는 하드포크의 결과로 부에 대한 증가가 없으며, §61에 따른 총소득도 없다.

상황 2: B는 하드포크 후 에어드롭으로 새로운 자산인 Crypto S를 받았고, 따라서 B는 부에 대한 승계권을 가지며, 암호화폐 S를 받은 과세 연도에 일반 소득을 가진다. B는 에어드롭 시점에 암호화 S를 지배하고 통제하며, 분산원장에 기록되므로 즉시 암호화 S를 처분할 수 있다. 총소득에 포함된 금액은 \$50으로, 분산원장에 에어드롭이 기록될 때 B의 25단위 암호화폐 S의 공정 시장 가치이다. B의 암호화폐 S 기준은 인식된 소득 금액인 \$50이다.

즉, 납세자가 하드포크 후 새로운 암호화폐를 에어드롭하여 새로운 암호화폐 단위를 받으면 § 61에 따라 일반소득을 갖게 됩니다.

3) 영국

- ☐ 영국은 하드포크 자체를 처분(disposal)이나 수령(receipt) 행위로 보지 않고, 기존 자산의 취득원가 등을 신규 토큰에 배분하여 추후 양도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있음¹⁴⁵⁾

144) <https://www.irs.gov/pub/irs-drop/rr-19-24.pdf>

- HMRC는 하드포크로 생성된 토큰을 새로운 가상자산 보유분으로 취급하며, 그 결과 새 토큰은 자본이득세(CGT) 목적상 별도의 풀(pool)로 반영됨
 - 기존 가상자산의 비용(예: 취득원가)은 향후 처분 시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리적인(just and reasonable)' 기준으로 기존 토큰과 신규 토큰 사이에 분배된다고 볼 수 있음
 - 그 이유는 신규 토큰의 가치가 개인이 이미 보유한 기존 토큰에서 파생된다고 보기 때문임
 - 즉, HMRC는 하드포크가 발생하여 새 가상자산이 생성되는 경우, 그 자체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가상자산에 대해 인정되는 비용은 기존 자산과 신규 자산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 예를 들어, 기존 가상자산 100개의 총 취득원가가 10,000원이고 하드포크로 수령한 신규 가상자산이 100개일 경우, 전체 200개의 총 취득원가는 10,000원이고 해당 취득원가가 50원으로 감소하는 구조인 것으로 추정됨¹⁴⁵⁾. 즉, 기존 가상자산 취득원가 중 5,000원이 하드포크로 취득한 신규 가상자산에 배분되는 구조인 것으로 추정됨
 - 결과적으로 하드포크로 취득원가가 낮아지므로 추후 양도 시 일괄 과세되는 것과 같은 구조임
- 새 토큰을 추후 매각하면, 신규 토큰을 위한 별도 풀(pool)에서 분배된 취득비용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가 계산됨

다. 과세방안

-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와 대여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하드포크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아니며, 증여로 보기에선 시세가 없어 과세표준 산정에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양도 시 일괄 과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하드포크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원가를 '0'으로 보고 추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함

5.3.2 에어드롭

가. 에어드롭의 개념 및 과세 이슈

- 에어드롭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

145) HMRC, CRYPTO22300 -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Capital Gains Tax: blockchain forks

146) 비용 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법(Taxation of Capital Gains Act 1992) 제52조(4)에 따라 비용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할해야 하며, HMRC는 특정 배분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문맥상 상기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로 새로운 토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토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행됨(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p.13, 2020.)

- (case 1-1) 거래소의 에어드롭 이벤트 사례: 코인 홍보 목적의 에어드롭임

코빗, 3,200,000 SPACE 2차 에어드롭 이벤트(2026.06.19.) 예시				
이벤트 1. 계단형 거래 미션 - 이벤트 참여 기간 : 06월 08일 10:00:00 ~ 06월 21일 23:59:59 - 대상 및 조건(조건 충족 시 자동 응모) : 이벤트 기간 내 SPACE 단계별 거래(매수/매도) 충족 회원 - 리워드 : 단계별 추첨 지급 (총 1,280,000 SPACE)				
순위	누적 거래 조건	1인당 지급 수량 (SPACE)	참여 인원(명)	추첨 인원(명)
1단계	10만 원 이상	1,200	1231	150
2단계	70만 원 이상	3,000	846	100
3단계	500만 원 이상	10,000	139	40
4단계	3,500만 원 이상	40,000	48	10

- (case 1-2) 가상자산 발행자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해당 코인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 에어드롭임

코빗, 페이코인(PCI) 에어드롭 이벤트(2025.2.) 예시	
이벤트 1. 페이코인 앱 가상자산 첫 결제 리워드 - 대상 및 조건 : 이벤트 기간 내 다날 제휴 가맹점에서 페이코인(PCI)으로 온라인 첫 결제를 완료한 회원 - 리워드 : 첫 결제 완료 시 50 PCI 지급 (중복 참여 불가, 최초 1회 기준)	

- (case 2) 가상자산 ICO/프리세일 전 소량 토큰 무상 배포
 - 외국은 ICO전 투자유치와 연관된 에어드롭에 대해 증권 공모의 일환인지 마케팅 비용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기존 가상자산 보유자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과세 이슈가 발생함¹⁴⁷⁾

- 무상 취득한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과 취득원가 문제
 -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본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재산가액 산정 이슈가 있음
 - 상금, 경품 등으로 보아 일반 기타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음
 -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현행 가상자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취득원가를 0으로 함)도 존재함

147) 만약, 기존 네트워크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하드포크로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과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우리나라의 과세 현황

☐ 국내 거래소는 에어드롭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납부를 하고 있음

☐ 에어드롭의 과세에 대해 아직까지 법제화된 것은 없으나, 예규나 심판례가 존재함

- 조세심판례는 이벤트 목적의 에어드롭을 기타소득으로, 예규는 증여세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조세심판례: (case 1)와 같이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가상자산을 상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정한 심판례가 있음

- 가상자산 매매업과 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부터 에어드롭 받은 가상자산을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음
 - 이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되어 조세불복이 있는 사례가 많음
-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취득으로 인한 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세자의 혼란이 존재함

[조심2025서2821, 2025.09.16.] 외 다수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주최하는 해당 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차별적·예외적으로 지급되는 ‘상금’ 등의 성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등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우리나라는 그간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롭과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가 있음

-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롭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예규가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07.25.

[사실관계]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롭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가 존재

[질의내용] 상기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인지 여부

[회신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기준-2021-법무재산-0167, 2022.08.02.

[사실관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에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래가 존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스테이킹(1)	하드포크(2)	에어드롭(3)
지급주체	발행재단 혹은 서비스제공자	발행재단	발행재단
지급대상	서비스 이용 회원	특정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회원	특정시점에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회원 또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원
지급 가상자산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	이종 가상자산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
지급수량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	기존 가상자산×지급비율	사전에 정해진 지급비율
지급사유	가상자산 동결에 대한 대가	기존 블록체인의 분리 등	제휴, 마케팅 또는 이벤트

[질의내용]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는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된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다. 해외사례

1) 일본

- ☐ 에어드롭에 대해 직접 다루지 않지만, 유사한 성격으로 하드포크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보임(강동익 등 2022; 임재범 2022)
 - 에어드롭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이 시세가 있는 토큰인 경우, 그 시점의 시가를 소득(잡소득)¹⁴⁸⁾으로 과세
 - 에어드롭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이 시세가 없는 토큰인 경우, 하드포크와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취득가액 0원으로 처리되어 이후 매각·교환 시 전액이 소득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이해됨

2) 미국

- ☐ 에어드롭에 대한 별도의 국세청 지침은 확인되지 않음
 - 국세청은 하드포크와 연관되어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 취득 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활용되는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 다만, 국세청의 하드포크 과세논리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에어

148) 일본 소득세법 제35조에 의하면, 잡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급여소득·퇴직소득·산립소득·양도소득 및 일시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드롭으로 취득하는 가상화폐 또한 수령한 시점에 과세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보고됨(강동익 등 2022)

3) 영국

□ 영국은 에어드롭의 "대가성"의 유무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짐¹⁴⁹⁾

- 어떠한 대가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받은 에어드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추후 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¹⁵⁰⁾
 - 대가성이 없는 에어드롭 예시: 마케팅이나 광고의 일환으로 토큰을 할당받은 경우, 토큰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토큰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경우 등
- 반대로,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기대에 따라 제공되는 대가성이 있는 에어드롭은 취득 시 소득세(기타소득, 기존 거래의 수입)가 적용되며, 추후 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함
 - 대가성이 있는 에어드롭의 예시: SNS 팔로우 및 홍보 대가, 뉴스레터 구독 대가 등
 -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의 취득원가는 에어드롭 수령일의 시장가치로 평가함

라. 과세방안

□ (방안1)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와 대여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에어드롭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소득은 아니며, 증여로 보기에 시세가 없는 코인도 있어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하드포크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양도 시 일괄 과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취득원가는 '0'으로 처리)

□ (방안2) 영국 및 일본과 같이 대가성 여부, 시세 유무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

-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토큰을 무작위로 할당받는 경우가 시세가 없는 에어드롭의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취득원가를 0으로 하고 추후 양도 시 일괄 과세함
- 대가성이 있고 시세가 있는 에어드롭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시가로 과세하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상금이나 경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임
 - 현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에어드롭의 경우, 특정 이벤트 조건을 달성하여 에어드롭하는 것이므로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임
 - 조세심판례에서도 과세관청의 과세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세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과세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149) CRYPTO21250 -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Income Tax: airdrops

150) CRYPTO22350 - Cryptoassets for individuals: Capital Gains Tax: airdrops

5.4 신종 가상자산 관련 과세쟁점 및 개선(안)

5.4.1 NFT (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 현행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토대를 두고 있어¹⁵¹⁾, 원칙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과세할 수는 없음
 -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상에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수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¹⁵²⁾.
 -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한 것임¹⁵³⁾
 -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여,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됨
- 다만, NFT라 하더라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은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상자산 포함 여부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하도록 하여, 결국 가상자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¹⁵⁴⁾
 - 예를 들어 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2)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4)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¹⁵⁵⁾
 - 이에 따라 NFT로 분류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소득세법상의 가상자산으로서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15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15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153)

<https://www.fsc.go.kr/po010101/81214?srchCtgry=1&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15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155)

<https://www.fsc.go.kr/no010101/8241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총평균법(2027.1.1.이후 거래분)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하나 NFT의 대체불가능성, 고유성을 고려할 때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합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기타소득금액 산정시 평가를 총평균법¹⁵⁶⁾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동종이고 서로 대체 가능한 자산이 여러 시점에 걸쳐 매입되어 풀(pool)을 이루고 있고, 그 중 어떤 단위가 실제로 매각되었는지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임
 - NFT의 고유성(상호 대체 불가능)으로 인해 일반 가상자산의 표준 산식인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 맞지가 않으며, 개별 실제 취득가액(개별법)을 추적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임
- 미국, 영국 등 해외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를 달리하는 것이 없어 NFT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NFT의 개별성, 고유성에 따라 취득원가 산정시 개별법을 취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세제를 검토함
- (미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포괄주의적 성격이 있어 NFT를 일반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재산(property)로 취급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되, look-through analysis를 적용함¹⁵⁷⁾
 - IRS는 NFT의 세무처리에 관한 예비 가이드라인인 Notice 2023-27을 발표하면서, NFT가 '수집품(collectible)'에 해당하는지를 'look-through analysis'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힘
 - look-through analysis 하에서 NFT가 표상하는 권리 또는 자산이 조세법상 수집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집품으로 취급됨. Section 408(m) 상 수집품으로 열거된 것은 미술품, 골동품, 금속, 보석 등 유형 동산인데, 예를 들어 보석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NFT는 보석이 수집품에 해당하므로 수집품으로 취급됨
 - 세율 면에서 수집품으로 분류된 NFT에는 장기 자본이득세율로 최대 28%가 적용되며, 이는 다른 일반 자본자산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인 20%보다 높은 수준임¹⁵⁸⁾
 - 수집품에 해당하지 않는 NFT(예:인게임 아이템 등)는 수집품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이 없는 NFT는 수집품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 자산으로 취급되어 장기 보유 시 20%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¹⁵⁹⁾

156)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157) <https://www.irs.gov/pub/irs-drop/n-23-27.pdf>

158) <https://beancount.io/blog/2026/05/02/nft-tax-treatment-income-capital-gains-reporting-guide>

- NFT를 구입·판매·발행하거나 로열티를 받았다면 Form 1099-DA를 통해 NFT 거래가 IRS에 보고되는 체계가 작동됨
- (영국) 영국은 명시적으로 풀링(pooling) 배제를 규정하여 각 NFT를 개별적으로 식별되는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고, 처분 시 양도가액에서 해당 NFT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함¹⁶⁰⁾
 - HMRC의 가상자산 매뉴얼 CRYPTO22200은 NFT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므로 풀링되지 않으며 매칭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Section 104을 통해 하나의 "묶음 자산"으로 취급되어 평균 취득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지만, NFT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므로 풀링 대상이 아님. 즉 NFT는 각각 별도의 취득원가(base cost)를 가진 독립된 자산으로 취급되며, Section 104 풀링 규정은 NFT가 대체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음¹⁶¹⁾
 - NFT를 처분하면 자본이득세(CGT) 대상이 되며, NFT를 창작·판매하는 경우 그 활동이 사업을 구성하면 소득세로, 일회성 투자자산이면 자본이득세로 과세됨. 자본이득세(CGT) 계산시 처분 시 수취금액에서 해당 NFT의 실제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¹⁶²⁾
- (일본) 일본 역시 NFT별 개별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소득을 계상하며, NFT 재판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양도소득=NFT재판매수입-NFT 취득비-NFT양도비용-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음¹⁶³⁾
 - NFT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개별 NFT 단위의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사용함. 일반 가상자산(암호자산)에 적용되는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은 NFT의 대체불가능성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으며, 각 NFT의 구입가격과 구입 시 소요비용을 직접 추적해서 계산
 -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NFT의 소유기간이 5년 이하이면 단기양도소득, 5년 초과이면 장기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장기양도소득은 특별공제 후 금액의 2분의 1만이 과세대상이 됨¹⁶⁴⁾
 - 1차 유통(창작자의 최초 발행·양도)의 경우 잡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 2차 유통(구매자의 재판매)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며, 소득 계산은 전매수입에서 NFT 취득비(NFT의 구입대가와 구입시 소요비용의 합계액), 양도비용, 최대 50만엔의 특별공제액을 차감해서 계산함

159) <https://beancount.io/blog/2026/05/02/nft-tax-treatment-income-capital-gains-reporting-guide>

160)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2200>

161) <https://chaintax.co.uk/blog/section-104-pool-crypto-explained>

162) <https://www.learnsignal.com/blog/hmrc-cryptoassets/>

163) <https://www.nta.go.jp/law/joho-zeikaishaku/shotoku/shinkoku/0022012-080.pdf>

164) <https://kaoria-tax.com/knowledge/nft-secondary-tax/>

- 위와 같은 NFT 특성과 해외사례를 볼 때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NFT의 개별성 판별,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NFT에 대한 분류 명확화, 취득가액 산정 방식 개선, NFT 판별기준 구체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보다는 FAQ, 고시, 행정해석 등을 통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등을 판별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분류 측면에서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토대로 가상자산을 구분할 경우 NFT의 과세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음. 기존의 소득세법상의 미술품, 무체재산권 양도 등의 기타소득세 관련 규정을 활용하여 미국 사례와 같이 고유성, 수집성이 있는 NFT는 그에 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그 외의 NFT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법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고시, 예규 등의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⁶⁵⁾
 - 각 개별 건마다 정성적 판단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량 발행, 동질적 분할 판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판별기준(Safe harbor)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NFT는 대체불가능한 고유성이 있는 자산인 바, 총평균법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음. 영국 등의 사례처럼 NFT를 풀링 배제 대상으로 보아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을 고시, 예규 등을 통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5.4.2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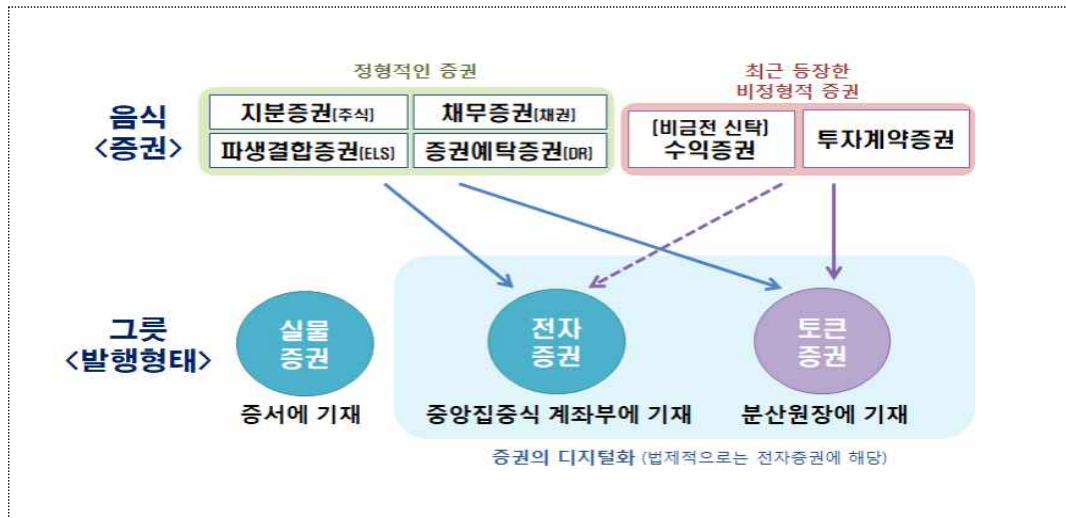
-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실물증권·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으로¹⁶⁶⁾, 가상자산 측면에서는 非증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가상자산”임¹⁶⁷⁾
 - 아래 그림과 같이 토큰증권은 기존의 증권의 발행형태 중에 하나인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대비되는 발행형태임
 - 금융위원회 등(2023)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발행인의

165) 현재 NFT와 처분과 관련된 세무처리에 대한 예규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한국경제(2023.12.12.), “NFT 투자로 이익 내도 소득세 안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215211>))

166) 금융위원회 등,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2)

167) 금융위원회 등,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023.12.20.)

선택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증권에 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언급함



출처: 금융위원회 등,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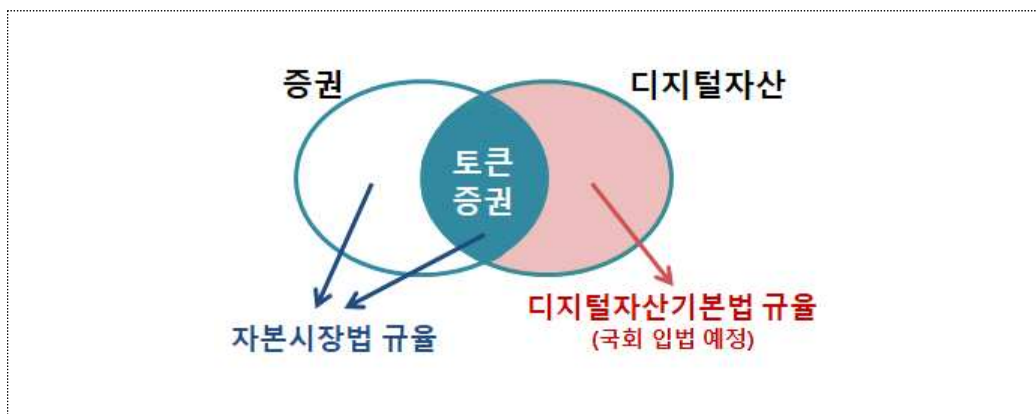
<그림 5> 토큰증권의 개념

-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2023년 2월에 발표하였고,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에 통과하여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허용됨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내에서 토큰증권 발행 등을 허용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2023.02.06.)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토큰증권이 기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식으로 제도화될 예정이며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임¹⁶⁸⁾
- 그러나 기존 가상자산과의 실무상 문제, 소득세법상의 관련 규정 미비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非증권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고, 증권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었으나 제4호의2에 따른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은 제외 목록에 없어 현재의 토큰증권(ST)는 자본시장법상의

168) <https://www.fsc.go.kr/no010101/86064>

증권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 양 성격이 같이 있음

- 투자자가 법제도상 증권으로부터 권리를 얻게 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증권 규제를 받아야 하는 바, 토큰증권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이 됨¹⁶⁹⁾
 -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아닌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을 것임



출처: 금융위원회 등,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2)

<그림 6>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 해외 주요국에서는 토큰증권(ST)에 대한 별도의 다른 세무처리보다는 토큰화(tokenization)되는 대상자산의 실질에 따라 기존 세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세제를 검토함
- (미국) 미국은 토큰증권을 별도의 과세대상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산(property) 원칙을 적용하며¹⁷⁰⁾, 토큰을 통해 이전되는 권리를 유형화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실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Notice 2014-21에서 확립된 가상자산은 재산(property)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토큰화라는 기술적 외관을 벗기고 그 안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함
 - 토큰을 통해 이전되는 권리를 채권(debt), 지분(equity), 자산공유(shared asset ownership)의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실무적 견해가 있음. 즉 토큰화 대상이 되는 자산의 실질에 따라(e.g.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과세하는 접근을 취함¹⁷¹⁾

169) 금융위원회 등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2)

170) <https://www.irs.gov/pub/irs-drop/n-14-21.pdf>,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digital-asset-transactions>, <https://www.irs.gov/filing/digital-assets>

171) <https://www.entoro.com/news/how-are-security-tokens-taxed>

- 세법상 stock or securities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은 wash sale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¹⁷²⁾
 - 토큰화대상 자산이 지분형인 경우 중 배당분배는 배당소득, 처분차익은 단기 또는 장기 자본이득으로 과세됨. 채권형의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 처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처리됨. 파트너십·조합 출자지분을 토큰화한 경우에는 파트너십 과세체계가 그대로 적용되어 각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 파트너십의 소득·손실을 직접 신고해야 함¹⁷³⁾
- (영국) 영국은 가상자산을 지급교환형 토큰(Exchange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증권 토큰(Security tokens, ST),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4종으로 분류함¹⁷⁴⁾. 증권 토큰(Security tokens, ST)의 세무처리는 토큰의 분류보다는 성격과 용도(기초자산의 소재지, 보유자의 취득 및 보유 목적)에 따라 이뤄져 자본이득세법 및 소득세법을 적용함¹⁷⁵⁾
- 증권 토큰은 이익청구권 등을 표상하는 토큰으로 별도로 분류됨
 - 증권 토큰의 경우 소재지 판정에 관하여 기초자산을 투시(look-through)해 세무처리를 결정하며, 보유자의 취득 및 보유 목적에 따라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세로 처리됨. 처분차익은 자본이득세(개인 기본세율 18%, 고세율 24%)를 적용함¹⁷⁶⁾
- (일본) 일본의 경우 토큰화 대상 유가증권에 따라서 세무처리하는 것으로 보임¹⁷⁷⁾. 이러한 실무상 관행은 토큰증권을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 분류에 따라 전통적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비롯된 것으로 보임¹⁷⁸⁾
- 특정목적회사(TMK)형은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설립된 특정목적회사가 우선출자증권 또는 특정사채권 형태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구조¹⁷⁹⁾로, 우선출자증권이면 배당소득¹⁸⁰⁾으로 분류
 -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特定受益証券發行信託)형의 경우 토큰증권의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¹⁸¹⁾으로 분류(신고분리과세)되고, 처분차익은 양도소득¹⁸²⁾(신고분리과세)으로 처

17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091>

173)

<https://www.aholamackcpa.com/blog/what-taxpayers-need-to-know-about-tokenized-securities-and-2026-tax-reporting/46786>

174)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10100>

175)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0050>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2600>,

176) <https://www.gov.uk/capital-gains-tax/rates>

177)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B219C10R20C22A7000000/>

178) <https://www.fsa.go.jp/en/policy/marketentry/guidebook/reference1.html>,

<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practice-areas/blockchain-cryptocurrency-laws-and-regulations/japan/>

179)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housei.nsf/html/housei/h142105.htm

180) <https://www.zeiken.co.jp/hourei/HHTOK000000/24.html>

181)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0.htm>

182) <https://www.zeiken.co.jp/hourei/HHSOZ000000/37-11.html>

리됨¹⁸³⁾

- GK-TK(合同會社-匿名組合)형은 익명조합 출자지분을 토큰증권화한 것으로, 익명조합 계약에 기초하여 영업자로부터 받는 이익의 분배는 잡소득으로 분류됨¹⁸⁴⁾

□ 위와 같은 토큰증권과 해외사례를 볼 때 기초증권의 성격 등에 따라 토큰증권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토큰증권이라 하여 별개의 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보다는 토큰증권이 담고 있는 기초증권에 따라서 세무처리하는 것이 해외사례의 법규와 실무관행임

□ 자본시장법 등이 개정되어 토큰증권이 증권으로서 제도화된 상황에서 이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여타의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기존 금융상품의 세무처리와 정합성이 맞게 과세하도록 규정 등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K-IFRS 상으로 일반 가상자산은 무형·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반면, 토큰증권은 특정 권리(현금흐름 청구권 등)를 표창하여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예외적으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세무처리할 이유가 없음

- 단기적으로는 토큰증권(ST)이 실물증권, 전자증권과 함께 증권의 발행형태 중에 하나인 바, 토큰증권에 대상이 되는 증권, 즉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의 세무처리에 따라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실물증권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전자증권이 나타났다고 하여 발행 대상인 증권(e.g. 지분증권 등)에서 나오는 소득의 유형을 달리 볼 수 없는 것처럼 분산원장 기술에 새롭게 등장한 토큰증권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재 금융자산의 칸막이 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적용을 받게끔 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현행 소득세법에서 조각투자상품(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처분이익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배당소득 범주 안에 흡수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는 장기적 칸막이 해소 방향과는 반대의 입법 선택을 이미 해두었다는 점에서, 장기 개선방안은 기존 입법의 재검토를 전제로 함

183)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31.htm>

184) <https://www.nta.go.jp/law/tsutatsu/kihon/shotoku/05/16.htm>

〈표 14〉 토큰증권(ST) 유형별 기초자산 실질과 단기·장기 과세방안

토큰증권의 기초자산 유형	표창 권리의 실질	기초자산·사례 예시	단기 과세방안	장기 과세방향
지분증권형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결권 등 지분적 권리	비상장주식 등을 토큰화한 경우	배당소득/ 양도소득	처분이익의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사 체계로 전환
채무증권형 (사채 등)	원리금 상환청구권	회사채 등을 토큰화한 경우	이자소득	상동
파생결합증권형	기초자산 가격 등에 연동한 수익구조	ELS·DLS 등을 토큰화한 경우	배당소득	상동
증권예탁증권형 (DR)	원증권에 관한 권리를 표창	국내·해외 증권예탁증권을 토큰화한 경우	원증권의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처리	상동(원증권 기준 장기방향과 동일하게 통합)
수익증권형 (조각투자형 포함)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분배청구권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 신탁수익증권	배당소득 등	처분이익의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사 체계로 전환
투자계약증권형	공동사업 손익분배청구권	조각투자형 투자계약증권 (음악저작권 등)	배당소득 등	상동

출처: 저자 작성

5.4.3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준자산에 가치를 고정(peg)하여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자산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으로 포함되어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그 중에 가상자산에 제외되는 대상¹⁸⁵⁾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주식,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제외 대상에 스테이블코인은 제외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민간이 발행하는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기타소득세 과세의 적용대상이 됨
-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자산에 가치를 고정(peg)하여 가격변동성을 의도적으로 억제

18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한다는 점에서 가격변동성이 심한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쟁점이 있으며, 현행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축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그러한 면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상에 기축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축가상자산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¹⁸⁶⁾을 쓰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과세가액 계산상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법령상 외화의 등가물처럼 취급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인 납세자의 외환차손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우리나라 세제의 특성상 일반적인 외화를 통해 벌어들인 환차익과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 등이 이뤄졌을 때의 환차익이 달리 과세된다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외화 현금·예금 등 일반 외국통화를 보유하다가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을 얻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아 사실상 비과세 처리됨
- 폐깅으로 인해 경제적 실질이 외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외화 스테이블코인(e.g. USDT)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세율 20%)를 과세한다면, 법적 형식의 차이만으로 유사한 경제적 행위에 현격한 과세 격차가 발생하게 됨
-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보유자가 시세차익이 아닌 결제·송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원화 기준 환차손익이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된다면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무처리에 앞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무처리가 불확실한 면이 있음

- 통상적으로 세법에서 물건, 거래 등의 세무처리 대상여부, 세무처리 방법을 논할 때 그 물건, 거래 등을 규율하는 법령 등을 참고하고 있으나,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그 법령이 아직 완비되지 않고, 여전히 논의 중에 있음
-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율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단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세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186)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선행 규율 법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지, 화폐 유사물로 볼지,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의 대상으로 볼지에 따라 과세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아 처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달리 보는 점도 있음
 -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세제를 검토함
- (미국) 소득세에 포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이라 하여 달리 보지 않고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 판매, 교환하는 모든 행위가 과세거래임.¹⁸⁷⁾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지적도 있음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을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하며, 모든 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법 원칙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¹⁸⁸⁾
 -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것,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 현금으로 매각하는 것 모두 과세거래(taxable event)에 해당하며, 각 거래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와 취득원가의 차액이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로 과세됨
 - 브로커는 스테이블코인 매각·교환·처분에 따른 총수입을 Form 1099-DA로 보고해야 하는데, 적격 스테이블코인 매각에 대해 개별거래가 아닌 유형별 합산 방식의 선택적 보고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의 연간 합산 총수입이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지정매각에 대한 보고 자체가 면제¹⁸⁹⁾
 - 브로커가 Form 1099-DA나 대체 명세서를 통해 거래를 보고하지 않더라도 납세자는 이를 신고해야 함
 - 현행 IRS 분류는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가격이 변동하도록 설계된 자산에는 맞지만, 1달러 고정가치를 유지하려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¹⁹⁰⁾
- 영국 역시 스테이블코인이라 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다른 여타의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매각 교환 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함¹⁹¹⁾.
 - HMRC의 Cryptoassets Manual은 스테이블코인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187)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digital-asset-transactions>, <https://www.irs.gov/pub/irs-drop/n-14-21.pdf>,

188) <https://www.irs.gov/filing/digital-assets>

189)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99da>

190) <https://www.theblock.co/post/383433/bipartisan-house-lawmakers-unveil-crypto-tax-framework-with-stablecoin-safe-harbor-staking-deferral-bloomberg>

191)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0000>,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0050>,
<https://koinly.io/guides/hmrc-cryptocurrency-tax-guide/>

화폐 또는 귀금속처럼 안정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패킹될 수 있는 토큰”으로 설명하면서, 교환 토큰(Exchange tokens) 등과 함께 4대 가상자산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함¹⁹²⁾

- 스테이블코인을 재화·용역 대가로 수취하면 수취 시점의 파운드 환산 공정시장가치로 거래소득(trading income)으로 과세하고¹⁹³⁾, 스테이블코인을 처분(법정화폐로 전환, 다른 토큰과 교환, 판매자에 대한 결제 등)하는 것은 자본이득세(CGT) 과세대상이 됨
- 개인이 자본자산으로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가 적용되며,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예: USDT→USDC)도 처분에 해당하여 양자의 가치에 차이가 있으면 자본이득 또는 손실이 발생함
-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교환 토큰과 마찬가지로 Section 104 풀링(pooling)이 적용되어, 동일 스테이블코인의 취득원가는 평균단가로 계산됨.¹⁹⁴⁾ 개인의 현행 CGT 세율은 기본세율 18%, 고세율 24%임¹⁹⁵⁾
-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하락(디페킹)하여 처분(매각)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본손실로 인정되며,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사실상 아무 가치도 없는’ 수준(negligible value)까지 하락하여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손실을 확정할 수 있음¹⁹⁶⁾

□ 일본에서는 암호자산형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세무상 동일하게 처리되며, 디지털머니유사형(전자결제수단)은 실무상 외화예금 환차익 과세원칙(잡소득)에 따라 세무처리되는 것으로 보임¹⁹⁷⁾

-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머니유사형과 암호자산형으로 분류하는데, 법정통화와 연동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발행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것이 디지털머니유사형(전자결제수단)임¹⁹⁸⁾
- 암호자산형 스테이블코인은 통상의 암호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이익은 원칙적으로 잡소득(雑所得)으로 종합과세되나, 디지털머니유사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음
- 다만, USDC처럼 외화(달러) 표시 전자결제수단은 취득시와 이용·양도시의 환율변동으로 손익이 발생하며, 현금·예금에 가까운 성격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잡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임¹⁹⁹⁾

□ 위와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192)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10100>

193)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40350>

194)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2200>

195) [gov.uk/capital-gains-tax/rates](https://www.gov.uk/capital-gains-tax/rates)

196)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2500>

<https://www.cryptact.com/blog/stable-coin-tax>

198) <https://www.fsa.go.jp/common/diet/208/03/setsume.pdf>,

199) <https://www.smbctb.co.jp/globalcompass/gaika/tax-on-fcy-deposit/>

가상자산을 달리 보는 일본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외환차손익에 대해서 세무상 비과세하는 점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아직 제도 정비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에 대한 외환차손익이 과세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2단계 국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상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외환차손익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같은 현행 법령 또는 추후 시행될 2단계 법령(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분리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이며, 소득세법에서 이 규정을 참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원화·외화에 1:1로 연동되고 발행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별도 정의하고, 이 카테고리를 가상자산소득세의 일반 처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등은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에서 창설적으로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정하지 않고, 타법을 참조하는 상황에서 타법의 처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령이 정비될 경우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임
- 스테이블코인의 처분손익과 일반적인 외환차손익을 과세형평을 위해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법상 외환차손익을 과세소득을 포함하고, 해외 사례에 맞춰 스테이블코인의 처분이익도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

Ⅵ.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쟁점 및 개선(안)

6.1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기준 및 쟁점

6.1.1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 소득세법 개정안(2025.12)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 (과세표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의 실제 필요경비(즉, 취득원가와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를 공제한 금액에 과세최저한인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²⁰⁰⁾
- (취득원가) 단계별 취득 시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음²⁰¹⁾²⁰²⁾
 -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 총평균법 적용하되 거주자별 계산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이동평균법 적용하되 가상자산 주소별 계산
- (취득원가 의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²⁰³⁾와 기존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²⁰⁴⁾
- (취득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필요경비 의제 규정 마련²⁰⁵⁾
 -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사유: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²⁰⁶⁾
 - 필요경비 의제 비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200)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201)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취득가액(주소별 산정, 선입선출법 및 이동평균법 적용)에 대한 비판이 많아,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변경함

202) 소득세법시행령 88조, 183조, 법인세법시행령 129조

203) 소득세법시행령 88조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204) 2024년 말 세법 개정된 사항임

205) 2024년 세법 개정된 사항임(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 ④·⑤ 신설)

206)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 4항에 의하면, 취득원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소득세법 개정안(2025.12)의 세율 및 세액 산정 방법

- (세율) 과세표준의 20%
- (과세최저한) 250만원
-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기타소득 및 투자 손익과의 통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의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250만원) × 20%
 - 양도 거래의 필요경비 =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6.1.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관련 쟁점

□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손익 통산 관련 쟁점

- 현행 소득세법은 당해연도에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과세하는 형태인데, 이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얻는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우리나라 과세체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김갑래 2023), 결손금 이월공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세최저한 관련 쟁점

-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은 250만 원인데, 개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선택한 이상 납세협력비용이나 징세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확보되는 과세최저한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세만 과세함에 따른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단가 산정방법에 따른 쟁점

- 가상자산의 취득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취득유형과 취득 시 단가가 다양한데, 양도시점에 양도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임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기존에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인이 산정하기 편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 다만, 총평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취득유형별 취득시점(소득귀속시기)과 취득원가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도 손쉽게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계산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추가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취득 및 거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나,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6.2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손익통산, 양도·대여소득 구분

-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분류 및 분리과세 처리로 인해 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손익통산이 불가능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 및 대여에 대한 대가에 대해 과세됨.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손익통산은 가상자산소득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이월공제되지 않고, 분리과세 적용되나 원천징수는 이뤄지지 않고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과정에서 결손금 손익통산 제한, 이월공제 불허를 직면할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있음
 - 가상자산을 금융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산으로 보는 상황에서²⁰⁷⁾ 타 소득과의 통산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세부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술되는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그러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개인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법인 간 과세형평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음
- 결손금 이월공제·손익통산이 불허되는 현행 구조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예를 들어 아래 사례와 같이 가상자산 양도손실이 이월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이익이 나는 과세연도에 이익 전액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손실이 나는 해에는 이월공제나 세금 환급이 되지 않아 가상자산 전체 기간의 투자기간 동안의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 세부담이 발생하게 됨

207) <https://www.fn london.com/articles/can-family-offices-afford-to-ignore-crypto-1ecb0594>
<https://www.reuters.com/markets/us/blackrock-recommends-bitcoin-portfolio-weighting-up-2-interested-investors-2024-12-12/>

〈표 15〉 손익통산 허용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예시(가정)

구분	FY1 양도손익	FY2 양도손익	2년간 경제적 손익	2년간 세무상 과세표준 합계	2년간 세부담 합계
이월공제가능	△1,000 만원	+3,000 만원	+2,000 만원	+2,000만원 (FY1의 결손금 이월)	2,000만원×20% = 400만원
이월공제불능 (현행)	△1,000 만원	+3,000 만원	+2,000 만원	+3,000만원 (FY1의 과세표준은 0)	3,000만원×20% = 600만원 (이월공제 미반영)

출처: 저자 작성

- 실제로 자산을 총괄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산 간의 양도 손익 통산이 비교적 자유롭고, 이월공제도 가능하며, 가상자산이라 하여 차별적으로 달리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없음

○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세제를 검토함

- (미국)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과 자본손실 통산에 제약이 없으며, 순자본손실의 경우 일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되고 남은 손실은 차기로 이월되고, 이월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이는 가상자산도 동일함

○ 가상자산 등 자본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다른 자본이득과 통산가능함²⁰⁸⁾

○ 자본이득을 초과하는 자본손실은 연간 3,000달러(부부별도 신고 제외)까지 경상소득에서 공제²⁰⁹⁾

○ 순자본손실이 연간 3,000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손실을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되며, 그 손실의 장기·단기 성격이 유지되면서 다음 연도 순자본이득 계산시 반영됨²¹⁰⁾

- (영국) 영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해 일반적인 다른 자산과 유사하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데, 자본이득금액이 연간면제금액 이하이면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고,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이득에서 허용가능한 자본손실을 공제할 수 있으며, 순자본손실은 금액과 기간의 제한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함²¹¹⁾

○ 영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기존의 자본이득세 틀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이 암호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은 다른 자본이득과 합산하며 과세됨

○ 자본이득세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취득원가 등 공제비용 이외 소득공제와 이

208)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news/tax-tips/tas-tax-tip-when-can-you-deduct-digital-asset-investment-losses/2023/10/>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209) <https://www.irs.gov/taxtopics/tc409>

210) <https://www.irs.gov/pub/irs-pdf/p550.pdf>

211)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crypto22000>

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함

-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을 고려하여 소득공제(annual exempt amount)를 적용할 수 있으며, 2023년 4월부터 6천 파운드를 적용하고, 2024년 4월부터는 3천 파운드로 하향 조정²¹²⁾
- 결손금은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청구(claim)가능함²¹³⁾

□ (일본) 일본의 경우 잡소득으로 구분하고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초과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도 허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²¹⁴⁾, 최근에 완화된 움직임이 있음

- 잡소득으로 구분하는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통산에 제약이 있어, 잡소득 범주의 다른 소득과 통산이 가능할 뿐, 잡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음²¹⁵⁾
- 최근 공표된 세제개정대강에 따라 등록 거래업자를 통한 특정암호자산 거래 이익이 현행 잡소득(총합과세)에서 신고분리과세(20%)로 처리되는 것이 입법화되었으며, 3년간 손실이월공제 도입 예정²¹⁶⁾

<표 16> 손익통산·이월공제 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현행)	미국	영국	일본(개정 예정)
소득구분	기타소득 (분리과세)	자본이득 (원칙)	자본이득 (원칙)	잡소득 (단, 적격자산 신고분리과세 예정)
타소득 통산	불가	순자본손실은 일반소득 공제 가능	가상자산 간 및 여타 자본이득과 통산 가능	불가
이월공제	불허	허용	허용	불가 (단, 적격자산은 3년간 이월공제 도입 예정)

출처: 국내외제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위와 같은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손익통산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볼 때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기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음

212) <https://www.gov.uk/guidance/capital-gains-tax-rates-and-allowances>

213) <https://www.gov.uk/capital-gains-tax/loss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sses-hs227-self-assessment-helpsheet/hs227-losses-2024>

214)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hotoku/kakuteishinkokukankei/kasoutuka/>

215) 강동익 등(2022),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virtual_currency_faq_03.pdf,

216) <https://www.soico.jp/no1/news/cryptocurrency/21733>,

<https://kaoria-tax.com/knowledge/separate-taxation/>

- (단기적 개선방안)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여와 양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하여 다음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기타소득 과세체계에서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하여, 양 유형의 소득이 서로 통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월공제를 용인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내려지고, 스테이킹 렌딩 등 가상자산 신종거래의 양도 및 대여 해당 여부 등을 고시, 예규, FAQ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개선방안)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소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하게 별도로 분류과세 하면서 자본이득 간에 손실 통산 및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하려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여 자본이득 간의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6.3 과세최저한 상향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최저한을 25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 소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과세 최저한의 수준이 낮아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은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들어간 시간, 세무대리인 고용비용, 세무서 방문을 위한 교통비용,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비용 등의 유·무형 비용을 포괄함(Sandford, 1995)
 - 선행연구에 의하면, 납세협력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함

<표 17> 납세협력비용

구 분	발생요인	내부비용	외부비용
장부 기장 및 보관	기장 및 기록	임차료, 세금계산서 구입비용을 제외한 비용	상담용역비, 대리기장비, 고문료 및 민원서류 발급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인건비, 세금계산서 구입비, 우편통신비, 소모품비	대리기장비
	장부보관	전산장비 구입비, 보관유지비, 임차료	상담비, 고문료, 민원서류 발급비
결산	장부마감	임차료를 제외한 비용	상담비, 고문료, 민원서류 발급비
	세무조정 및 감사	인건비, 비품 및 소모품비	세무조정비, 고문료
신고 및 납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인건비, 인쇄비, 우편통신비, 여비교통비	대리기장비
	세금납부	인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
신고 및 납부 사후검증	추가자료 제출	인건비, 인쇄비, 우편통신비	대리기장비
	과세자료 소명	인건비, 우편통신비	고문료, 대리기장비
세무조사	조사준비	비품구입비, 인건비, 임차료, 인쇄비, 소모품비	대리기장비
	조사 진행 및 종결	인건비, 비품소모품비, 우편통신비	상담용역비, 세무조사 용역비, 민원서류 발급비
과세불복	과세전적부심, 사후불복, 고충처리	인건비, 여비교통비, 우편통신비	불복 청구비

출처: 김유찬 등(2008)

- 국세청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위해 현재 4차까지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²¹⁷⁾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의 4차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2021년 한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약 15.44조원이며, 세목별로는 소득세(40.2%)·부가가치세(28%)·법인세(21.9%)로 3대 세목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90%를 차지하였으며, 원천세의 비중은 8.2%(약 1.27조원)임²¹⁸⁾
 -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개인 평균 597만원, 종합소득세는 개인 평균 306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원인별로 살펴보면, ‘정보수취, 장부기장’하는 유형이 납세협력비용의 약 58.3%를 차지하고, ‘신고, 납부’ 유형이 31.4% 수준임

□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므로 가상자산 소득세 납세자는 신고납부 경험이 없는 개인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²¹⁹⁾ 이 경우 납

2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세청의 의뢰를 받아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함

218) 사업자 납세협력비용 15조원, 분석해봤더니...(텍스워치, 2024. 5.9)

219) 유사한 금융상품의 소득세 세무처리에 있어서도 개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투자와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하고 있지 않으며, 신고하더라도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면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국세통계연보 2024에 의하면, 금융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 비율에 2~3%대 수준임)

세협력비용에 따른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²²⁰⁾ 2025년 말 기준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수는 11,126,238개(원화마켓 11,112,371개, 코인마켓 13,867개)²²¹⁾에 달함
 - 약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약 112만명에 달해 가상자산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개인납세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²²²⁾
 -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아주 높음을 감안하면 1백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소액의 납세자가 많이 포함될수록 신고납부 관련된 세부 지침들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심해질 수 있음

□ 한편, ‘징세비용’은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세무행정 집행비용과 기타 국고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정지선과 윤성만 2016)

- 세무행정 집행비용: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 직원들의 인건비, 조세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관리 운영비(임대료, 이자, 광열비 등), 우편요금, 전화비, 인쇄비, 교통비, 컴퓨터 등 기타 설비비, 숙박비 등으로 구성
- 기타 국고비용: 세금을 도입하는 경우 법률의 입법과정 및 세제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

□ 과세의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소액의 납세자가 많이 신고하게 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지원비용,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이 커질 수 있음

- 즉, 과세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최저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세최저한을 얼마로 인상해야 할지는 정책적인 결정 사항에 가깝지만, 여러 자료를 기초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앞서 검토한 납세협력비용을 토대로 과세최저한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은 개인의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597만원, 종합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이 평균 306만원이라고 제시한 바 있음. 납세자가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을 창출했다고 인식하려면 최소한 납세협력비용까지를 고려할 것

220) (보도자료)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금융위원회, 2026.3.26)

221) 이용자수는 거래소별 중복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휴면계정은 제외된 숫자임

222) 2023년 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43.6조원인데, 2024년말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7조원으로 약 2.47배 상승함. 예를 들어, 기말에 1천만원 정도의 가상자산을 보유한다면 약 4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그대로 기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6백만원 발생하므로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 이상이 되어 납세자가 될 수 있음

이므로 과세최저한은 최소한 납세협력비용인 3백만원~6백만원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만약 가상자산을 5백만원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이를 전액 매도한다고 가정하고 의제 취득원가인 50%를 적용하면 과세소득은 250만원이 산정됨. 즉, 가상자산 보유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²²³⁾
- 가상자산 보유액이 5백만원~1천만원인 경우에 의제 취득원가 50%를 적용하면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5백만원으로 도출되며, 가상자산 보유액이 1천만원~2천만원의 경우에 의제 취득원가를 적용하면 가상자산 소득이 5백만원~1천만원 수준으로 산정됨
- 즉, 가상자산 보유액이 1.2천만원 이하이면 의제 취득원가 적용 시 가상자산 소득이 6백만원으로 비과세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납세자는 보유액이 1.2천만원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1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18> 금액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

구분	보유 없음	50만원 미만	50만~1백만원	1백만~5백만원	5백만~1천만원	1천만~1억원	1억~10억원	10억원 이상
전체	121만개 (10.9%)	654만개 (58.7%)	51만개 (4.6%)	125만개 (11.2%)	50만개 (4.5%)	95만개 (8.5%)	16.3만개 (1.5%)	0.69만개 (0.1%)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6년 3월 26일)'.

- 추가로,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세 세무처리를 살펴보면, 보유이득인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고액의 자산가가 아니라면 원천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문 상태임
 -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지 가능한 바, 일반적인 대다수의 개인납세자는 과세관청에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즉,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신고납부 역량이 있는 개인은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2천만원을 과세최저한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임
- 즉,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고납부 역량,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인하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앞서 검토한 납세협력비용인 6백만원 수준,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기준인 2천만원 수준 등이 대안일 수 있으며, 추후 과세 인프라 개선이나 해외거

223) 다만,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아주 높음을 감안하면 5백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래소 등을 이용한 거래의 세원포착의 완성도에 따라 점차 과세최저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함

6.4 가상자산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원가

- (일본) 가상자산을 단계별 취득 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1개당 취득원가 산정
 - 1개당 취득원가 산정 방법은 최초 취득 연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총평균법 적용하고 있음
 -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연도 3월 15일까지 승인신청서 제출해야 함
 - 취득원가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가액의 5%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일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취득원가 계산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²²⁴⁾ 엑셀도 제공하여 취득원가 산정을 지원하고 있음²²⁵⁾
- (미국) 미국은 가상자산 취득원가를 개별법,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2025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디지털자산의 취득원가를 지갑별·계좌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전에는 동일한 암호화폐를 모든 거래소·지갑에 걸쳐 단일 풀로 취급하는 ‘유니버설 지갑’ 방식이 허용되었으나, 이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 즉, 이전에는 coinbase, ledger에서 BTC를 매매하면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각각의 지갑별로 별도로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음. 이는 투자자가 신고하는 내용과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간의 불일치로 IRS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개편한 것으로 파악됨
- (영국) 영국은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same day rule과 Bed & Breakfast Rule을 병행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Section 104 Pool (총평균법) 방법을 적용하며, 각 가상자산 종류별로 하나의 풀을 구성하여 평균 취득단가 산정
 - same day rule(당일 규칙)
 - 같은 날 토큰을 사고팔면 그날 매수한 토큰의 원가를 취득원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당일 매수, 매도를 이용한 인위적 손익 조작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HMRC는 같은 날 매수·매도를 단일 거래로 보며, 그날 매수·매도한 모든 토큰의 평

224)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virtual_currency_faq_03.pdf

225)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shotoku/kakuteishinkokukankei/kasoutuka/index.htm>

균원가와 평균 매도가를 사용해 손익을 계산

[same day rule의 예시]

오전 10시: ETH 5개 @ £2,000에 매수

오후 3시: ETH 5개 @ £2,500에 매도

Same Day Rule 적용:

매도의 취득원가 = 당일 매수가 £2,000

손익 = £2,500 - £2,000 = £500/개

총손익 = £500 × 5 = £2,500 이익

→ Section 104 풀 평균원가 £3,000 무관, 풀에도 변동 없음 (당일 매수·매도 상쇄)

○ Bed & Breakfast Rule (30일 규칙)

-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가상자산을 재매수하면, Section 104 풀의 평균원가 대신 재매수 가격을 취득원가로 사용함
- 이는 인위적으로 손실을 실현한 후 즉시 재매수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

[wash sale의 예시]

1월 1일: BTC 1개 @ \$50,000에 매수

12월 1일: BTC 1개 @ \$30,000으로 하락

12월 2일: BTC 1개 @ \$30,000에 매도 → \$20,000 손실 신고

12월 3일: BTC 1개 @ \$30,000에 재매수

결과:

- 실제 상황: BTC 1개 그대로 보유 (아무것도 안 변함)

- 세금 상황: \$20,000 손실로 다른 차익과 상계 → 세금 절감

→ 아무 경제적 실질 없이 세금만 줄임

→ Bed & Breakfast Rule에 따라, 12월 2일 매도 시 취득원가를 @ \$50,000이 아닌

@ \$30,000원으로 보므로, 12월 2일 매도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음

○ 영국은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원가를 0으로 간주함

- 즉, 매도가 전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19> 취득원가 관련 국가별 과세제도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취득단가 산정방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또는 개별법	총평균법
조세회피방지 규정	없음	없음	없음	Same Day + B&B Rule
산정단위	거주자별	가상자산 종류별	지갑, 계좌별	가상자산 종류별
취득원가 불명 시	양도가액의 50% 의제	양도가액의 5% 의제	0원으로 간주	0원으로 간주

- (취득단가 산정 관련 개선안)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거주자에 대해서는 취득단가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산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물량흐름 상 이동평균법이 적절하지만, 거주자는 1년간의 가상자산 소득을 집계하여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므로 1년간 취득한 가상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신고 측면에서의 편의성도 확보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은 1년간의 가상자산 취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임
 - 한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데,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할 때마다 거래소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역시 긍정적이라 사료됨
 - 다만, 일본과 같이 취득 및 처분 내역을 납세자가 입력하면 취득단가와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엑셀이나 프로그램 형태의 지원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의제 취득원가율 개선안) 현행 소득세법은 취득원가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원가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세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원가 의제율이 지나치게 높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자의 경우는 취득원가가 투명하게 식별되는 것과 비교하여 취득원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존재함
 - 따라서 과세 초기에는 50%의 취득원가 의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취득원가가 투명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여 취득원가 의제율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가상자산 소득세는 신고납부이므로 납세자가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취득원가가 입증되지 않으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취득원가를 0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5 가상자산 거래 양성화를 위한 세율 차등화 제언

-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소득이 다 포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임
 - 만약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개인의 소득만 투명하게 관리되고, 해외거래소에서 거래, 장외거래, 탈중앙화된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며,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면 과세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
 - 더욱이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해외 이탈(즉, 자금의 해외 이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사안임
 - 따라서 정부당국은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유인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증가한다면, 세원 파악도 현재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2026년 3월 가상자산 분리과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
 - 동 개정안에는 특정 디지털자산(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 거래업자를 통해 양도한 경우 20%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탈중앙화 거래소, 해외거래소 매각, 개인 간 직접 양도, 스테이킹, 채굴 수익, 비특정 디지털자산 거래 등은 여전히 최대 55%의 종합과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²²⁶⁾
 - 이러한 차등세율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당국 입장에서 거래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정부당국도 소득세 과세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 방지, 가상자산 투자자금의 해외이탈 방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유인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시 1)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취득 및 양도(대여) 거래로 인한 소득에는 10%의 세율 적용, 그 외의 경우에는 20% 세율 적용
 - (예시 2)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취득 및 양도(대여) 거래 비중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226) Digital Asset(2026.4.10.), [인터뷰] "일본 가상자산 분리과세 법안 통과" 새 과세 전략 총정리

VII. 결론

-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25.7.1~25.12.31)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5년 상반기 95.1조원 수준이며, 최근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거래량이 5.4조원으로 여전히 그 규모가 작지 않음
 -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 이용자(계정수)는 1,113만 개로 오히려 25년 상반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7년 1월 1일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예정임
 - 본 연구에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에 앞서, 현행 소득세법상 쟁점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쟁점별 개선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현행 기타소득세 과세체계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가상자산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가상자산소득을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입법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예시 거래를 고시·예규·FAQ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미국·영국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또는 (과거 추진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별도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과세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스테이킹 보상: 가상자산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취득시점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개인이 직접 스테이킹하여 받는 보상은 계속적·반복적·영리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 국내 거래소의 렌딩서비스: 차용자는 주식을 차용하여 매도하고 추후 동종 가상자산을 취득(상환용 채매수)하여 상환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는데, 해당 차익을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차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을 부대비용으로 차감하는 방안

- 차용자가 담보로 맡긴 가상자산이 강제청산 되면,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대여자 등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산된 부분만큼 양도로 보아 양도로 인한 손실로 계상하는 방안
- Defi 렌딩·유동성풀: 가상자산 예치 시 통제권과 경제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거래로 보는 방안
 - 렌딩거래는 빌려준 자산과 같은 자산·같은 수량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 대여거래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대여로 볼 경우, 렌딩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은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날 소득의 귀속시기로, 과세표준은 해당 시점의 시가로 하는 방안
 - 유동성 공급은 LP토큰 반납 시 자산 구성 자체가 변동되어 상환되므로 예치자산과 상환자산이 불일치하여 대차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LP토큰의 경제적 실질이 일반 토큰과 유사하므로 코인을 예치하고 LP토큰 수령 시 가상자산 교환(양도)거래로 볼 수 있을 것임. 즉, 유동성풀에 가상자산을 공급하고 LP토큰을 수령하는 시점에 양도(교환)로 인한 기타소득, LP토큰 양도 및 추후 LP토큰을 제출하고 유동성풀에서 가상자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
- 하드포크: 하드포크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원가를 '0'으로 보고 추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 에어드롭: 하드포크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양도 시 일괄 과세하는 방안(취득원가 0) 또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대가성이 있고 시세가 있으면 에어드롭을 받는 시점에 시가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 시 일괄 과세하는 방안(취득원가 0)
- NFT: 입법보다는 고시·예규·FAQ 등을 통해 NFT 판별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NFT를 풀링 배제 대상으로 보아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시행령 등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토큰증권: 자본시장법 등이 개정되어 토큰증권(ST)이 증권화된 상황에서 이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여타의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기존 금융상품의 세무처리와 정합성이 맞게 과세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처분이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분류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테이블코인: 개인의 외환차손익이 비과세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2단계 입법이 추진 중인 현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 가상자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손익통산, 양도·대여소득 구분: 단기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여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소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과세 하면서 자본이득 간에 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과세최저한: 현행 250만원의 과세최저한을 납세자의 신고납부 역량,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 6백만원(납세협력비용 고려 시)~최대 2천만원(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기준) 수준으로 인상하고, 추후 과세 인프라 개선이나 해외거래소 등을 이용한 거래의 세원 포착의 완성도에 따라 점차 과세최저한을 인하하는 방안
- 취득단가 산정: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거주자에 대해서는 취득단가는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산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일본과 같이 취득 및 처분 내역을 납세자가 입력하면 취득단가와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엑셀이나 프로그램 형태의 지원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의 국경이 없고 거래내역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개인들만 투명하게 과세된다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쟁과 조세저항이 심해질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소득세 과세로 인한 국내 거래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증가한다면, 세원 파악도 현재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임
 - 일본이 특정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 거래업자를 통해 거래하면 저율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5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듯이, 세율 차등화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예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취득 및 양도(대여) 거래로 인한 소득에는 10%의 세율 적용, 그 외의 경우에는 20% 세율 적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취득 및 양도(대여) 거래 비중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 다음으로,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임
 - 그간 정부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블록, OECD CARF 가입,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의무 등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CARF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거래, 탈중앙화거래소에서의 거래, 개인 간 거래 등을 포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인프라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납세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홈택스와 같은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및 신고납부 지원 조직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동익, 홍성희, 박수진. 2022. 가상자산 및 디파이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2023.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2.06)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2023.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2023.12.20.)
- 금융위원회, 2026.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6.3.26.)
- 김갑래, 2022-2023. 국내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ISSUE report.
- 김갑래, 2023. 현행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 김유찬, 나성길, 정평조, 김동수, 김완일. 2008.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에서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조세연구 제8-1집: 51-100.
- 두나무 사업보고서(2026.03.30.)
- 문교현, 조형태. 2025. 프리마이닝 코인의 세무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34 (4): 153-195.
-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irs.gov>)
-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ryptoassets-manual>)
- 안성희, 202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연구. 회계저널 33(3): 87-107.
-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a.go.jp/>)
- 이상신, 2025. 최근의 스테이블코인 논의와 그에 따른 과세 동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31(2): 365-398.
- 이소현, 박정우. 2023.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입법적 검토.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3 (1): 349-390.
- 이은미, 윤태화. 2023.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12 (4): 151-190.
- 임재범. 2022.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장기용. 2020.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세무회계연구 64: 71-97.
- 전우정, 2023. NFT 종류 분류에 따른 과세관계 분석. 법조 72(1): 325-375.
- 정유석. 2021.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69: 21-44.
- 정지선, 윤성만. 2016. 지방세에 있어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측정 및 감축방안, 한국

지방세연구원.

차동준. 2021.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98: 1-24.

Sandford. C. Godwin, M and Hardwick, P. 1995.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Bath. Fiscal Publication.